

政策研究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安炯徒 編著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韓國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政策研究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

安炯徒 編著

1999.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韓國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

序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1989년 출범한 APEC은 1999년 제7차 오클랜드 정상회의의 개최와 함께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APEC은 회원국수, 포괄 이슈, 기구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다. 최초 12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APEC은 1998년 베트남, 러시아, 페루 3개국이 정상회의에 처음 참가함과 동시에 21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협력분야에 있어서 초기에는 경제기술협력분야 이슈를 다루었으나 점차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기에 이르렀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이후 금융협력 이슈가 주요 의제로 부상되었다. 기구면에서의 발전은 매우 괄목할 만한 것으로 현재 APEC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mittee), 예산 및 운영위원회(BMC) 등 4개의 주요 위원회와 9개의 실무그룹, 2개의 전문가회의, 그외 다수의 각종 포럼과 11개 분야에 걸친 분야별 장관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외형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APEC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분야별 자발적 조기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에 대한 합의도출의 실패, 금융위기에 대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부재 등은 APEC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APEC 무역자유화 추진의 주된 도구인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s)은 1996년에 최초로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각 회원국들에 의해 제출되었다.

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그러나 개별실행계획을 통한 각 회원국의 자발적 자유화 추진노력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미 1996년과 1997년에 제출된 각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제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 권의 책으로 내놓게 되었다. APEC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본 연구원의 지속적인 연구가 APEC의 발전방향 모색과 對APEC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9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李 景 台

國文要約

I. 관세

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며, 금년 말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에서 관세인하가 협상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APEC 회원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관세인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소폭이나마 관세인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약속된 관세인하의 이행이거나,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하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향후 당분간 관세부문에서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2010/2020년 완전 무관세화 목표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세인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II. 비관세

회원국들의 비관세조치분야 개별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서술 내용이 부실하고 이행사항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IAP 포맷에 맞지 않는 형태의 IAP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0개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은 '98 IAP 이행사항이 전무하고 99년 신규제안사항도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호주만이 구체적인

8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이행내용과 신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IAP 제출 포맷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IAP 포맷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신규회원국으로서 금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감축과 철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IAP상에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모든 이행을 WTO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바 이는 APEC의 일방적 자유화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관세조치의 완화/철폐를 위해서는 비관세조치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UNCTAD의 경우 64개 항목의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IAP의 경우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항목수를 확대하여 구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III. 서비스

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국가는 호주, 중국, 대만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네트워크분야의 경쟁정책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국과 대만은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다. WTO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 IAP를 작성한다는 점과 IAP의 작성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의 국가들은 기본통신이나 금융분야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IAP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도 명확한 IAP 기재원칙

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재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인 진전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어도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는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 방식을 따른 시장개방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을 위한 계획표 제출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파악과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표의 제출은 기존의 IAP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IV. 투자

투자분야 IAP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ogor 목표의 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중단기 및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투자분야 IAP의 작성과 이행이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투자관련 정책방향 정책실시의 성과 등을 IAP에 단순히 기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V. 표준 및 적합

표준·적합 분야의 1998년 IAP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기존의 IAP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합 분야는 매우 기술적·세부적이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개별회원국들은 APEC

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을 서술·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상황은 현저히 상이하며,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는 동 사안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작성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IA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APEC 회원국간 각 국가의 제도 및 개방상황을 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AP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VI. 통관절차

APEC은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를 통해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SCCP는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12개 분야 중 HS 협약원칙 채택, 토코협약(본문)의 채택, 정보의 공공접근성 등 대부분의 분야는 이미 APEC 회원국이 기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공동데이터 개발분야이다. 국가별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호주(12개분야 중 11개 사항 이행), 미국(10개), 한국(10개), 일본(10개), 러시아(10개) 등의 국가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VII. 지적재산권

한국은 대부분의 TRIPs협정규정에 상응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 및 기소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보호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법률제정보다 행정적 사법적 권한에 의한 부적절한 법률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단, 호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여타 APEC국가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여타 APEC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브루나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APEC국가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행절차의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 브루나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실행계획의 이행에는 1997년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VIII. 경쟁정책

APEC은 경제규모 및 수준, 경제체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쟁법과 경쟁정책 제도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체로 개도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들은 아직 국내경쟁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AP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별로 성실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경쟁정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신흥경제국은 대부분 경쟁정책 제도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으며 국제협력, 특히 양자협정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국내 상관을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X. 정부조달

IA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8년도중 정부조달분야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각 국가 IAP의 대부분은 예전 IAP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제의 대부분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전된 내용도 별로 없고, 제출한 IAP도 97년도 IAP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실행계획 중 이행된 사항은 대부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뿐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7년도와 동일한 IAP를 제출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조달체제에 더 이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IA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X. 규제완화

호주, 멕시코, 일본 등의 규제완화 내용은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멕시코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검토작업과 각종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한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APEC 회원국간의 의견교환 혹은 기업부문간의 정기적 의견교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조화하는 국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대치 등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XI.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분야는 대부분 WTO/WCO 작업의 진행상황에 IAP를 연계하고 있다. 즉,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 규범을 이에 합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의 IAP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IAP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PEC의 원산지규정 IAP는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상의 원칙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이 비교평가 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XII. 분쟁조정서비스

1998년도 IAP 중,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997년도 IAP에서 크게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신규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설명이 불분명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아는 1997년과는 달리 금번에는 IAP를 제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APEC 회원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XIII. 기업인이동

기업인이동분야의 주요한 성과로는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 사업인 바 호주, 한국, 필리핀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2차 시험운영기간('98.3 '99.2)에는 칠레, 홍콩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현재 뉴질랜드가 추가로 ABTC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ABTC사업 이외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대만은 기약속조치의 이행실적이 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이행사항과 신규제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회원국들의 IAP 서술내용은 부실한 형편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IAP 포맷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본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ABTC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XIV. UR 이행

분석대상 국가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의 기재내용은 매우 부실한 편이며 일부 내용이 있는 국가도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편 WTO 가입협상이 진

행중인 국가 중 대만은 관세율 인하, 정부조달법 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진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이 IAP를 제출한 러시아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베트남은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이 작성되었다. IAP에서 UR 협정이행 부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는 현재의 IAP 기재방법이 불명확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 이행에 관한 기재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목록에 대해 각국이 이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目次

I	관세 / 정인교	19
II	비관세 / 안형도	33
III	서비스 / 성극제	43
IV	투자 / 한홍렬	69
V	표준 및 적합 / 임효성	85
VI	통관절차 / 이경희 · 정인교	110
VII	지적재산권 / 김애리	134
VIII	경쟁정책 / 윤미경	148
IX	정부조달 / 양준석	164
X	규제완화 / 전준모	186

XI	원산지규정 / 한홍렬	219
XII	분쟁조정서비스 / 채욱	233
XIII	기업인이동 / 안형도	254
XIV	UR 이행 / 성극제	263
XV	종합적 평가	270
	Executive Summary	272

表目次

<표 I-1>	TCF 산업에 대한 관세인하 계획	23
<표 VI-1>	APEC-SCCP 12개 공동행동계획	131
<표 VI-2>	SCCP 12개 분야별 진전 사항	132

I 관세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역내 개방적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것임:

- ① 점진적인 관세인하 및
- ② APEC 회원국 관세체계의 투명성 확보

지 침

각 APEC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함:

- ① 점진적인 관세인하 과정에서 역내 무역패턴, 경제적 이해관계, 이러한 자유화 조치가 APEC 역내 교역 및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관련된 분야 혹은 제품을 고려함.
- ② 점진적 자유화가 정당화되지 않는 조치에 의해 손상되지 말아야 하며, 역내 소지역무역협정에서 달성된 관세인하 및 관세제거의 이익은 APEC 전회원국에 자발적인 형태로 연장됨을 고려해야 함.

1. 97년도 IAP 요약

가. 호주

- ▶ 호주는 대체로 낮은 관세율체계를 견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섬유, 의

류 및 신발의 경우 고관세를 부과해왔음

- ▶ 특히 96년도 IAP에 제시된 호주의 관세인하 계획 중 이들 고관세 품목에 대한 중장기 관세인하 일정을 다소 연장함.
- ▶ 97년 6월에 발표된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0년까지 수입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15%까지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97년 IAP에서는 2005년까지 10%로 인하할 것임을 제시함.
- ▶ 또한 섬유류, 의류 및 신발류도 자유화 일정을 기존의 2000년까지에서 2005년까지로 연장하였음 예를 들면, 의류에 있어 96년도 IAP는 현재 34%인 관세를 2000년까지 25%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97년도 IAP에서는 2005년까지 17.5%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나. 브루나이

- ▶ 실질적 변동 없음.

다. 중국

- ▶ 97년 10월에 단행된 평균 26%의 관세인하를 제시함.

라. 일본

- ▶ 96년 12월 타결된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97년 7월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제1단계 관세인하조치를 취했으며, 2000년까지 동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함.

마. 멕시코

- ▶ 실질적 변동 없음.

바. 필리핀

- ▶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2004년까지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
- ▶ 자유화와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삼림보호를 목적으로 원목수출에 20%의 수출세 부과기로 함.

사. 대만

- ▶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2002년까지 289종의 관련제품 관세를 인하 및 철폐기로 함.
- ▶ 대만의 자유화 일정은 WTO 가입과 연계되어 있음.

아. 미국

- ▶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자유화 조치 제시.

2.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1988 이후 호주는 실행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켜 왔는데, 수입가중

평균실행관세율은 5%이며, 총 관세세목의 96%(수입액기준으로는 99%)가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양허되었다(농산물의 경우 100% 양허). 그러나 자동차, 섬유,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아직도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는 관세장벽이 높은 편이다.

호주정부는 추가자유화를 위해 미소관세율(nuisance tariffs) 품목을 발굴하여 무세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는 바, 현재 관련부처가 1,000여 개 대상품목의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정부는 이들 품목으로부터 징수하는 관세수입이 전체의 5% 미만(연간 10만 달러 미만)인 데 비해 행정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들 미소관세품목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호주는 1998년 7월 1일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정보기술제품의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나머지 20%도 2000년 1월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1998년 9월 1일 의학 및 과학장비의 상당부분에 대한 관세(HS 9011-9033)도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다.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매년 2.5%씩 인하시켜 15%까지 낮출 계획이며, 추가관세인하를 위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승용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는 2005년 1월 1일에 10%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입중고차에 대해서는 12,000달러의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다.

섬유, 의류 및 신발(TCF) 산업은 그동안 상당한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세율이 높다. 동 산업에 대한 수량제한조치와 생산보조금은 철폐되었으며, TCF 산업에 대한 관세율은 <표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까지 인하일정이 확정되어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5년까지 5 17.5%까지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호주는 치즈에 대한 관세쿼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1995년 1월 1일 현재 11,500톤의 물량범위내에 대해서는 톤당 96달러의 관세가 부과되는 대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1,440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 초과물량에 대한 높은 관세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총 15% 인

〈표 I-1〉 TCF 산업에 대한 관세인하 계획

산업/년	1998(7월 1일)	1999(7월 1일)	2000(7월 1일)	2005(1월 1일)
의류 및 특정섬유	31%	28%	25%	17.5%
면시트 및 편직물	19%	17%	15%	10%
섬유사	5%	5%	5%	5%
슬리핑백, 테이블보, 티타월	12%	11%	10%	7.5%
신발류	21%	18%	15%	10%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뉴질랜드 및 남태평양제도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면제한다.

2) 평가

1998년 호주 IAP의 관세부문이 1997년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미소관세가 부과되는 1,000여 품목을 무세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볼 때 꾸준한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998년 9월 1일부터 실시 중인 의학 및 과학장비에 대한 관세철폐도 1998년 IAP 진전사항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하는 자동차(부품), 섬유, 의류 등에 대한 고관세를 인하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자유화의 필요성이 있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브루나이 총 관세세번의 69%는 0%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5~3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40~200%의 고관세가 부과되며, 종가세의 경우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95년 4월 1일부로 688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단행하였다. ASEAN 역외공동관세(CEPT)에 따라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다(모든 품목에 대해 0~5%의 관세 부과). 총 관세세번 6,069개 중 96%가 CEPT 대상이며, 약 80%는 0~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96년 1월 1일 현재 6,545개 관세세번 중 66%인 4,283개 품목이 10%로 양허되었으며 이들 양허품목 중 공산품은 3,447개이고 농산물은 836개 품목이다. 브루나이는 종량세가 부과되는 품목(총 87개 세번)을 종가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관세체계를 HS 9단위로 분류하고 있다.

브루나이의 향후 관세인하 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전체 관세세번의 80%를 8%에 양허하고, 이후 2010년까지 관세세번의 82%를 5%,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0% 관세를 달성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WTO 하에서 양허되지 않은 품목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20년에 완전 무관세화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2) 평가

98년도 브루나이의 IAP 관세부문은 97년도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종량세가 부과되는 87개 품목을 종가세로 전환한다는 점에서는 투명성을 다소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2020년까지 관세인하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유화 일정은 WTO 양허품목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유화의 구체적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 브루나이가 제시한 IAP는 WTO 비양허품목의 내용을 밝힌 바 없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1998년 현재 중국의 관세세번은 총 6,941개이며, 단순평균관세율은 17%이다. 96년 4월 4,9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단행함으로써 단순

평균관세율이 35.9%에서 23%(인하율 35.9%)로 낮추었고, 97년 10월 1 일에는 4,8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7%로 인하하였다. 중국은 97년 IAP 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은 향후 2000년까지 단순평균관세율을 15%까지 인하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05년까지 공산품에 대한 평균관세를 10%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2005년까지 185개 정보기술제품(ITA)에 대한 무 관세화를 달성하며, 2007년까지는 소수품목을 제외하고는 전 ITA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2) 평가

WTO 가입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은 관세인하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물론 대부분의 관세인하가 WTO 가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97년 10월 관세인하로 17%의 평균관세율을 달성하고, 향후 2005년까지 공산품의 관세를 10%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중국의 관세체계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아 중국의 관세인하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과연 어느정도 중국의 시장접근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일본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1.5%, 임산물 1.0%, 수산물 4.1%, 농산물 9.3%로 낮아졌다. 우루과이라운드 이전 일본의 공산품 평균관세율은 2.2%, 임산물 1.4%, 수산물 5.7%, 농산물 11.9%이었다. 농업의 평균관세율은 1.7%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양허관세율을 보유하고 있다. 96년 4월 섬유, 화공, 철 및 비철금속 697개 품목(HS 9단

위)에 대한 UR 관세인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95년에 55개 농산물 품목(HS 9단위)에 대한 GSP 관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일본은 ITA 제품에 대한 1차 관세인하를 97년 7월 실시하였고 2000년까지 ITA 제품에 대한 완전무세화를 달성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2001-2010년간에는 관세인하를 가속화할 예정이며, 2000년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협상에도 적극 참여할 입장임을 밝히고 있으나, 관세인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평가

98년도에 일본이 제시한 관세부문 IAP는 97년과 거의 동일하다. 공산품에 대한 평균관세가 1.5% 수준임을 들어 일본은 자유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회원국 중의 하나로 자평하고 있을 정도이므로 향후 다른 회원국이 상당한 무역자유화 조치를 실시할 때까지는 일본은 추가자유화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관세구조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전체 관세세목의 7-8%이고, 이들 품목에 대한 고관세가 주요 교역상대국에는 큰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추가관세인하가 요청된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통계상으로 볼 때, 멕시코의 가중평균관세율은 93년 7.8%에서 97년 2.7%, 98년에는 2.5%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97년 이후의 낮은 관세는 임시수입과 특혜무역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에 불과하다. 98년도에 멕시코가 실질적으로 자유화를 이행한 사항은 거의 없는 편이다. 98 IAP 추가사항으로는 APEC내에서 생산되는 중간재와 기계류에 대한 추가관세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균관세율 인하를 가속할

것이며, 특히 APEC내에서 생산되는 중간재와 기계류에 대한 관세인하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다자 및 지역적 접근방식을 통해 역내 상호간 관세인하에 주력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2) 평가

98년 IAP에서 멕시코가 자유화를 제시한 것은 없다. 다만 평균관세율을 계산함에 있어 임시수입과 특혜무역을 고려함으로써 가중평균관세율을 낮게 제시하고 있다. 즉, 멕시코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FTA 체결 회원국과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90년대에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하의 교역으로 무관세(저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 특혜무역을 고려할 경우 교역가중평균관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1998년 현재 필리핀의 양허율은 65.75%이며, 수입가중평균실행관세율(민감품목 제외)은 6.73%, 수입가중평균양허관세율은 25.8%이다. 필리핀은 97년 4월 25일 ITA 협정을 서명하였으며, 현재 관세개혁프로그램(TRP)을 실행중에 있다.

98 IAP 추가사항으로 TRP를 들 수 있는 바, TRP는 2004년까지 5% 단일관세체계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WTO하에서 민감농산물로 분류된 품목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0년까지 거의 대부분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2) 평가

98년도 IAP가 97년도 IAP보다 발전된 내용은 없다. 수입가중평균실행

관세율을 계산함에 있어 민감품목을 제외함으로써 필리핀은 평균실행관세율이 6.73%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필리핀은 교역에서의 민감품목비중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 러시아

1) 주요 내용

현행 수입가중평균관세율은 약 15%이며,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은 530%로, 30% 이상의 고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98년에 처음으로 IAP를 제출함에 따라 기존 IAP 이행사항을 검토할 수 없다. 98 IAP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0/2002년까지 러시아의 관세체계를 WTO 가입조건을 반영하도록 개선시킬 것이며, 관세관련 규정의 투명성도 제고할 것임을 들고 있다. 또한 APEC 국가간 협력강화 및 정보교환 방안을 개발키로 하였으며, 2010/2020년까지는 통관절차를 WTO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2) 평가

98년에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고, 관세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 러시아의 관세부문 IAP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한편, 수입가중평균관세율 15%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 자유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체제전환국들에게 일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 대만

1) 주요 내용

98년 현재 평균명목관세율은 8.25%이고, 총 관세세목의 30% 이상이 3% 이하의 저관세를 적용받는다. 기존 IAP 이행사항으로는 98년 6월 19일 1,35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것을 들 수 있다. 대만은 7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체계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으며, 입법부는 동 법안을 심의중에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평균명목관세는 8.25%에서 8.14%로 낮아지게 된다.

98 IAP 추가사항으로는 2000년까지 5% 이하의 실행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전체 관세세목의 50%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평균명목관세율은 약 7.9%가 된다. 또한 2005년까지 5% 이하의 실행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전체 관세세목의 60%가 되도록 하며, 이 경우 평균명목관세율은 약 6.3%가 된다. 이어 2010년까지 5% 이하의 실행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전체 관세세목의 65%(평균명목관세율은 6%)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2) 평가

WTO 가입을 모색하고 있는 대만은 98년도 IAP에서 1,35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추가 관세인하를 위한 법안을 심의 중에 있는 등 무역자유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평균명목관세가 8.14%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2010년까지의 실행관세율 인하계획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만은 2010년도 평균명목관세율을 6%로 잡고 있다.

자. 미국

1) 주요 내용

96년 현재 미국의 단순평균관세율은 6.4%, 무역가중평균실행관세율은 3.4%이다. 97년 미국이 APEC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품 중 85% 이상이 평균관세율 이하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즉, 주로 APEC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전기기계에 대한 관세는 1%이고, 비전기기계의 경우 0.5%, 수송기계는 1.3%였다. 기존 IAP 이행사항으로는 98년 1월 1일 미국은 UR에서 약속한 관세인하의 4단계를 실행하였다. UR에서 미국은 2005년까지 관세를 1/3 인하하기로 하였고, 동 약속이 실행되면 미국의 관세율은 캐나다, 일본보다도 낮게 된다.

미국은 97년 7월 1일과 98년 1월 1일 두차례에 걸쳐 ITA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달성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까지 ITA에 대한 0% 관세를 달성할 것이다. 미국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 뉴라운드 관세인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평가

미국의 98년도 IAP는 97년 IAP와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은 UR에서 약속한 자유화 조치가 모두 실행되면 일본이나 캐나다보다도 낮은 관세율을 보유함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당분간 미국은 추가 자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APEC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품 중 상당부분(85% 이상)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동아시아국가들의 관심품목인 섬유와 의류, 가죽가공제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죽제품, 신발, 여행용품에 대한 관세세목 중 5.6%는 30%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섬유류에 대한 2004년 가중평균관세율이 11.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미국은 이들 품목에 대한 높은 보호수준을 향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차. 베트남

1) 주요 내용

월남 패망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운영하였던 베트남은 COMECON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였으나 91년 12월 26일 HS 분류체계를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HS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96년까지 베트남 수입관세 대상품목 중 약 50개 품목이 60% 이상의 고율관세(최고 200%)를 적용 받았다. 98년 6월 현재, 베트남의 관세체계는 9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관세세번은 3,280개이다. 최고세율은 60%이며, 생산원자재, 기계, 장비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현 관세체계하에서 베트남의 단순 평균수입관세율은 11.9%이며, 무역가중평균관세율은 13.4%이다.

98년 APEC 가입으로 이행조치가 없으며, 98 IAP에 나타나 향후 자유화 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관세와 내국세 개편작업을 실시할 것이며, 현재 25단계로 되어 있는 관세체계를 15단계로 줄여 관세체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 베트남은 GATT의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을 채택할 것이며, APEC 무역자유화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점진적 관세인하를 검토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2) 평가

지난해에 APEC에 가입한 베트남의 경우 과거 IAP가 없어 98년도 IAP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WTO 가입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베트남측이 관세장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25단계로 되어 있는 관세율체계를 15단계로 줄여 관세체계를 간소화하고, 관세평가협정을 채택하려는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종합평가

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며, 금년 말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에서 관세인하가 협상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 APEC 회원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관세인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소폭이나마 관세인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중 대부분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약속된 관세인하의 이행이거나,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 대만 등의 국가는 상당한 폭의 자유화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WTO 가입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가별 자유화 조치를 열거하면 중국은 향후 2000년까지 단순평균관세율을 15%까지 인하하며, 2005년까지 공산품에 대한 평균관세를 10%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까지는 일부를 제외한 전 ITA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대만의 경우 2005년까지 5% 이하의 실행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늘려, 2010년까지 5% 이하의 실행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비중이 65%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호주는 9월 1일자로 의학 및 과학장비에 대한 관세인하를 단행하였으며 미소관세(nuisance tariffs)를 무세화하기로 하였다. 브루나이와 필리핀은 양허품목에 한해 2020년까지 자유화 계획과 2004년까지 5% 단일관세체계 구축의사를 각각 제시하였다.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하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향후 당분간 관세부문에서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2010/2020년 완전 무관세화 목표 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세인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II

비관세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 회원국들은 하기 사항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을 달성함.

- ① 비관세 조치를 점진적으로 감축함.
- ② 각 APEC 회원국들의 비관세 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함.

지 침

각 APEC 회원국은,

- ① 비관세 조치의 점진적인 감축과정에서 APEC 역내 무역의 추세, 경제적 이해, 그리고 본 과정이 아태지역의 무역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과 관련된 부문 및 생산품을 고려함.
- ② 비관세 조치의 점진적인 감축이 부당한 조치의 적용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함.
- ③ 소지역 협정에 따라 추진되는 비관세 조치의 축소 또는 철폐 혜택을 모든 APEC 회원국에 자발적으로 확대할 것을 고려함.

1. 97년도 IAP 요약

가. 호주

- ▶ 수출허가제도: 지역삼림협정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경보호 및 자연적

유물 보호를 위한 법이 유효한 지역에서 목재품(woodchip) 및 미가공상태의 목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제거하려 함. 생산보조금: 88년에 19개였던 생산보조금 지급 대상 산업이 현재 2개로 줄어듦. 2개 산업(품목)은 책인쇄와 선박건조인데 이들 산업에 대한 생산보조금은 각각 97년 12월 31일과 99년 6월 30일에 중단될 것임.

나. 브루나이

▶ 변동 없음.

다. 중국

▶ 변동 없음.

라. 일본

▶ 산업별 주요 비관세장벽 요약표 제출.

마. 멕시코

▶ 기타 사항: 투명성 제고를 위해 멕시코 통상부의 수입허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함.

바. 필리핀

▶ 변동 없음.

사. 대만

- ▶ 대만의 실행계획은 WTO 가입협상에 초점을 두어 작성된 것으로 보임.
- ▶ 예를 들면, 대만은 WTO에 가입하게 되면 WTO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비관세장벽은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 ▶ 수입제한조치: 수입금지, 수량제한 혹은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제한 등의 조치는 국내산업의 발전 혹은 조정을 위해 현재 실행중이나, WTO 가입후 제거될 예정임.
- ▶ 수입허가제: 94년 7월 이후 대만은 수입허가제 적용대상 품목을 네가티브 리스트제로 전환함에 따라 對총수입품목 중 수입허가제 적용대상 비중이 16%에서 2.84%(271개 품목)로 낮아짐.
- ▶ 수출금지: 유기화학 등 83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됨.
- ▶ 중장기 과제: WTO에 가입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제거함.

아. 미국

- ▶ 변동 없음.

2. 98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호주는 건강과 안전, 국제적인 의무이행과 관련된 조치를 제외하고는 비관세조치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수량적인

수입제한/금지, 수량적인 수출제한/금지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merino 양 제외), 임의적인 수출면허, 임의적인 수입면허 등의 비관세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수량적인 수입제한/금지조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수량적인 수출제한/금지조치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임의적인 수입면허제도는 공산품, 광물, 화학제품, 수산물, 농산물에 유지되고 있고 임의적인 수출면허제도는 광물, 화학제품, 목재, 석규, 수산물, 농산물에 유지되고 있다. 호주는 최소수입가격, 수출보조금, 자발적 수출제한, 자동적인 수출면허, 수출부과금, 수입부과금의 비관세 조치는 유지하지 않는다.

기존 IAP 이행사항으로 호주는 2개 지역의 자연림에서 생산된 미가공 목재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였고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생산된 인공 립산 목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없앴다. '98 IAP 추가사항으로 호주는 몇몇지역과 주에서 생산된 목재(woodchips)와 여타 미가공목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할 것이다.

2) 평가

호주는 비관세조치분야에 있어서 비교적 투명하고 앞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임의적인 수출 및 수입면허제도분야에서 지속적인 비관세장벽 완화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브루나이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건강, 안전, 안보, 환경, 종교와 관련하여 또는 국제협약상의 의무준수와 관련하여서만 비관세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쿼터, 외환규제, 자발적인 수출입제한 조치, 부품사용제한(local content requirement) 등의 비관세조치가 없다.

그러나 상기한 목적을 위해 수출면허제도, 수입허가제, 수출입금지, 기술적 기준(technical standards),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98년도 IAP는 96, 97년도에 제시한 IAP와 동일하다. 즉, 1997~2000년간에는 모든 비관세조치를 파악·검토를 목표로 삼고 있고 2000~2020년간에는 비관세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2) 평가

브루나이의 IAP는 3년간 거의 동일하다. 브루나이는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비관세조치를 파악·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간동안 존재하는 비관세조치를 파악·검토하는 작업이 수행되는 만큼 매년 IAP 제출시 비관세조치파악/검토작업의 진행상황을 알려야 할 것이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중국은 수입쿼터 또는 면허제도에 규제를 받는 품목의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오고 있으며 1997년 12월 31일에는 13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 또는 면허 관련규제가 철폐되었다. 현재 총수입품목의 5% 또는 372개 품목이 쿼터, 면허제, 여타 수입제한조치를 받고 있다. 일부분야에서 비관세조치 철폐가 있었으나 IAP 이행의 결과는 아니다. 98년도 IAP는 97년도의 IAP와 동일하며 신규조치는 없다.

2) 평가

1998~2000년간에 존재하는 비관세조치의 파악·평가, 비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와 투명성확보 등의 작업이 진행되는 바, 그 진행상황이 IAP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IAP의 성실한 기록이 요청된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96, 97 IAP와 동일하다. 기존 IAP 이행사항과 추가사항이 없다.

2) 평가

일본은 96년, 97년, 98년에 걸쳐 거의 동일한 IAP를 제출하고 있다. 비관세조치분야에서의 진전상황을 구체적으로 IAP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멕시코의 비관세장벽은 WTO 협정의 규정과 일치된다. 멕시코는 1997년에 통상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입허가 목록을 한 권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96년, 97년 IAP에서 제시한 단/중/장기계획에 따른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 평가

96년, 97년 IAP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수입허가 관련목록 책자를 발간하는 등 구체적인 진전이 보고된다. '99 IAP에도 지속적으로 진전상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필리핀은 국가안보, 건강, 안전 이외의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비관세조치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IAP 이행사항은 없으며 '98 IAP 추

가사항으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협조할 것이다.

2) 평가

필리핀은 96, 97, 98년 3년간 거의 동일한 IAP를 제출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사. 러시아

1) 주요 내용

경제개혁과정을 통해 쿼터와 면허제도를 통한 비관세규제는 러시아 총 수출의 80%에서 16%로 감소하였다. 연방외국무역법에 따르면 수출입에 대한 양적인 제한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수출면허제는 군수품, 에틸주정제(ethyl spirit), 핵물질, 그리고 국제협약의무준수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 희귀동식물 등에 적용되고 있다. 수입쿼터는 1992년에 폐지되었으며 매우 제한된 품목에서 수입면허제가 실시되고 있다. 러시아는 98년에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다. '98 IAP 주요 내용으로는 단기(1998 2000/2002)간에는 비관세규제 조치의 적용과정의 단순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2001/2003 2010)적으로는 WTO협약에 일치하도록 다자간 무역협상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2) 평가

수량제한 및 수출입면허제를 통한 비관세조치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타 다른 형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개선계획이 IAP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IAP 신규조치가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 대만

1) 주요 내용

대만은 WTO 가입 후 WTO와 일치된 비관세조치만을 유지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수입관련 비관세조치는 국내산업의 발전과 조정을 위해 유지되며 WTO 가입 후에 점차적으로 완화 및 폐지될 것이다. 대만은 기본적으로 수출입관련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으나 현재 항구건설부과금(0.45%)과 무역진흥서비스부과금(0.0425%)이 징수되고 있다. 농산물 및 공산품과 관련하여 대만은 WTO 가입이 성사되면 비관세조치를 대규모로 완화/철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기존 IAP 이행 사항과 추가사항은 없다.

2) 평가

대만은 WTO 가입시 여러 종류의 비관세조치를 대규모로 완화 및 철폐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IAP 이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사항은 없다. 대만의 비관세장벽 철폐는 WTO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APEC의 무역자유화 추진의 가속화라는 관점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자. 미국

1) 주요 내용

미국은 비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폐지와 관련된 EVSL 이니셔티브에 참가할 예정이다.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4년까지 섬유쿼터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WTO 농산물협정과 UR 일정에 따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지급을 점진적으로 줄여갈 것이다. 기존 IAP 이행사항과 98년도 추가사항은 없다.

2) 평가

미국은 96, 97, 98년 3년간 거의 동일한 IAP를 제출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성과를 IAP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섬유쿼터 폐지와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에 있어서 구체적 성과가 내년도 IAP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반덤핑 조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바 반덤핑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반덤핑 조치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차. 베트남

1) 주요 내용

수출입금지 품목, 쿼터나 면허가 필요한 수출입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출입이 허용된다. 베트남은 국가안보, 건강, 환경, 문화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쌀수출과 무역상대국이 베트남 상품에 쿼터를 유지하고 있는 상품의 수출에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미발달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품, 선경영(line management)목록에 포함된 수출입품목, 재수입용 수출품, 또는 재수출용 수입품 등에는 면허가 필요하다. 베트남은 98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98 IAP 주요 내용은 단기(1999~2000)적으로 선경영(line management) 품목을 검토하고 HS 코드에 따라 정리할 예정이다. 중기(2001~2010)적으로는 비관세조치에 관련된 법체계 정비와 일관성 없는 비관세 조치 제거를 위한 일정을 마련하고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문의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수입면허제나 수량제한을 받고 있는 상품을 점진적으로 자동면허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장기적(2011~2020)으로는 신고체계 구축과 무역정책의 정기적 검토를 시행하고 정유·석유와 비료 수입시 특정한 지점을 통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2) 평가

APEC 신규회원국으로서 적절한 IAP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이행사항의 제시가 필요하다.

3. 종합평가

회원국들의 비관세조치분야 개별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서술 내용이 부실하고 이행사항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IAP 포맷에 맞지 않는 형태의 IAP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0개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은 97 IAP 이행사항이 전무하고 98년 신규제안 사항도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호주만이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신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IAP제출 포맷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IAP 포맷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신규회원국으로서 금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감축과 철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IAP상에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모든 이행을 WTO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바 이는 APEC의 일방적 자유화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관세조치의 완화/철폐를 위해서는 비관세조치 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UNCTAD의 경우 64개 항목의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IAP의 경우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항목수를 확대하여 구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III 서비스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 회원국은 다음을 통하여 아태지역에서의 자유공개무역을 추진한다.

- ① 서비스 교역에서 시장접근 제한사항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킨다
- ② 서비스 교역에서 우선적으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점진적으로 부여한다.

지 침

APEC 회원국은

- ① WTO의 서비스 협상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며,
- ② 서비스협정에 따른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상의 양허를 확대하고 가능한 한 최혜국대우 면제를 폐지하며,
- ③ 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을 고려한다.

1. 97년도 IAP 요약

가. 호주

<사업서비스>

- ▶ 신규사업시 호주달러 천만 달러 이상, 기존기업 취득시 호주달러 5백만 달러 이상이면 허가필요.

- ▶ 조정서비스, 조산부,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조사 서비스, 제조업 부대 서비스 허용.
- ▶ 대부분의 회계 및 관련자문서비스는 제한 없음.
- ▶ WTO의 회계사 자격 상호인정 가이드라인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2000년까지 호주 회계기준을 개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
- ▶ 외국변호사가 호주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자문 가능.
- ▶ 기업법 개정 중.
- ▶ 외국인 의사는 별도의 시험이나 공부를 추가로 하여야 하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10년 정도 기다려야 함.
- ▶ 계획: 각 지방정부가 외국변호사의 영업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가하도록 유도; 98년 중 기업법 개정 완료; 엔지니어링분야의 상호자격인정 추진.

<통신서비스>

- ▶ 독립인 우편서비스의 지속여부 검토
- ▶ 전기통신서비스: 97년 타결된 WTO 협상내용을 기재하였음(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통신서비스에 제한이 없으며 정부소유 Telstra 주식의 35%를 외국인에게 개방하되 일인당 5%의 상한선을 둬; 경쟁 촉진정책(참조문서 상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 보편적 서비스의무 부과).

<교육서비스>

- ▶ 초등교육 서비스, 성인교육 서비스 포함.

<금융서비스>

- ▶ 97.7월 WTO 금융협상에서 제시한 개선내용: 증권거래소의 상호주의 폐지, 은행의 호주연방은행 주식 취득 금지 폐지, 은행의 다른 회

사 주식의 5% 이상 취득 금지 폐지, 연방정부의 보증과 관련한 신규진입 개정, 공인통화시장달러 및 관련제한 사항 폐지, 외국은행의 호주내 기채금지 폐지, 외국계은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한조치 폐지 등.

- ▶ 97. 4월의 FSI 보고서에 따라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외국계은행의 국내주요 은행 인수를 폐지하고 모든 종류의 인수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함.
- ▶ FSI 보고서에 따른 개선 내용: 규제조치의 합리화, 금융감독기능과 공정경쟁정책의 균형, 예금자 보호 유지, 결제제도의 효율성, 공정경쟁 및 신뢰성 촉진, 효율적인 정보공개와 소비자 보호, 기타 효율성 증진 조치.

<건강관련 및 사회서비스>

- ▶ 병원 허가 및 운영권한은 지방정부 소관이며 위치, 규모 및 서비스 종류에 대한 지침이 있고 설립자의 “평판이 좋아야 한다”라는 조건도 있음.
- ▶ 연방정부의 인가는 거의 자동적으로 주어지나 보통 투자규모가 크므로 연방정부의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지침을 준수해야 함.
- ▶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는 수평적 조치 외에 제한사항이 없음.

<해운서비스>

- ▶ 5백만 호주달러 이하의 기존기업 인수나 천만 호주달러 이하의 신규진출은 통보의무 면제; 전장 25미터 이상이고 호주인이 50% 이상 소유한 선박은 호주국기 게양 가능; 외국선사의 진출은 자유이며 수출시 국적선 이용의무도 없으나 수출시 일정화물에 대한 선사제한이 있음(이는 적절한 서비스를 경쟁적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

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무차별적으로 적용됨); 해운동맹에 가입하여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시장지위를 남용하면 적용받음; 연안운송시 허가선박이 없으면 허가받지 않은 선박도 공익상 필요하다면 운영 가능.

- ▶ 선원동반 선박임대, 선박 유지보수, pushing & towing 서비스상 제한 없음.
- ▶ 항만운영은 지방정부 소관이나 일부 민간이 운영하는 항만이 있으며 일부 터미널 및 하역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 임대계약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내외국인간에 차별은 없음.

<항공서비스>

- ▶ 협상에 노력을 경주하여 여객수송능력을 15%(일주에 보잉 747 116대분) 증가시켰고 7개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함.

<화물서비스>

- ▶ 지난 1년간 화물수송능력을 주당 보잉747 33.5대분을 증가시켰음

<에너지서비스>

- ▶ 98년 상반기까지 가스부문에 경쟁도입(제3자의 기존설비 접근 및 이용권 보장).

<전기서비스>

- ▶ 97.5월 전기서비스 자유화계획의 1단계를 실시하고 2001년까지 완성.

나. 브루나이

- ▶ 통신서비스: 민영화와 자유화 검토, 점진적으로 경쟁도입.

- ▶ 기본통신: WTO기본통신협상에서 옵저버 자격에서 협상참여자로 전환하고 양허표를 제출.
- ▶ 해운서비스는 오히려 삭제됨.
- ▶ 전기서비스: 산업별로 자가발전을 권장함.

다. 중국

<금융서비스>

- ▶ 1979년 개방 이래 1997년까지 276개 은행, 151개 보험회사, 54개 투자증권은행 총 510개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가 개설됨.
- ▶ 96년 말까지 131개의 은행 지점, 5개의 100%의 외국계은행 5개의 합작은행 6개의 투자은행 8개의 외국인투자 보험회사, 38개의 리스 회사가 개설됨.
- ▶ 96. 12월 인민폐의 태환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외국투자 기업이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가 허용되었으며 외환사용제한도 폐지되었음.
- ▶ 97년 중에 시티은행 등 9개의 외국은행이 인민폐의 예수, 대출, 결제,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기간이 시작되었음.

<에너지서비스>

- ▶ 96년 말까지 15,000MW의 13억 달러에 해당하는 28개의 프로젝트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인가 받았음.
- ▶ 형태는 합작투자, 한시적 합작투자, 전액투자 등으로 다양하며 기존 설비의 개보수도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외국투자는 화력발전에 집중되어 있음.

<운송서비스>

- ▶ 96년 IAP 이래 4개의 해운협정과 2개의 자동차운송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총 대출금액은 18.2억 달러에 달함.
- ▶ 96년 말 18개의 전액 외국인투자 선사와 700개 이상의 합작 육운 회사가 설립됨.
- ▶ 최근 상해해운교환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항만법 초안이 완료되었고, 도로법은 97년 중에 공포될 것임.

<전기통신서비스>

- ▶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개방정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의 계획을 준비중임.

<법률서비스>

- ▶ 72년부터 15개 도시를 지정하여 시험적으로 외국변호사기업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였으며 96년 말 현재 75개의 홍콩 및 외국 변호사기업의 사무소가 개설되었음.
- ▶ 외국변호사 기업은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함: 한 지역에 하나의 사무소만 개설할 수 있음; 직접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합작할 수 없음;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 외국법이나 국제법만을 다루고 외국기업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중국법을 다루거나 중국법정에 설 수 없음.

<회계서비스>

- ▶ 회계서비스는 이미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개방되어 있음.

- 대표사무소: 제한없이 설립가능.
- 계약사무소: 연 2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액이나 200명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기업과 계약 가능.

- 회원기업: 외국기업은 중국관계법에 따라 중국기업을 회원기업으로 가입시킬 수 있음.
- 임시운영허가: 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은 임시운영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외국인도 비회원용 회계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라. 일본

<통신서비스>

- ▶ KDD와 NTT를 제외한 모든 1종 사업자(무선사업 포함)에 외자제한 폐지.
- ▶ 국내의 공전접속 허용, 이동통신 요금의 사전허가제 폐지.
- ▶ 망간접속기준 개정, 1종 사업자의 과잉공급 방지 조항 삭제, NTT의 3개 회사분리 및 국제서비스 제공 허용을 위한 법 개정.
- ▶ APII 기술 센타를 97.2월에 설립.
- ▶ 위성방송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전신고제 폐지.
- ▶ APEC의 EDI 파이로트 프로젝트 수행.
- ▶ 개별계획: 97년 중 국제 공전접속 허용; 새로운 접속료 기준 제정, 국내외간 가상쇼핑몰 접속, EDI상의 인증절차 시험, 저궤도위성의 단말기 자유화, 망간접속 및 활용 기술의 공동개발 시작.

<운송서비스>

- ▶ 민간 및 외국항공당국이 발행한 항공인증(airworthiness) 인정.
- ▶ 96. 11월부터 표준신청서 제정 등으로 항만에서의 절차 간소화.
- ▶ 개별계획: 99년 개선되는 NACCS와 연계하여 항만절차의 전산화 검토

<에너지서비스>

- ▶ 97.4월부터 자가발전의 판매 및 전기회사의 전송설비 이용 허용.
- ▶ 97.7월 석유수출 승인제도 폐지.
- ▶ 개별계획: 97년 중 정비소의 주유소 허가 보유 요건 폐지.

<금융서비스>

- ▶ 2001년까지 자유롭고 공정하며 세계화된 금융체제 확립.
- ▶ 개별계획: 원칙허용 및 사전신고제 폐지, 외국환은행인가제도 지정 증권회사제도, 통화교환제도를 98.4월 중 폐지하여 외환사용제도 자유화.

<사업서비스>

- ▶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절차를 개선하여 법률서비스 자유화 추진.

마. 멕시코

- ▶ 회계서비스분야에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을 없애기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개정함.
- ▶ 우편, 전신 서비스는 정부 독점임.
- ▶ WTO 기본통신 협상에서 멕시코는 전화, 데이터 패킷교환, 팩스, 페이징, 셀룰러 전화 서비스를 양허함; 국경간 공급에서는 제한이 없으나 시장접근에서 국제통화는 멕시코 교통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설비를 경유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 셀룰러 전화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되며, 셀룰러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국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함; 부가통신서비스에는 제한이 없으며 교통통신부에 등록으로 충분함.

바. 필리핀

- ▶ 통신서비스: WTO 기본통신서비스 협상에 양허표를 제출하였음
- ▶ 에너지서비스: 96. 10월 및 97. 1월의 법개정으로 후방(後方) 석유사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화가 추진됨; 여기에는 석유가격안정기금 폐지, 원유 및 정유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민간업자에게 제공하던 외환 선물거래 보장 폐지, 원유 및 정유제품의 가격통제 폐지.

사. 대만

<수평적 조치>

- ▶ 직접투자: 외국인은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설립가능; 회사법에 따라 지점개설 가능; 해당 부서의 승인을 얻어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고 자격을 갖춘 경우 사무실을 개설하고 서비스 제공 가능.
- ▶ 주식투자: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외국인 1인당 10%, 합계 25% 미만 허용.
- ▶ 일시적 주재: 상업적 방문자는 90일 체류 가능; 기업내 전근자는 3년 체류 가능하며 1년 연장 가능; 외국인 고용자는 3년 이내 체류; 상업적 주재없이 계약에 따라 입국하는 경우는 90일 이내의 계약기간 동안 체류 가능.
- ▶ 외환사용: 경상거래, 직접투자 및 무역에 관한 외환거래는 자유; 거주자는 년 5백만 달러, 기업은 년 50억 달러까지 사용가능; 단기 주식투자에 관한 제한은 거의 없음;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투자원금 회수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됨.
- ▶ 토지취득: 외국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주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으나 상호주의에 의함.

<사업서비스>

- ▶ 대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대만 자격증이 필요함; 96. 12월 법개정안을 제출함.
- ▶ 개별계획: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의 상호주의 폐지 검토; 외국변호사는 국제법이나 자국법에 대한 자문만 하고 대만변호사의 보조나 자문역만 가능; WTO가입 3년 후에 외국변호사와 대만변호사간의 합작 가능.
- ▶ 다음 서비스에는 수평적 조치 외에는 제한없음: 컴퓨터 관련, 연구 개발, 광고, 시장 및 여론 조사, 경영자문, 경영자문 관련, 기술시험 및 분석, 광업관련, 농업관련 자문, 동식물 사육 및 농림, 엔지니어링 관련 과학적/기술적 자문, 유지보수(선박, 항공 및 운송장비 제외), 사진, 포장 서비스

<통신서비스>

- ▶ 1종통신 사업자의 대표자 및 이사의 과반수는 대만인이어야 함; 96. 4월 기업내 통신을 위한 전용선 이용을 자유화; 97. 8월부터 위성TV 방송 허가신청서를 접수.
- ▶ 개별계획: WTO 협상결과를 참조할 것이며 1종통신 사업자의 외자 제한을 재검토; 고정 및 이동 위성서비스를 99년 말에 자유화; 시내, 시외, 국제 전화, 전용선,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2001. 7월에 자유화.
- ▶ 영화서비스는 편당 필름 37벌 수입이 가능하며 한 지역에서 11개 또는 한 시에서 6개 이상 동시에 상영할 수 없음.

<금융서비스>

- ▶ 97. 5월의 법개정으로 일부 보험료율 및 보험계약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으면 사전 인가 대신 사전 신고로 대신할 수 있음.
- ▶ 은행: ADB는 70억, CABEI는 68억, EBRD는 60억, NODIC는 40억

대만달러의 공채발행 허용; 실수요 증명이나 관계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외국환 선물거래 가능(기간 및 금액상 제한이 폐지됨).

- ▶ 증권: 외국증권사의 인력고용 요건 및 증권거래 경험 요건을 폐지; 최소 매장면적 요건 폐지; 외국인도 대만예금채(TDR)를 통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기재 가능; 96. 11월부터 외국증권의 거래 허용; 외국인 고용상 제한 폐지.

<여행사 및 여행안내 서비스>

- ▶ 96년 IAP에 따라 외국인도 여행사를 설립하거나 지사를 설치할 수 있음.

<항공서비스>

- ▶ 개별계획: 공항터미널 지상서비스, 공항외 항공화물서비스, 항공화물 주선 서비스에서 외자 및 이사진의 외국인 비율을 1/3에서 1/2로 상향 조정.

<육운서비스>

- ▶ WTO에 가입하면 자동차 임대 서비스와 수출입 화물 운송서비스를 자유화할 것임.

자. 미국

- ▶ 장비인증 조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통신분야의 상호인정 협정을 97년 말까지 체결하도록 노력.
- ▶ 97. 7월 금융분야의 양허표 개선; 은행분야에서는 최근 개혁조치를 포함시켰으며 보험분야에서는 거주요건 및 국적요건을 완화하고 여러 주에서 설립요건을 완화함; 모든 양허는 MFN에 따름.

- ▶ 항공서비스: open skies 정책을 추진하여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과 이미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국과 추진 중임; 향후 피지, 홍콩, 마카오, 필리핀, 태국과도 추진할 예정임.

2.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가) 사업서비스

(1) 전문직서비스

법률서비스는 96년 3월 제정된 외국인법률서비스 법안에 따라 ACT, NSW, Victoria 등 여러 지방정부가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이 법안은 외국인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97년 3월 기업법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회계기준, 자금모집, 이사의 책임 및 기업지배구조, 인수합병, 전자상거래, 금융시장 및 투자상품의 6개 분야에 대한 검토작업을 시작하였으며 98년 4월 처음의 3개 분야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98년 7월 의회에 제출되었다.

회계기준에 대하여는 국제기준을 따르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FRC를 설치하고 외국증권시장의 국제표준수락 여부, 국제회계표준위원회(IASC)의 진전사항, 국제증권위원회협회(IOSCO)의 IASC 수락 여부 등에 대하여 권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엔지니어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선행규약(best practice)을

개발하고 이를 위하여 ‘APEC 엔지니어 등록기구’를 설립하였다. 건축, 치과, 수의, 조산부, 간호원, 물리요법 서비스에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며 거주요건이 있다.

(2) 컴퓨터 관련, 연구개발, 부동산, 임대, 기타서비스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광고서비스에서 라디오, TV, 영화용 광고의 제작이나 방송은 제외된다(97년과 동일).

<향후계획>

97년 말까지 WTO에서 자격요건 및 절차 지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최근에 합의된 상호인정지침을 이행할 것이다. 또한 모든 지방정부가 동일한 외국변호사 법안을 채택하도록 하고, 어느 한 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호주 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엔지니어링 자격의 상호인정과 선행규약(best practice)을 개발하고 엔지니어의 상호인정을 위한 ‘APEC 엔지니어 등록기구’ 설립계획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나) 통신서비스

우편서비스 독점 상황을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다.

- ▶ 2000년 7월부터 50 250g 사이의 국내우편 독점을 폐지
- ▶ 2000년 7월부터 착신국제우편의 독점을 폐지
- ▶ 2002년에 진행사항을 점검
- ▶ 경쟁사업자에게 호주우편국의 네트워크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 허용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한도없고변경도없다.

라) 유통서비스: 석유소매업추가(에너지서비스에포함)

마) 교육서비스: 초등 교육, 성인 교육이 제외되었다

바) 환경서비스: 제한도 없고 변경도 없다.

사) 금융서비스

97년 IAP의 6개 자유화 조치에 추가하여 4대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금지 조치를 폐지하였으나 외국인투자 및 합병법(FAT) 및 금융법(FSSA)에 따라야 하며 외국인이 금융기관 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 건강 및 사회서비스: 제한도 없고 변경도 없다.

자) 관광 및 관련서비스: 제한도 없고 변경도 없다.

차) 여가,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제한도 없고 변경도 없다.

카) 운송서비스

(1) 해운서비스

정부소유 해운사인 ANL을 민간에 매각하였으며 항해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선박등록법을 검토한 결과 커다란 경쟁제한요소는 없었다. 외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연안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허가비용도 인하하였으며 크리스마스 섬 무역과 대부분의 관광선 운항을 연안운송에서 제외하였다.

(2) 항공서비스

97 98년 동안 17개의 쌍무협정을 체결하였고 여객항공편을 11.7% 증가시켰다. 화물운송을 위해 보잉 747 58편을 매주 증편시키고(122% 증가에 해당함), 4개국(2개국은 APEC 회원국)과는 무제한 화물운송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멜버른, 브리스베인, 퍼스 공항 외에 14개 지역 공항을 99년 임대하였는데 시드니 공항의 운영권은 제2공항의 환경평가와 소음문제를 해결한 후에 매각할 예정이다. 또한 ICAO 표준 및 미국표준과 조화를 추진 중이며, 98년 7월 미국표준을 따라 35개의 항공기 및 부품 표준을 제정하였다. 앞으로 현재의 국제항공서비스 제도를 검토하고, Airservices Australia(항해의 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소유 기업)의 서비스에 경쟁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3) 철도서비스

기본적으로는 과거 규제완화에 있던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인데, 국영 철도회사인 Australian National의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철도운송회사인 National Rail의 주식도 매각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고 ARTC를 설립하여 브리스베인과 퍼스 간의 철도네트워크 접속을 관할하도록 할 것이다.

타) 기타서비스

(1) 석유 소매업

98년 7월에 발표된 개혁계획의 주요 내용은 98년 8월부터 도매가격 제한 폐지, 석유공급자와 소매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정유업자의 주유소 보유 제한을 폐지, 독립운영업자 및 대량구매자의 터미널 접속 허용이다. 또한 관민합동으로 이 분야 자유화에 관한 행동계획을 작

성중이며 99년 초에 완성할 예정이다.

(2) 가스

제3 공급자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접속을 규제하는 법안을 97년 11월 제정하였으며 98년 9월 현재 연방, NSW, Victoria, Queensland, South Australia, ACT, Northern Territory가 시행법안을 제정하였다. 국가경쟁위원회(NCC)가 파이프라인과 같은 필수설비에 대한 제3자의 접속권 허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3) 전기공급업

이 분야의 경쟁도입 목적은 정부소유 수직적 결합 산업의 분할, 전기의 생산과 판매에 경쟁 도입, 민간 참여 유도에 있다. 이 분야의 자유화 계획은 단계별로 시행되며, 3단계 계획이 98년 3월에 시작되기로 하였으나 시스템운동을 위한 정보기술도입 상의 문제로 다소 연기되었다. 이 분야의 자유화를 위하여 전국의 전기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회사인 NEMMCO와 전기관련법 감독을 위한 기관인 NECA를 설립하였다.

2) 평가

호주의 98년 IAP의 특징은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접근 확대 노력과 공공부문(utilities)의 과감한 민영화 및 경쟁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서비스 중 기업관련법 개혁, 회계기준의 국제표준화, 법률서비스의 시장접근 확대,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상호인정 확대 노력 등은 평가받을 만하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송서비스에서도 국영해운사, 철도회사 및 운송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에너지 부문의 가스와 전기 사업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에서 4대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호주 IAP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신규사업자가 기존 독점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문에서 공정경쟁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우편, 통신, 전기, 가스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미국과 ‘open skies’ 협정을, 뉴질랜드와 항공서비스협정 체결하였고 WTO 기본통신협상 결과를 이행하였다.

2) 평가

미국과 ‘open skies’ 협정을 체결한 것 외에는 특기사항이 없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가) 금융서비스

외국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숫자가 97년까지 544개(97년 IAP에는 510개)였다. 은행업을 개방한 5개 지역 및 24개 시에는 142개의 은행지점(97년 IAP에는 131개)과 7개의 합작은행(97년 IAP에는 5개)이 설립되었다.

나) 유통서비스

유통업에서 합작기업의 설립을 모든 省의 수도에서 허용하며 외자계 무역기업의 설립을 모든 省의 수도에서 허용하고 합작 chain store의 숫자를 확대한다.

다) 에너지서비스

전력발전업에서 300MW (97년 IAP에서는 250MW) 이상의 발전소를 허용하며 97년 말까지 20,000MW 21억 달러의 35개 프로젝트가 허가받았다(97년에는 15,000MW 13억 달러의 28개 프로젝트). 浮游選鑛, 토탄 개발, 석탄액화, 저칼로리 석탄 활용 및 석탄의 파이프라인 운송, 석탄광에서의 가스개발 등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며, 석탄광의 지질 탐사, 중소 석탄광(노천광 포함), 중대형 선광공장 등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

라) 관광서비스

관광업에서 각 省 및 자치구 등에서 1개의 합작기업을 허용한다(97년 IAP에서는 5개 시에 국한).

마) 해운서비스

국적선 적취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데 1984년부터 제도개선을 시작하였고, 1988년의 입법으로 모든 국적선 적취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중국은 Liner Code의 회원이며, 51개의 쌍무협정을 가지고 있으나 이 중 6개의 협정만이 화물공유(cargo sharing)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조항이 사용된 적이 없고 중국의 해운사가 어떤 국제해운연맹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4-4-2 제도가 적용되지도 않았으며 향후 어떠한 화물공유협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태국과의 협정 연장시에도 동조항을 삭제하였다. 중국항구간의 연안운송은 중국국적 선박에 국한되나 합작기업의 선박은 중국선으로 등록 가능하므로 외국기업은 합작기업을 통하여 연안운송이 가능하다. 1990년에 정기선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외국선사는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통신부에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상업적 주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업장이 중국인 합작기업의 경우 내국인 지분이 50% 이상이면 소유선박을 중국 국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국에는 외국기업의 지사설립에 관한 법률이 없지만, 신축성을 발휘하여 해운업의 경우 지사설립을 허용하였으며 지사들은 본사를 대신하여 화물 수취, 예약, 선하증권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물주선업, 해운업 및 보조 서비스(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포함)에서도 합작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내국민대우>

92.4월부터 차별적인 항만 사용료 제도를 폐지하며 연안시 및 경제특구에서 설립된 외국기업의 법인세는 33%에서 24% 또는 15%로 감축된다. 또한 10년 이상 영업하는 합작기업은 영업이익 발생 후 2년간은 소득세 면세, 3~5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일체의 해운보조금은 없으며 정부화물에 대한 규제도 없고 어떤 기업도 모든 상업적 화물의 운송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

유통업 허용지역의 단계적 확대, 해운업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언급 외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어 별다른 평가 내용이 없으며, WTO 가입을 신청한 국가이나 통관에 대한 개방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가) 법률서비스

외국법의 지식이 필요하거나 외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가진 당사자가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당사자가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기업이 관련된 경우에, 외국법사무변호사와 일본변호사의 합동법률회사가 최종판결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변호사는 제3국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제3국법에 대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며, 외국변호사의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일본에서의 근무기간 중 자국법에 대한 자문할 경우 1년까지 경력기간에 포함한다.

나) 건축서비스: 제한없음.

다) 광고서비스: 제한없음.

라) 통신서비스

98. 3월 NTT의 상호접속 약관을 확립하고 상호접속을 위한 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KDD 법을 개정하여 98. 7월부터 외자제한을 폐지하였으며, 98. 4월 최종소비자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무선법을 개정하여 외국시험기관의 인증서 및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접속료산정에서 장기증분비용방식(LRIC)을 도입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까지 가능한 한 접속료의 인하를 추진한다. CATV에 외국인투자 제한 폐지를 위한 검토를 완료할 것이다.

마)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한없음.

바) 유통서비스: 연구개발 보조금을 제외하고 1 3의 mode에 제한 없다.

사) 환경서비스

선박에 의한 폐유처리 사업자의 숫자 제한이 남아 있었으나 98. 5월에 폐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서비스는 정부서비스로 간주하여 제외한다.

아) 금융서비스의 단기계획

투자신탁상품 개발, 상품개발 자유화, 은행 등의 투자신탁 상품 OTC 판매 허용 등을 통하여 투자신탁을 확대하였고 증권파생상품을 완전 자유화하였다. 또한 증권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증권회사 서비스의 다양화, 자산투자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으며 거래수수료의 자유화(99년 말까지 완전 자유화 추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평가제도를 개혁하고 증권회사의 설립을 등록제도로 개선하고 상호진출도 허용하였다.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 허용 등을 통한 시장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자) 에너지서비스

등록을 위해 필요하던 인증제도를 98. 1월 폐지하였고, 수급조정 및 긴급사태 조치 등에 관한 98. 6월의 석유기본정책에 관한 석유위원회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대규모 소비자에 대한 가스판매 및 대규모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법률개정의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긴급사태 조치, 효율적인 석유탐사 등을 위한 조치 등을 검토하여 2001년에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99년부터 전력사업에 새로운 입찰방식을 도입하여 (특정 화력발전사업을 제외한 모든 전력사업에서) 낙찰자 결정 후 제3자에

의한 조사를 허용하며 회계분리를 도입할 것이다.

2) 평가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많은 분량이 할애된 금융서비스와 에너지 서비스는 구체적 내용이 없이 계획만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통신서비스에서페이징, PCS, 마이크로 웨이브, 고정무선 전화, MMDS, 이동전화 등을 위한 주파수 배분은 경매에 회부되어야 하며, 동시상향(simultaneous and ascendent) 방식에 따를 것이다. 운송서비스에서 외국인투자 지분은 49%까지이며 WTO의 회계분야 지침 작업과 APEC의 전문서비스 자유화작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2) 평가

97년에 비하여 개선된 사항이 거의 없는 편이며, 15%의 국산영화 상영일수라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시청각 서비스분야는 오히려 삭제되었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98.2월에 제정된 석유후방산업 자유화법은 과거의 법률 중에서 위헌이라고 판정된 부분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자유화는 첫 5개월의 전환기를 거쳐 진행된다. 즉, 수입 원유 및 석유에 3%의 단일 세율 적용; 수출입, 제조 및 유통 서비스와 같은 후방산업을 자유화; 카르텔 독점 금지 및

불공정 행위 금지; 투자위원회 등록 후 5년간 인센티브 부여가 그것이다. 98. 3월 후방석유사업은 완전히 자유화되었으나 LPG, 일반 휘발유, 케로센은 RA8479 법안의 자동가격공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에서 투자회사(investment house)의 외국인 지분을 49%에서 60%로 확대하고 과반수 이상의 필리핀 임원이라는 제한을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외국인 임원이라는 제한으로 대체하였다. 금융회사(financing company)의 외국인 지분을 40%에서 60%로 확대하였다.

2) 평가

석유산업의 일부 자유화 및 금융분야의 지분 상향 조정 외에는 변동 사항이 없어 언급할 사항이 별로 없다.

사. 대만

1) 주요 내용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개인투자 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하였다. 법률서비스에서는 외국 변호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WTO에 가입하는 즉시 허용한다(97년 IAP에서는 가입 후 3년에 허용). 통신서비스에서 97. 12월 위성방송 릴레이 규정을 발표하여 위성과의 up-link 서비스를 개방하였고 98. 6월 고정 및 이동 위성서비스의 허가신청 접수를 발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98. 12월까지 상호접속 규정을 발표하고, 외국인투자는 직접 20%, 간접 60%까지 허용하나 중화통신은 직간접을 포함하여 20%로 제한한다. 또한 99. 1월에 유선사업 허가신청을 발표하였다. 영화수입 별수를 38벌에서 50벌로 확대되 타이페이와 카오슝에서 한 구역에서는 18곳(97년에는 11곳), 지방에서는 10곳(97년에는 6곳) 이상은 상영이 불가하다. 또한 한 극장에서 외국영화를 동시에 3편 이상은 상영할 수 없다.

97년중 취해진 보험분야 조치로는 97. 5월 국제보험이나 특수한 상황의 보험, 또는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보험의 경우에는 허가 대신 통보로 대체한다. 보험 모집인, 브로커, 조사인 등이 지점설치 이전에 5년간의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하고 상호주의도 폐지하였다. 98. 1월에는 개인사고보험 여행자사고보험의 요율을 개정하여 요금자율화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98. 2월 외국보험사의 지사설립 신청기간을 7월 1일에서 연말까지로 확대하였다. 98. 6월에는 손해보험상품의 검토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보험약관을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단, 재무부 제출용은 중국어로 작성). WTO에 가입하면 기존상품의 검토기간은 15일, 신규상품은 3개월로 단축하고, 순자산이 대만 20억달러 이상인 외국의 상호보험회사의 직접 지점 설치를 허용할 것이다.

97년중 취해진 은행분야 조치는 없으며 97중 취해진 증권분야 조치로는 97. 5월 선물거래 허용하였고, 97. 6월부터 외국지점을 포함한 증권사가 보증사채(warrants)를 발급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위험관리인(risk manager)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외국의 공기업이 대만예수처(Taiwan Depositary Receipts)를 통한 기채나, 사채발행 또는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97. 9월부터 외국증권회사의 일반인을 위한 주식공모의 대행을 허용하였으며 국내상장회사의 주식의 해외증권 시장 거래도 허용하였다. 98. 7월부터 증권회사의 국내선물거래를 허용하였고; 98. 6월부터 적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하였다. 98. 7월부터 대만 국제상품거래소에서 대만증권거래소 선물지수 거래를 허용하였다. 향후 증권사의 이자율 swap을 허용하고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자문회사의 임의계정(discretionary account) 운영을 허용할 것이며 옵션과 같은 신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완전한 증권시장을 개발할 것이다.

공항지상조업 서비스, 항공화물(off-air) 서비스, 항공화물주선 서비스에서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 이사의 비율을 50%로 제한한다(97년에는 1/3). 외국의 항공화물주선사는 제한없이 지사설치가 가능하며 WTO에 가입하

면 상기 제한을 폐지할 것이다.

2) 평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성실하게 매년 update 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매우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수평적 조치 중 외국인투자한도를 30%로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불충분하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상호주의에 의하고, 농림수산업, 소금생산, 광산, 수자원 개발 등에서는 외국인 소유가 불가능한 것은 제약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 미국

1) 주요 내용

99. 1월 금융서비스협상 결과를 비준하고 MFN면제를 철회하였으며, 항공분야의 'open skies' 정책 추진 결과 아시아지역의 브루나이,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미주지역의 칠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캐나다, 홍콩, 일본, 마카오, 필리핀, 태국과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벨지움,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스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아루바, 요르단, 화란 엔틸레스, 우즈베키스탄과 협약을 체결하여 총 31개국과 협약이 체결되었다.

2) 평가

'open skies' 추진결과를 제외하고는 추가된 사항이 없다.

3. 종합평가

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국가는 호주, 중국, 대만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네트워크분야의 경쟁정책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국과 대만은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다. WTO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인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 IAP를 작성한다는 점과 IAP의 작성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의 국가들은 기본통신이나 금융분야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IAP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도 명확한 IAP 기재원칙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재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질적 진전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어도,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는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 방식을 따른 시장개방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을 위한 계획표 제출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 파악과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표의 제출은 기존의 IAP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IV 투자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유롭고 개방된 투자를 달성함.

- ① 각 회원국의 투자체제와 전반적인 APEC 투자환경을 자유화함 특히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고 내국민대우를 확대시키며 투명성을 증대시킴
- ② 기술지원 및 협력 통한 기업활동을 원활화시킴

지 침

- ① 상기 목적 달성위해 예외사항과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철폐함. 이를 위한 초기 단계의 기본틀로서, WTO협정, APEC의 비구속적인(non-binding) 투자원칙, 기타관련 국제협정 및 APEC에서 개발되고 공동으로 합의된 지침을 활용함.
- ② APEC의 쌍무 투자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함.

1. 97년도 IAP 요약

가. 호주

- ▶ MAPA 1차 IAP의 주요 내용: 자국의 외국인투자규정에 따라 최혜국 대우를 적용함. 또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심사제도를 운영하며 97년 중반까지 “비민감부문”(미디어, 방송 제외)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검토할 예정임.

- 그리고 통고 의무 외국인투자 총액 한도를 5,0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며, 허가 거부의 요건을 국가안보, 공공질서, 환경보호에 국한 하도록 강화함.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투자규제는 97년 중반까지 합 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임.

▶ 2차 IAP의 경우 위의 내용과 동일함.

나. 일본

- ▶ 1차 IAP의 주요 내용: 투자제도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기업부문과 의 대화를 증진함. 투자제도 자유화의 주요 내용은 외환통제법 개정, 2006년까지 “Import and investment Law”의 확대, Japan Development Bank(JDB)를 통해 기업간 국제협력 활성화 위한 대 부시행,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조치 지원(보조금, 세제 및 금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기타 외국변호사들의 법무서비스 허용, Visa 업무 간소화, 기업연금, 퇴직수당 등 검토·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2차 IAP: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 직접투자와 관련 외환관리규정의 완화, 규제완화실천계획에 입각하여 OECD규약에 유보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고려, 사후보고의무의 완화, 지방정부의 해외자본 조달관련 제도의 개선, M&A, Joint venture 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다. 중국

- ▶ MAPA: 단기적으로 외국인투자 가능분야 확대 및 투자규정의 투명 성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투자를 위한

해외투자관련 분야 확대와 관련 제한규정을 축소함. 또한 서비스 투자개방을 위한 Pilot program을 실시할 예정임.

- ▶ 2차 IAP: 외국계 은행의 업무기관수를 점진적으로 증대시킴. 도소매업, 무역업 등에 대한 지분협력 및 Joint-venture 관련 시험적 계획을 확대함. 또한 외국인투자허용분야를 확대함.

라. 대만

- ▶ MAPA: WTO의 가입과 동시에 자동차산업에 부과하고 있는 국내부품사용의무 철폐, 재투자 및 투자금지 요건의 완화
- ▶ 2차 IAP: 투자관련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함. 투자형태, 과실송금, 국내부품사용의무 비자제도 및 심사제도와 관련한 제한의 완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제도 관련 법규의 검토 및 개정.

마. 멕시코

- ▶ MAPA: 항만 및 천연가스의 수송, 유통, 저장과 관련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기 위하여 입법조치함 1999년에는 제조업, 자동차 부품, 장비 및 액세서리 부문에 있어 49%의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철폐할 예정임.
- 국가간 이동(여행객, 여행, 운수)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참여비율을 2001년에는 현행 49%에서 51%로 2004년에는 100%까지 허용할 예정임.
- ▶ 2차 IAP: 상기 내용과 동일함.

바. 필리핀

- ▶ MAPA : 일부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자유화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하고 단계적인 투자자유화 조치 시행예정(콘도미니엄 관련 법률을 공업용 부동산에까지 확대적용하며,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한 조건 완화 및 이윤증대를 위한 조치 고려 중), 송금, 분쟁해결, 입국 및 체류 관련 편의성 제고,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상한선 확대(투자 및 금융회사).
- ▶ 2차 IAP : 공동주택에 관한 법의 적용을 공장부지에까지 확장하며, 외국인의 본부 및 창고설립에 대한 제한의 완화와 혜택의 증가 등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보다 높은 참여수준의 허용을 고려함.

사. 대만

- ▶ 변동사항 없음.

아. 미국

- ▶ 안보와 관련되어 제한 및 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자유로운 외국인투자를 보장하고 있음.
- ▶ 2차 IAP : TRIM의 작업진행과정 및 WTO에서의 투자에 있어서 교육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지함.

2.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가) 현황

호주의 투자정책은 Foreign Acquisition and Take Over Act of 1975와 관련 부처의 각종 정책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투자국에 따른 차별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는다. 둘째, 설립전 투자(pre-establishment investment)에 대하여 매우 자유로운 검사체제를 갖고 있으며 설립후 투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내국민대우를 하고 있다. 셋째, 연방,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위하여 보건, 안전, 환경규정을 완화하지는 않는다. 넷째, 제한적으로 투자이행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호주는 36%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 세제로는 30%의 주식원천세율(Equity Withholding Tax) 및 이자원천세율(Interest Withholding Tax) 그리고 로얄티원천세율(Royalty Withholding Tax)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노동환경과 관련하여 최저노동조건으로 노후퇴직연금, 장기근속보상휴가, 보건 및 안전, 출산휴가 및 무급, 남녀비차별, 해고요건, 공공부문의 고용요건 등이 있다. 투자허가절차로는 투자규모, 외국정부 및 기관에 의한 직접투자, 부동산취득, 기존 호주기업의 인수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나) 기존 IAP 이행상황

기존 IA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의 외국인투자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를 적용한다. 둘째, 개방적이고 투명한 심사제도를 운영하며 97년 중반까지 “비민감부문”(미디어, 방송 제외)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검토한다. 셋째, 통고 의무 외국인투자 총액한도를 5,0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며, 허가 거부의 요건을 국가안보, 공공질서, 환경보호에 국한하도록 강화한다. 넷째,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투자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주요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은 제한의 철폐로 요약된다. 첫째, 대중매체 분야에 대한 작은 규모의 포트폴리오상의 지분 획득에 대한 신고의무, 둘째, 외국인에 의한 주요 은행의 경영권 취득 금지, 셋째, 우라늄 광산업에 대한 구체적 제한, 넷째, Optus와 Vodafone 통신회사의 소유권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다.

다) 98 IAP

'98 IA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OECD의 다자간 협상을 고려하여 현 투자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간다. 둘째, 대중매체, 정보통신, 민간항공 등 민감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체적 규제는 제한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셋째, 전반적 자유화를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합리화한다. 넷째, 비 민감분야에 대한 Screening System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5천만 달러의 신고기준의 상향 조정, 안보, 공공질서, 환경보호 및 유산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국익의 저해 요건에 따른 투자 금지 기준의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평가

주요 은행, 통신회사, 광산업 등에 대한 경영권 취득 금지의 철폐 등 구체적인 투자자유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IAP 자체의 구체적 계획에 입각하기 보다는 호주의 전반적

투자정책의 결과이다. '98 IAP 역시 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적 자유화 및 합리화 계획을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Time Frame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98 IAP에서 비민감분야에 대한 'review of the screening system'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IAP에서도 포함되었던 사항이다. 따라서 IAP의 작성에 있어서 그 차이를 분명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

나. 브루나이

1) 현황 및 평가

브루나이는 다음 분야에 대하여 투자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판매업, 휘발유 주유업, 대중매체, 은행업, 무기, 소매업, 주료제조 및 판매업. 그러나 투자국에 따른 차별조치와 투자이행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평가할 만한 기존 IAP의 이행사항 및 98 IAP는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

다. 중국

1) 주요내용

가) 현황

외국인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은 중국경제에 도움 즉, 최신 기술 및 장비의 사용 또는 생산물 상당부분의 수출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의 기술적 특성, 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 산업의 성격, 안보, 공중보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제한은 금지, 제한, 특별조건 및 심사의 형태를 띤다. 또한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국내부품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기존 IAP 이행상황

기존 IAP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 외국인투자 가능분야 확대 및 투자규정의 투명성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투자를 위한 해외투자 관련분야확대와 관련 제한규정을 축소한다. 둘째, 서비스 투자개방을 위한 pilot program을 실시한다. 셋째, 외국계 은행의 업무기관수를 점진적으로 증대시킨다. 넷째, 도소매업, 무역업 등에 대한 지분협력 및 joint-venture 관련 시험적 계획을 확대한다. 다섯째, 외국인투자허용분야를 확대한다.

중국의 IAP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 개방분야를 추가적으로 확대 중이다. 둘째, 외국인투자 기업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투자환경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다) '98 IAP

중국의 '98 IA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중국의 투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셋째, 다음의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개방을 확대해 나간다. 도소매업, 무역업 및 여행대리업(joint-venture) 등에 대한 pilot program을 확대하고, 금융 및 보험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개방을 위한 pilot program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계 자금 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점차적으로 부여한다.

2) 평가

중국의 IAP는 pilot program을 통한 투자개방과 내국민대우의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 투자개방을 목적으로 pilot program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개방스케줄과 기존 프로그램의 평가결과를 IAP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가) 현황

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사후 신고가 원칙이나 국내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안보상의 이유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해당 부처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전신고 의무는 일부 산업 및 공공질서 목적상 적용된다. 또한 상업상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은행 및 증권회사의 지사설립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다. 국제운송업무 허가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제공된다.

나) 기존 IAP 및 이행상황

기존 IAP의 주요 내용은 투자제도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자유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투자제도 자유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환통제법 개정, 2006년까지 “Import and Investment Law”의 확대, Japan Development Bank(JDB)를 통해 기업간 국제협력 활성화 위한 대부시행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조치 지원(보조금, 세제 및 금융) 등. 기타 외국변호사들의 법무서비스 허용, Visa 업무 간소화, 기업연금, 퇴직수당 등 검토·보완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직접투자자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제한을 완화한다: 외환관리규정의 완화, 규제완화실천계획에 입각하여 OECD규약에 유보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고려, 사후보고의무의 완화, 지방정부의 해외자본 조달관련 제도의 개선, M&A, Joint venture 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이다.

IAP의 주요 이행상황은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해진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광산업에 있어서 사전신고제도가 철폐되었다. 둘째, 통신분야에 있어서 KDD 법의 철폐, 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NTT를 제외한 제 1종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철폐되었다. 셋째, 법률서비스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내외 변호사간의 합작법인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다) '98 IAP

'98 IA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명성의 증대로서 이를 위하여 JETRO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FIND(Foreign Investment in Japan Development Corporation)을 통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일본 중소기업공사를 통한 외국인투자 연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본 기업에 대하여 APEC 지역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정부간 대화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직접투자 제도의 APEC 투자원칙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나간다: 외환관리법상의 규제 완화 및 케이블 텔레비전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의 철폐, 투자촉진 조치의 이행,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촉진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 JETRO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 직접투자 촉진활동, M&A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등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본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재검토해 나간다.

2) 평가

일본은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개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 IAP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98 IAP는 정보제공을 위주로 한 투명성의 제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구체적 개방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가) 현황

총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가 100%, 해외직접투자 위원회에 의하여 기존의 허가를 받고 있었던 37개 분야가 100%, 35개 분야가 49% 직접 투자에 개방되어 있으며 나머지 26개 분야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멕시코는 이윤, 로얄티, 이자 등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과 해외 직접 투자관련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나) 기존 IAP의 이행상황

기존 IA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첫째, 항만 및 천연가스의 수송, 유통, 저장과 관련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기 위하여 입법조치한다. 둘째, 1999년에는 제조업, 자동차 부속품, 장비 및 악세사리 부문에 있어 49%의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철폐한다. 셋째, 국가간 이동(여행객, 여행, 운수)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참여비율을 2001년에는 현행 49%에서 51%로 2004년에는 100%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그 이행상황으로는 1996년 외국인 직접투자법의 개정만이 포함되어 있다.

다) 98 IAP

'98 IAP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자동차 조립업, 장비 및 부품업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을 철폐해 나간다. 둘째, 건물 임대업, 건설 등에 대한 49%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허가제도를 99년 1월자로 철폐하였다. 셋째, 국제육상운송에 대한 외

국인 지분참여 한도를 2001년까지 51%, 2004년까지 100%로 확대해 나간다.

2) 평가

'98 IAP가 국제육상운송에 대한 지분참여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IAP와 변동이 없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가) 현황

주택법(Condominium Law)을 산업단지까지 확대 적용, 소매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 금융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확대 등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입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나) 기존 IAP 이행상황

일부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자유화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하고 단계적인 투자자유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송금, 분쟁해결, 입국 및 체류 관련 편의성 제고,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의 상한선을 확대(투자 및 금융회사)한다. 둘째, 공동주택에 관한 법의 적용을 공장부지에까지 확장하며, 외국인의 본부 및 창고설립에 대한 제한의 완화와 혜택의 증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보다 높은 참여수준의 허용을 고려한다. 넷째, 금융회사 및 투자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폭을 40%에서 60%로 확대한다.

다) 98 IAP

주택법(Condominium Law)을 산업단지까지 확대 적용, 소매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 금융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확대 등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입법작업 등 기존 IAP를 계속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조치를 투자위원회로 통합 일원화한다.

2) 평가

필리핀은 전반적인 투자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IAP상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98 IAP는 기존 IAP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으며 따라서 필리핀은 투자자유화 계획을 IAP에 매년 반영하고 이의 이행상황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사. 대만

1) 주요 내용

가) 현황

대만의 투자허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수합병의 경우 사전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그 기준은 시장점유율이다 둘째, 외국인의 신규직접투자, Joint-venture는 투자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둘째, 공중안전 및 안보, 공중도덕, 환경, 법에 의한 독점적 지위부여 등과 관련하여 투자가 금지될 수 있다. 넷째, 주요 산업분야별로 투자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나) 기존 IAP의 이행상황

기존 IA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의 가입과 동시에 자

동차산업에 부과하고 있는 국내부품사용의무 철폐, 재투자 및 투자금지 요건을 완화한다. 둘째, 투자관련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투자형태, 과실송금, 국내 부품사용의무, 비자제도 및 심사제도와 관련한 제한의 완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제도 관련 법규를 검토 및 개정한다.

주요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어 있는 분야에 있어서 자본투자의 증대시 회계감사 기간의 단축, 둘째, 농업용지, 수산업용지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셋째, 외국 사업자의 출입국 장벽의 완화, 넷째, 화교 및 외국인의 투자관련법의 개정, 다섯째, 투자관련 제한의 완화(직접투자허가 대상은 자본 참여지분이 1/3을 초과할 때로 한정, 투자형태에 대한 제한의 완화, 직접투자의 제한이 되는 분야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맞게 조정, 송금제한의 철폐 및 자본의 유출입제한 완화, 투자 금지 대상 몇몇 분야를 투자 제한 분야로 완화), 여섯째, 외국인의 개인 주식 취득한도의 상향조정.

다) 98 IAP

'98 IA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관련 행정기관도 조정해 나간다. 둘째, APEC 회원국과 투자 보호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셋째, WTO 가입과 함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에 적용하고 있는 역내부품사용의무를 철폐한다. 넷째, 국제화와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투자제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한다. 다섯째, 2000년까지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목표로, 반년 단위로 외국환거래의 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나갈 것이며,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허가요건을 유지한다. 여섯째, 외국인에 대한 비자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간다.

2) 평가

대만의 IAP는 여타 국가에 비교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관련 조치들이 대부분 IAP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적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IAP에는 구체적인 실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선계획, 이행의무 철폐의 구체적인 스케줄을 IAP에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 미국

1) 주요 현황 및 IAP

투자허가절차와 관련하여, 방송, 운송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소유허가 제한, 공중이익의 고려, 내국민 비율의무 등의 측면에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R&D 지원금, 에너지정책 관련 금융지원 등을 미국 또는 미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한정하는 내국민 대우상의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조세환경에 있어서 해외투자기업에 대하여 3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고 미국내에서의 소득에 대하여 통상적인 소득세에 더하여 기업세가 부과된다. 외국인 지배 미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미국지사는 매년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안보와 관련되어 제한 및 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자유로운 외국인투자를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 이외에 IAP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평가

미국은 자국의 투자환경이 가장 자유롭다는 전제하에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종합평가

투자분야 IAP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ogor 목표의 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중단기 및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투자분야 IAP의 작성과 이행이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투자관련 정책방향, 정책실시의 성과 등을 IAP에 단순히 기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V

표준 및 적합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회원국들은 APEC 표준 및 적합에 관한 선언과 WTO협정에 부속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협정) 및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다음을 수행한다:

- ① APEC 회원국들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한 투명성 보장;
- ② APEC 회원국들의 강제 및 비규제 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
- ③ 강제 및 비규제부문에 있어 APEC 회원국간 적합성 평가의 상호인정 달성;
- ④ 강제 및 비규제부문 모두에 있어서 상호인정협정의 광범위한 참여를 조장하기 위해 기술하부구조개발에 대한 협력 촉진.

지 침

각 APEC회원국들은 다음을 수행한다:

- ① 4개의 우선분야(전기·전자제품, 식품표시, 플라스틱 제품 및 고무제품)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와 함께 1996년 고려될 추가적인 우선분야의 진전을 참작하여 1997년 말까지 자국 행동계획의 국제표준 일치화와 관련된 부분을 개발
- ②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Codex Alimentarius위원회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 동 기구와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 ③ (i) 향후 복수간 협정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양자간 복수부문

상호인정협정의 개발과; (ii) 1997년에 식품에 관한 예비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1996년에 완구안전에 관한 정보교환 협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부문에 있어 복수간 상호인정협정의 개발을 통하여 강제부문에서의 상호인정협정 추진

- ④ 미터조약 및 국제법정도량형기구(OIML)조약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 2005년까지 동 조약들에 참여 고려

1. 97년도 IAP 요약

가. 호주

<국제표준 채택>

- ▶ 표준위원회(SCC)는 국가표준프로그램(NSC)을 통하여 국제표준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94-97기간 동안 78%의 표준이 국제표준을 채택하거나 준용하였고 96-97기간동안은 85%에 달함.
- ▶ 캐나다는 ISO, IEC, Codex Alimentarius, PACS, APLAC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 또한 OIML, CCQM에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WTO의 TBT, SPS 활동에도 참여함.
- ▶ 개별계획: 다음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 고무제품 중 의료용 고무장갑의 ISO 표준 채택, 산업용 로봇, 기계보수를 위한 최소접근 규격, 건물 및 건축 자재(목재의 구조 디자인, 목재 보존, 벌목재의 품질규격, 합판, 일반 디자인, 구조적 디자인 내력), 위험지역 장비, 산업장비(폭발성 가스용 전기장비, 가정용 자동전기제어, 이동식 전기장비), 전자기파, 소비자 제품(가정용전기제품 전기 측정장비, 충전식 이동 장비), 건강기구(전기의료장비, 휠체어), 정보기술장비(데이터 통신, 전기통신 및 정보교환 ID 카드, 프로그램 언어, OSI, 컴퓨

터 그래픽 및 영상처리, 보안기술, 가상단말기, 인공지능, 정보처리, 정보기술), 직업안전(농업 및 임업 기계), 품질관리(ISO 9000), 환경장비(ISO 14000), 의약품(활동성의약품부를 위한 GMP), 의료장비, 지속가능한 삼림경영.

<상호인정>

- ▶ 개별계획: 장난감(97.12월 APEC의 장난감 안전에 관한 정보교환 협의에 참여 의사 통보), 식품(APEC의 포괄협정 체결 고려 중, 일부 APEC 국가와 수산물 검사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기기기(APEC 전문가 활동에 적극 참여).

<기술기반 개발>

- ▶ 개별계획: ISO 14000 인증 프로그램(환경관리시스템 인정 프로그램 채택, 환경인증 검사인 프로그램 채택), ISO 9000 인증 프로그램(캐나다의 품질시스템 인증 프로그램 검토 중, 검사인 프로그램 시작), 표준위원회(SCC)의 역할 및 권한 강화.

<투명성 제고>

- ▶ 모든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정보는 캐나다 관보에 게재됨.
- ▶ 개별계획: APEC 및 WTO협정을 위한 연락창구 지정(web-site도 개설), 표준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인 SISC를 97.10월 설치.

나. 브루나이

- ▶ 변동사항 없음.

다. 중국

- ▶ 96년 1,385개 표준 중 40%, 97년에는 1,056개 중 62%가 국제표준 채택.
- ▶ 97년 중 국제표준과 일치시킨 분야: 해양연료, 바닥용 타일, 석고보드, 선박용 탄소강튜브, 치과용 주물합금, 전기용 구리막대, 백설탕, 스프링 및 전자 저울, 프린트/필기/제도용 종이규격, 심장 페이스 메이커, 의료용기용 알루미늄 뚜껑, 조명등용 잡이.
- ▶ 상호인정 단기계획: HS 8단위로 834개의 수출입 품목이 상품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WTO에 가입하면 100개의 수입품목을 제외시킬 예정임.
- ▶ 투명성 단기계획: 다른 국가의 식품라벨링 관련 규정 등을 수집 분석.

라. 일본

<투명성 제고>

- ▶ 수의용 의약품(11개 약품)의 잔여물질 기준 확정, 전기혈압계 및 콘택트 렌즈의 임상실험 요건 완화, 동식물 검역기준에 관한 안내서 배포, 목재품에 관한 JAS 기준의 영문판 발간.
- ▶ 개별계획: JIS와 기술규정과의 조화를 위한 검토작업을 97년부터 시행.

<국제표준 채택>

- ▶ JIS X-ray 필름의 규격을 ISO 기준을 채택; 일본, 미국, EU간 협의에 따라 의약품의 해외시험성적서 인증 및 기준의 국제기준화 시행; 방사선 살균장비의 ISO기준 채택; 고압가스법을 97. 4월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

- ▶ 개별계획: JAS의 국제규격화 추진, 97년 중 수입상황을 감안하여 과일 드링크의 JAS 개정 추진; 97년 중 신축도에 관한 표준을 재검토하여 JAS상의 합판규정 완화; 목조건축의 목재에 대한 기계압력 시험 개정; VICH (수의약품 등록기준 조화에 관한 국제협력)의 5개 분야에 참여; 어선 엔진의 국제표준화 추진; 농기구의 국제표준화 추진.

<상호인정 추진>

- ▶ 장난감 안전에 관한 정보교환 활동에 참여; 97. 4월 수도공급장비의 형식승인 및 검사에 관한 제도 폐지; 97. 3월 의료시술장비의 추가적 국내임상결과 제출의무 폐지; JAS 승인신청서 간소화; 제3자 기관의 JIS발급이 가능하도록 97. 3월 관련법 개정.
- ▶ 개별계획: 수출국의 식품안전 기록을 제출하면 생굴 수입 허용(호주 및 뉴질랜드는 이미 시행); 외국시험기관(FTO)의 시험 인정 확대 (96년 중 2개 예정이었으나 미국 2개, 인도네시아 1개의 3개로 확대); 사료첨가물 시험에 대한 외국시험성적서의 인정확대 검토.

<기술기반 개발>

- ▶ 개별계획: 97. 3월 필리핀의 요구로 5년간 농산물 생산의 농약잔류물 검출 기술개발 시작; 99년에 산업안전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 국가에게 안전기술이전을 도와 주는 훈련코스 개발 지원.

<기타>

- ▶ 동경, 나고야, 후쿠오카 공항의 식물검역시간 연장, 나고야 공항의 동물검역시간 연장; 식물검역의 편의를 위해 10개의 검역소를 추가 개설; 벌크로 수입되는 밀가루, 콩 등의 항해기간중 해충감염 검사 방법 개발; 97. 4월부터 동식물 검역에 관한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

세관통과정보시스템과 연결; 97. 4월 FAO규정에 근거한 해충위험분석(PRA)을 도입; 검역절차의 원활화를 위한 검역설비를 확충.

- ▶ 개별계획: 훈증처리법에 관하여 97. 3월 인도네시아와 기술협력 시작; 97-99년간 해충에 의한 식물검역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시작; 높은 위험도로 전염되는 동물질병의 검역 효율 증진; 동물병 원균 수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경주용 말의 경기 후 검역에 대한 협의 개시 용의; 일본의 표준제도와 관련한 고정처리센터의 제안문제를 검토; 유아용 침대 및 등산용 로프에 관한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마. 멕시코

<국제표준 채택>

- ▶ ISO의 건물 및 건축, 위험지역 장비(ISO /TC59)에 옵저버로 참여; SCSC가 제시한 분야의 멕시코 표준의 국제표준과의 일치여부 검토
- ▶ 개별계획: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국제표준기구의 활동 관찰; 표준의 준비, 채택, 검토에 관한 APEC의 지침지자; ISO /TC59에 계속적으로 참여.

<상호인정>

- ▶ 멕시코는 ILAC활동에 참여; 전기전자장비의 안전에 관한 APEC의 MRA 활동에 참여; 미국은 멕시코와 타이어 및 통신장비 안전에 관한 MRA를 체결함.
- ▶ 개별계획: ILAC 활동 및 APEC의 관련활동에 계속 참여; APLAC활동에 참여 고려; 장난감안전에 관한 정보교환에 참여의사 통보; 전기전자기기의 MAR에 관한 전문가 협의에 필요시 참여 지속; 식품 안전의 적합성에 관한 APEC MRA 협의에 참여 고려; APEC의 통신

분야 MRA에 계속 참여.

<기반기술 개발>

- ▶ 필리핀이 제안한 기반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OIML 회원가입 신청중; 계측협약(Treaty of Metre) 회원국임.
- ▶ 개별계획: 표준 및 적합성에 관한 PPP계획에 참여; APEC이 제안한 훈련 프로그램을 고려; 사설인증기관 설립 추진.

<투명성 제고>

- ▶ 기술규정 및 자발표준 제정절차 설명.
- ▶ 표준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web-site 개설.
- ▶ 개별계획: 표준 및 적합성 시험의 투명성 유지; 표준활동의 사전공고; 연락창구를 통한 정보교환 원활화 추진; web-site를 통한 정보제공 지속, APEC의 표준관련 정보 수집에 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검토작업 추진; 투명성 설문보고서의 권고사항 실천 노력.

바. 필리핀

- ▶ 표준관련 정보를 위한 web-site를 개설하였고 필리핀 국가표준(PNS)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함.
- ▶ 장난감안전에 관한 MRA논의에 참여; 식품분야 MRA 참여에 관한 국민간 토론 진행중; 식품에 관하여 95년부터 APEC 회원국과 쌍무협정 체결.
- ▶ APLAC, ILAC, APMP, PAC 참여를 통한 제품표준국(BPS)의 역할 강화.
- ▶ 필리핀은 IEC의 회원국임.

- ▶ 개별계획: PNS의 정보를 각국 표준기관에 제공하는 온라인 체제 확립; 가공과일 수산물의 국제표준화; 제품인증 및 공장검사에 관한 MRA 확립.

사. 대만

<국제표준 채택>

- ▶ 영양분 표시 등에 관한 관련법 개정 중.
- ▶ 단기 개별계획: 목재표준에 관한 기술자그룹에 참여; 국제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우선 분야 파악; 기술규정 제정, 채택 및 검토에 관한 APEC 지침 사용 추진.
- ▶ 중장기 개별계획: 국제기준 일치 작업의 전반적 진전상황 검토

<상호인정>

- ▶ 장난감안전에 관한 정보교환 협의에 참여중; 전기 및 전자기기의 MRA 전문가 그룹에 참여 예정; 식품분야의 MRA에 대하여 협의개시 검토 중.
- ▶ Codex의 정보를 수집분석중이며 시험방법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자료를 활용중; 97년 중 종자 검사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40명이 수료; 96년 APLAC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중국국립시험기관인증소(CNLA)가 APLAC의 MRA 그룹 참여를 신청하였음
- ▶ 단기 개별계획: 식품시험방법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작업 지속; 전기 및 전자기기 전문가 그룹의 MRA 작업에 참여; MRA체결을 위한 NVLAP, A2LA, NATA, TELARC, SINGLAS, HOKLAS와 협의 지속.
- ▶ 단중장기 개별계획: APMP, APLMF, APLAC와 MRA 협의; MRA참여를 위하여 IAF, PAC, IATCA활동에 참여; 다른 국가의 인증기관과 협의.

<기술기반 개발>

- ▶ 97년 중 굴 소스의 안식향 산성분 분석을 위한 APLAC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지방관서의 담당직원을 위한 미생물 및 농약잔류물 시험 프로그램 실시; ISO / IEC 지침 25 및 58에 근거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 지역별 전문기관과 전력기준, 표면검사, 마이크로파 기준 등에 대한 표준비교 시행.
- ▶ 시험분야 단기 개별계획: 98년중 APLAC의 능력시험 프로그램에 참여.
- ▶ 품질시스템 인증분야 단기 개별계획: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 시스템 분야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HRD 작업반과 협력.

아. 미국

- ▶ 전혀 바뀐 내용이 없음.

2.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가) 현황

(1) 국제표준과의 일치

호주의 표준은 이미 상당부분 관련 국제표준과 일치되어 있으며, 호주

의 핵심 비정부 표준개발기구인 Standards Australia를 통하여 비규제표준을 최대한 국제표준과 일치시켜려고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ISO, IEC, CODEX의 회원국이며,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 OIE), 국제법정도량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etrologie Legale : OIML) 등에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또한 APEC CTI의 표준·적합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 SCSC)가 우선 분야로 제시한 전기·전자제품, 고무제품, 식품라벨링(Food Labelling), 기계장치, 자동차 등에 대해 호주는 자국의 표준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2) 상호인정협정

강제부문에 있어서 호주는 APEC 회원국과의 MRA 추진을 위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강제부문에 있어 광범위한 양자간 MRA를 체결하기 위해 여타 회원국들과 논의를 개시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비규제부문의 경우 호주는 자국의 주요 기술기반기구의 활동을 통하여 비규제부문에 있어 MRA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APLAC MRA 체약국이다.

(3) 기술하부구조개발

호주는 이미 APEC 회원국들의 기술기반 개발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APEC의 中期기술기반개발프로그램(Mid-Term Techni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과 일치하는 우선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의사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4) 투명성

호주의 기술기반기구 및 규제당국은 소관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나) 기존 IAP 이행사항

SCSC에서 제시한 우선분야 중 냉방기기, 냉장고 및 고무제품에 대한 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켰으며 TV, 라디오 및 비디오 등의 부문에 있어서도 상당한 일치화를 달성하였다.

적합성 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호주는 1998년 6월 APEC 통신장관들에 의해 권고된 통신장비 MRA 추진에 참여하였으며 자동차제품에 대한 양자간 MRA 추진에 있어서 '모범' MRA를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APEC 회원국들과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또한 통일승인조건 및 자동차·자동차부품승인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UN/ECE의 1958년 협정 가입의 영향에 관한 검토를 완료하였고 자동차표준을 UN/ECE의 표준과 일치시키고 통일 적합성 평가 및 인증제도를 개발하도록 뉴질랜드와 합의하였다. 한편, 호주는 APEC의 전기·전자기기 MRA의 개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APEC내 양자간 MRA의 추진에 관해서는 다수의 APEC 회원국들과 비공식 논의를 개시하였다.

기술하부구조개발에 있어서는 1997년 및 1998년에 다수의 기술기반개발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자동차에 관한 국제표준과의 일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자동차관련 기술규정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비규제부문에 있어 MRA의 추진·관리에 호주의 기술기반기구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 98 IAP 추가사항

1998년 호주 IAP는 주요 추가사항으로서 UN/ECE 가입과 관련하여 99년 중 이해당사국과 포괄협의를 개시할 계획과 APEC 통신장비 MRA에 참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1998년 IAP의 구체적인 변동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호주의 국제표준화 활동과 관련하여 AQIS는 국제수역사무국(OIE) 및 이의 각종 위원회·협약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이 추가되었다. APEC SCSC가 우

선분야로 제시한 분야 중 식품라벨링과 관련하여 1997년 IAP에서는 호주의 식품라벨링 기술규정에 관한 검토를 1998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IAP에서는 2000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기계장치부문에 있어 2000년까지 국제표준과 일치할 것인 표준에 가스소화기가 추가되었다. 한편, 자동차부문의 경우 1998년에 호주는 통일승인조건 및 자동차·자동차부품승인 상호인정과 관련된 UN/ECE의 1958년 협정가입의 영향에 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련 이해당사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2) 평가

호주가 금번에 제시한 표준·적합분야 1998년 IAP는 기존 1996년 IAP 및 1997년 IAP와 큰 차이가 없다. 단, 호주가 추진한 기존의 IAP 사안에 대한 진척상황을 추가하고 개별계획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표현만 약간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표준제도는 국제표준과 상당히 조화되어 있으며, APEC, 국제표준기구 및 국제표준화 작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PEC의 우선 MRA분야인 전기·전자제품, 고무제품, 식품라벨링 기계 등에 대해 2000년까지 일치화 의지도 강할 뿐만 아니라 일부 분야는 이미 일치시켜 가고 있다. 특히, 식품분야의 MRA 및 식품라벨링에 대해서는 호주가 APEC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가) 현황

브루나이는 ISO 9000 및 ISO IEC Guide 25를 채택하고 있다. 브루나

이에서 품질·적합에 관한 대부분의 ISO 표준은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설부문에 있어서 국제표준 채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PAC 회원국들에 의해 인정된 증명/등록 기구들의 적합성 증명서를 수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현재 APMP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APLAC MOU에 조인하였다.

나) 기존 IAP 이행사항

표준·적합판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적합 웹사이트를 1998년 1월에 개설하였으며, 국내표준 및 지침서류를 발간하였다. 또한 국제표준과의 일치에 있어서 APEC SCSC 우선분야에 대한 국가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바, 이와 관련된 국제표준을 참조할 계획이며,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브루나이는 여타 APEC 회원국의 적합증명서를 현재 인정하고 있다.

기술협력의 경우 도량형 및 측정 표준과 관련하여 브루나이는 APMP의 회원이며, 관련 기본표준의 외형적 traceability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시험소 인정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여 1998년 4월에 동일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품질제도 증명/등록과 관련하여 PAC가 인정한 증명/등록 기구의 적합성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다) 98 IAP 추가사항

브루나이의 1998년 IAP에는 신규조치가 없다.

2) 평가

브루나이가 금번에 제시한 표준·적합분야 1998년 IAP는 기존 1996년 IAP 및 1997년 IAP의 개별실행계획에 비해 큰 진전이 없다. 단, 브루나이가 추진한 기존의 IAP 사안에 대한 진척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조치만을 적절히 바꾸었다.

브루나이의 표준제도는 전반적으로 여타 APEC 회원국에 비해 낙후되

어 있는 상황으로 표준체제가 국내에 효과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브루나이는 국내표준을 점검하여 국제표준과의 일치를 위해 현재 노력중이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가) 현황

중국은 1997년 말까지 총 18,359개의 국가표준 개발하였으며 이 중 5,427개는 ISO 및 IEC 표준을 직접 채택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ISO, IEC, ITU 및 CAC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PASC, OIML, BIPM, APMP, APLMF, IFAC, APLAC, IAF, IATCA 및 PAC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월에 IAF/MLA 및 PAC/MLA에 조인하였으며 APLAC/MAR에 가입 신청한 상태이다. 도량형과 관련하여 중국은 OIML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나) 기존 IAP 이행사항

중국의 1998년 IAP는 기존 IAP 이행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 98 IAP 추가사항

(1) 국제표준과의 일치

중국은 단기적으로(1998-2000) 향후 60% 이상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고, 국가도량형규정의 80%를 국제권고안과 일치시키며, 중기적으로는(2001-2010) 경공업(비가소성 폴리비닐 염화 파이프 및 빌딩 배수·급수기구)분야에서 ISO 및 IEC 표준 채택할 계획하여 장기적으로

(2011 ~ 2020) WTO / TBT에서 요구하는 국제표준을 채택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 상호인정협정

단기(1998 ~ 2000)에는 시험소 제품안전인증·인정제도 개선, 서비스부문 품질제도인증 추가개발, ISO 14000 인증·인정제도 설치 등을 추진하고, APEC 회원국과 에어콘용 압축기, 전기샤워장치, 오디오, 로스트오븐, 기계안전, 수산물섬유, 농기계, OSI 터미널 장비, 소방장비, 석유 및 석유장비 등에 있어서 MRA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2001 ~ 2010) 소프트웨어, 안전소비재, 노동안전장치, 네트워크 장비, 고압전송·변압장비, 건설안전제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자간·다자간 MRA를 추진하고, 장기(2011 ~ 2020)에는 양자간·다자간 MRA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 평가

중국은 대체적으로 국제표준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국내표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지역별로 상이한 표준이 적용되기도 하다. 중국의 표준제도는 투명성의 결여, 해당 표준 파악의 어려움, 상이한 국가의 수입에 대한 상이한 표준의 적용 및 국내제품과의 차별, 국제표준과 상이한 표준의 채택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금번 중국의 IAP에서 기술협력 및 투명성 부분은 기존 IAP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제표준과의 일치화에 있어서 중국은 기존 IAP에서 제시한 대상제품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적합판정의 상호인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가) 현황 및 기존 IAP 이행사항

(1) 국제표준과의 일치

일본공업표준(JIS)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위해 일본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JIS에 대하여 1997년 말 1,000여 개의 JIS를 ISO 및 IEC 등 국제표준과 일치시켰다. 또한 일본농산물표준(JIS)에 있어서는 과실음료 및 합판에 대한 JAS 표준을 개정하여 국제표준 일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전기제품에 대한 기술요건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위해 기술연구 수행하고 있고, 어선(漁船)엔진의 경우 총배기량에 기초한 계산방식을 채택, 섬유제품에 대한 품질라벨요건 검토·개정, 건물표준법: 1998년 6월 건물표준법 개정하여 성능에 기초한 건물규제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2) 상호인정협정의 촉진

일본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와 건물표준 MRA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또한 통신장비, 수의약품, 사료첨가제, 의약품 등에 대한 해외 검사자료 인정을 확대하였으며 동물검역 및 동물전염병 병원균 수입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였다.

(3) 투명성 제고

일본은 전자혈압계와 관련하여 1998년 3월 이후 임상실험을 폐지하고 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일본의 동물검역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해 동물검역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였다.

(4) 기타

소비자제품안전법 및 측량법 등을 개정하여 수입 유아침대, 등산로프 및 일부 측량장비 등에 대한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나) 98 IAP 추가사항

(1) 국제표준과의 일치

단기(1998 2000)에는 관련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부문에 있어서 JIS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국제표준화 노력에 이바지할 계획이며, 중장기적(2001 2010)으로 CODEX의 영양보조제(nutritional supplements)에 관한 지침 개발작업에 참여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2) 상호인정협정의 촉진

일본의 단기(1998 2000) 계획은 1998년 11월까지 개정된 도로차량법을 시행하고 육류 및 육류제품에 대한 외국 위생증명서를 인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3) 투명성 제고

단기(1998 2000)에는 보건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의 의약품·의료장비 제조업체에게 일본업체와 동등하게 관련 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4) 기타

단기(1998 2000) 목표로 해충위험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비검역해충(non-quarantine pests) 목록 재검토, 신약의 허가절차 개선, 압력선박(pressure vessel)에 대한 16개 JIS 표준 수정, 수입검사의 효율화·원활화를 위해 주요 공항·항만에 동식물검역관의 증원 등을 설정하고 있다.

2) 평가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표준 및 인증절차의 투명성을 합리화·개선 시키고 있으며, 무역장벽 철폐의 일환으로 가능한 한 국제규범에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11월에 개최된 오사카의 초기자유화 행동계획(initial actions)을 이미 상당부분 이행하는 등 가장 앞서나가는 개별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IAP는 SCSC에서 논의되는 전 부문에 걸쳐 매우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일본은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있어서 JIS를 국제표준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가) 현황 및 기존 IAP 이행사항

멕시코는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검토를 위한 APEC 지침관련 SCSC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APEC SCSC 우선분야 중 기계부문에 있어서는 22개 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하고 있다. 1997년에 IEC TCS 참여를 2회에서 22회로 확대하였으며 1997년 5월에 실시된 도량형·표준화 연방법의 개정은 MRA에 대한 일반조항을 포함하였다.

1997 1998년에 품질관리, 표준화에 관한 국제활동 및 ISO 9000·14000의 인증과정 등 일본정부에 의해 주최된 교육훈련과정과 1998년 6월 미국정부에 의해 주최된 ‘미주 법정도량형에 관한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1998년 9월 APEC HRD-IQAS 전문가훈련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한편, 멕시코는 현재 투명성 설문조사의 권고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다.

나) 98 IAP 추가사항

(1) 국제표준과의 일치

단기(1998 ~ 2000) 목표로서 기술규정 및 표준 개정시 국제표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조항을 수립하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 국제표준 부합도를 나타내는 문항 포함을 설정하고 있다.

(2) 상호인정협정

APEC 식품리콜 지침 및 식품리콜에 관한 APEC 정보교환협정 개발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캐나다 및 멕시코의 시험소들이 통신장비에 관한 안전표준 검사결과를 인정하는 양자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캐나다와 양해각서를 서명할 계획이며, MRA를 위한 구체적인 투명한 법적 절차를 확립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3) 기술하부구조개발 협력

식품관리제도에 대한 APEC 통합지역접근방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4) 투명성

표준화 활동에 대해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표준화계획을 1년에 두차례 발간하도록 하는 법적의무 조항을 수립하고, 표준 및 기술규정 작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자우편 및 팩스 사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가표준기구들이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위한 TBT 모범관행규약을 채택하도록 규정할 것이다.

2) 평가

멕시코가 금번에 제시한 표준·적합분야 1998년 IAP는 기존 1996년 IAP 및 1997년 IAP의 개별실행계획에 비해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다. 그

러나 멕시코는 기존·향후 국내표준 및 기술규정에 대한 국제표준 일치화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투명성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가) 현황 및 기존 IAP 이행사항

(1) 국제표준과의 일치

현재 총 1,357개 필리핀국가표준(PNS)의 5%인 69개 표준이 강제대상이며, 43%가 ISO, IEC, CODEX 등의 국제표준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1997~1998년중 고무장갑, 램프, 안정기, 전등소켓, 전등설비/등불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켰다. 냉장고 및 콘돔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PNS와 요리·난방기구에 대한 일부 PNS도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어 있다. 한편, 필리핀은 APEC 국제표준 일치화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치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PNS의 50% 그리고 2020년까지 100%를 국제표준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2) 상호인정협정

필리핀은 APEC 완구안전에 관한 정보교환 MRA에 참여하고 있으며, 식품 MRA에 참여준비를 위해 민관협약이 진행중이다. 또한 호주의 SAQAS 및 인도네시아의 DSN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PAC MOU 가입이 수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3) 기술하부구조개발

필리핀 제품표준성(Bureau of Product Standards)은 주요 지역 및 지

방에서 ISO/IEC Guide 25, ISO 9000 및 제품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 98 IAP 추가사항

(1) 국제표준과의 일치

전기안전(IEC 60335) 및 관련 EMC표준을 포함하여 전기·전자설비에 대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켰다.

(2) 상호인정협정

필리핀은 APEC 회원국들과 MRA 추진할 계획이다.

(3) 기술하부구조개발

단기(1998~2000)에는 일본정부로부터 설비제공,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을 지원 추진할 것이며, QSAR로부터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중기(2001~2005)적으로는 향후 20개 시험소를 인증할 것이다. 한편, BPS 인증제도의 전세계적인 인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평가를 위한 등록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2) 평가

필리핀의 관련 IAP는 기존 IAP에 비해 큰 진전상황이 없다. 금번 IAP의 발전사항은 1997년과 비교하여 국제표준 부합도가 38%에서 43%로 증가하였고, 고무장갑, 램프, 안정기, 전등소켓, 전등설비/등불 등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별행동계획은 일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표준의 국제일치화, 적합판정 상호인정협정 추진 등만을 추가하였을 뿐 특기사항이 없다.

사. 대만

1) 주요 내용

가) 현황 및 기존 IAP 이행사항

(1) 국제표준과의 일치

대만은 1998년 3월 포장식품에 대한 영양물라벨 지침을 공표하였다.

(2) 상호인정협정

대만시험소인증(CNLA)은 1997년 11월 호주의 NATA, 뉴질랜드의 IANZ, 미국의 NVLAP 및 A2LA, 홍콩의 HOKLAS, 싱가포르의 SINGLAS 등과 MRA 체결하였다.

(3) 기술하부구조개발

1998년 5월까지 지방보건당국 및 관련 기관 직원 115명이 모범시험소 관행(GLP)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하였다. 또한 성능 유량계 도입 및 법률·행정에 관한 1997 APLMP 워크숍/세미나와 OMIL 권고 76의 이행에 관한 1997 APLMF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대만은 APLAC의 분말계량능력 및 장력시험능력 검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IEC 335, IEC 950, IEC 598, IEC 342, IEC 227/245, ISO 3795, ISO 6925 등에 대한 검사능력을 확충하였다.

(4) 투명성

식품위생규정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나) 98 IAP 추가사항

(1) 국제표준과의 일치

단기(1998~2000)적으로 APEC의 식품라벨링법 규정 및 표준에 관한 1998 TILF 정보수집 프로젝트와 적재 및 구조물설계표준 기술그룹에 참여할 계획이다.

(2) 기술하부구조개발

단기(1998~2000)에는 국내외 EMC검사시험소 평가 및 계속관리·정기감독을 수행하고, 중장기(2001~2010)적으로는 WTO/TBT의 요건에 부합하는 규정을 참조하여 방화 및 소화장비, 기계안전에 대한 유형검사(type-testing)제도를 확충할 것이다.

2) 평가

대만은 강제분야 및 자발적 분야에서 자국표준의 국제표준과 일치화를 추진중이며, 5개국의 6개 기관과 MRA를 체결하였다. 대만의 금번 IAP의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GLP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각종 APLMF의 세미나/워크숍에 참여, 국제표준을 이용하여 시험능력 확충 등 기술하부구조개발 부문에 있어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8년 IAP의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진전사항이 없다.

대만의 표준은 전반적으로 관련 국제표준과 유사 또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인증 및 제품검사방법은 관련 ISO/IEC 지침 등의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농산물 및 육류에 대해 가장 제한적인 표준 및 검사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살충제 허용수준 등이 국제기준에 의하지 않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아. 미국

1) 주요 내용

가) 현황 및 기존 IAP 이행사항

(1) 상호인정협정

미국은 1997년 11월 NVLAP 및 A2LA 등의 인증기구들은 시험 및 구경측정(calibration) 분야에 인증을 인정하는 APLAC 다자간 MRA에 조인하였다. 또한 미국은 완구안전 정보교환에 관한 APEC협약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참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는 동 협약의 제4절이 여타 회원국에게 안전성 위험에 관해 30일간 주의를 주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으므로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심각한 위험의 경우 통보를 지체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기술하부구조개발

美시험소인증협동조합은 미국의 시험소 인증을 위한 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합성 판정을 위한 관련 국제지침에 기초하여 시험소 인정을 할 계획이다.

(3) 투명성

미국은 EVSL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별 자유화 계획의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표준·적합성 평가관련 활동을 지지해왔다.

나) 98 IAP 추가사항

미국은 금번 1998년 IAP에서 표준·적합과 관련하여 신규로 제시한 조치가 없다.

2) 평가

1998년 미국 IAP는 EVSL의 지지·참여 APLAC MRA 참여 등에 대한 언급만 추가했을 뿐 전년 IAP와 동일하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제시사항이 없다.

3. 종합평가

표준·적합 분야의 1998년 IAP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기존의 IAP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합 분야는 매우 기술적·세부적이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개별회원국들은 APEC 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을 서술·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상황은 현저히 상이하며,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본과 호주는 상대적으로 진전된 IAP를 제시하고 SCSC 우선분야에 있어서 국제표준과의 일치, APEC 통신장비 MRA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내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국제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IAP와 거의 동일하게 작성하여 별 내용이 없다. 이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기존 IAP에 대한 진척상황만을 반영하여 별다른 내용없이 IAP를 작성하였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경우 APEC 가입 이후 첫번째로 IAP를 제출하여 대체적으로 자국의 표준관련 제도 소개와 형식적으로 IAP를 작성하였을 뿐 구체성이 없다.

전반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는 同 사안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작성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IA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APEC 회원국간 각 국가의 제도 및 개방상황을 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AP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VI 통관절차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 회원국들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아·태 지역의 무역을 원활화함.

지 침

각각의 APEC회원국들은

- ① 통관절차소위원회(SCCP)의 실행프로그램의 전략적 방향(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Action Program)에 따라서;
- ② 상기 실행프로그램의 기본지침<FACTS: 용이성(Facilit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 단순성(Simplification)>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동을 취함.

1.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가) 현황

호주는 관세법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일반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통관

APEC SCCP 공동실행 계획	HS협약 원칙 채택 (1996)	정보의 공공 접근성 (1998)	교토협약 원칙 채택 (1998)	EDI/FACT 통한 전산화 (1999)	WTO 평가 협정채택 (2000)	지적재산권 원칙 채택 (2000)	명확한 불복제도 도입 (2000)	품목분류 사전 판정 (2000)	일시수입에 대한 편의 (2000)	공동 데이터 요소개발 (1999)	위험관리 기법 도입 (2002)	특급 택송품 통관 (2002)
호주 이행사항	+	+	+	1999	+	+	+	+	+	+	+	+

주: ()안은 APEC목표년도, +는 기시행.

절차 관련 정보의 공공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93년 이스탄불협약에 가입함과 더불어, 동 협약의 부속협약인 ATA Carnet협약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일시수입품에 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세관 결정에 대한 명확한 불복제도를 이행하고 있으며, 91년 11월에 이미 GATT관세평가제도를 이행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74년에 이미 통관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를 위한 코토협약에 가입하였으며 HS상품분류협약은 88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91년 4월부터 수입업자들이 관세세변사전판정을 전자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WTO TRIPs원칙에 맞게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외에도 호주세관은 위험관리정책(Risk Management Policy)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핵심사업분야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APEC 회원국들의 세관에서 위험관리기법을 채택·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는 특급화물 통관에 대한 WCO의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특급택송화물의 신속통관과 관련하여 APEC 회원국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아직 미이행상태에 있는 ‘UN/EDIFACT를 통한 전산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모든 응용가능한 전산시스템을 UN/EDIFACT와 호환가능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호주세관은 지난 1972년부터 업무의 전산처리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UN/EDIFACT를 사용하지 않지만, 광범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수속의 98% 이상이 전산처리되고 있다.

나) 97 IAP 이행사항

호주세관은 화물관리전략(Cargo Management Strategy)을 통해 산업계와 광범위한 협의를 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연계개발 및 공식화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화물통관시스템 재설계 작업에 있어, 호주세관은 민간부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광범위하게 협의하였다. 호주세관은 또한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의 毎회의 이전에 민간부문 대표들과 사전회의를 갖는다. 호주세관은 또한 CNCC(Customs 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와 같은 공식화된 채널을 통한 민간부문의 직접 참여를 추구하고 있으며 SCCP활동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있다. 사전승객통관제도(Advance Passenger Processing system)를 APEC 회원국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동 제도에 관해 여타 APEC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있다.

다) 이행계획

현대화·간소화된 통관절차의 실제적인 무역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에 있어서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거래비용 절감, 물품의 빠른 통관, 무역 및 투자의 촉진을 위해 기업 파트너들과의 실행가능한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부문과의 대화를 촉진할 계획이며, 위험관리기법을 정교화하고 여타 APEC 회원국들이 동 기법을 채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서류없는 통관 환경, 통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전승객통관제도 도입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호주세관은 향후 2년에 걸쳐 통관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이며 전자상거래 원칙에 근거한 탄력적이고 공개적인 처리를 할 것이다. 호주세관은 UN/EDIFACT표준 채택에 전념하고 있으며 UN/EDIFACT가 아닌 시스템을 산업계 이용자들과 협의하여 동 표준에 호환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전승객통관제도를 다른 APEC 회원국들 및 항공사에 확

대하기 위해 여타 APEC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 분석 및 평가

호주는 통관절차소위원회(SCCP)의 12개 공동이행계획 중 ‘EDI/FACT를 통한 전산화와 ‘공동 데이터 요소(harmonized trade data elements) 개발’을 제외한 10개 부문을 이행하는 등 APEC 회원국 가운데 앞선 이행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98년 호주의 통관절차 부문 IAP를 1997년 IAP와 비교하면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 호주는 전자식 통관환경 조성을 통해 사업상 또는 통관상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출입 물품의 물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서 EDI/FACT표준 채택에 대한 작업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입 통관 EDI가 다른 수출입 유관 기관들의 자동화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공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호주가 간사국으로 되어 있는 ‘무역자료요소의 조화’ 사항은 논의가 초기단계에 있고 APEC역내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 추진할 사항이어서 그 진전사항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나, 회원국간 정보교환 촉진 및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가) 현황

브루나이는 지난 94년 9월 전산시스템인 CCIS(Customs Control and Information System)를 도입하였으며 HS협약의 원칙을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114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APEC SCCP 공동실행 계획	HS협약 원칙 채택 (1996)	정보의 공공 접근성 (1998)	교도협약 원칙 채택 (1998)	EDI/FACT 통한 전산화 (1999)	WTO 평가 협정 채택 (2000)	지적재산권 원칙 채택 (2000)	명확한 불복제도 도입 (2000)	품목분류 사전 판정 (2000)	일시수입에 대한 편의 (2000)	공동 데이터 요소개발 (1999)	위험관리 기법 도입 (2002)	특급 택송품 통관 (2002)
브루나이 이행사항	+	+	1998	1999	1998	1998	2000	2000	2000			

주: ()안은 APEC목표년도, +는 기시행.

나) 97 IAP 이행사항

정보의 공공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통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다) 계획

99년까지 UN/EDIFACT표준을 채택할 계획이며, 98년까지 WTO관세평가 협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98년 12월까지 TRIPs원칙을 채택할 계획이다.

2) 분석 및 평가

브루나이는 12개 SCCP 공동실행계획 중 2개부분(HS 관세평가협약 원칙 채택, 정보의 공공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미이행 상태에 있는 바, 여타 APEC 회원국들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회원국들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98 IAP를 '97 IAP와 비교해 보면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다. 향후 IAP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97년 APEC 합의사항인 '공동데이터 요소 개발,' '위험관리기법 도입' 및 '특급택송품 통관' 등에 대한 계획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가) 현황

APEC SCCP 공동실행 계획	HS협약 원칙 채택 (1996)	정보의 공공 접근성 (1998)	교도협약 원칙 채택 (1998)	EDI/FACT 통한 전산화 (1999)	WTO 평가 협정채택 (2000)	지적재산권 원칙 채택 (2000)	명확한 불복제도 도입 (2000)	품목분류 사전 판정 (2000)	일시수입에 대한 편의 (2000)	공동 데이터 요소개발 (1999)	위험관리 기법 도입 (2002)	특급 택송품 통관 (2002)
중국 이행사항	+	+	+	1999	2005	+	2000	2000	+			+

주: ()안은 APEC목표년도, +는 기시행

중국은 92년 1월 1일 HS상품분류체제를 도입하였고 96년 1월 1일에 ‘HS 1996년 버전’을 채택하였다. 또한 중국은 일시수입에 대한 WCO 교도협약을 개정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부속협정들에 대한 개정작업을 해오고 있다. 중국은 통관절차의 컴퓨터화를 제고하기 위해 UN/EDIFACT표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통관절차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였고 EDI화물통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법·규정 및 통관 관련 행정지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의 공공접근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통관업무와 관련한 행정적인 검토 및 소송 제도가 구축되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세관의 개입(Customs Intervention i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관한 규정이 95년 10월 1일 발효되었으며, IPRs보호를 위한 특별사무국이 전국의 세관에 설치되었다. 한편 중국은 WTO관세평가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준비중에 있으며, 지난 93년 ATA협약(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조인하였고 98년 1월 1일부터 ATA Carnet제도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특급택송화물 통관에 대한 WCO의 원칙에 맞는 ‘특급택송화물 통관을 위한 중국세관감독기법(China Customs Supervision method for

Express Consignments Clearance)이 법규로 제정되었다

나) 97 IAP 이행사항

정보의 공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관세법·규정’, ‘중국의 수출입관세규정’, ‘관세통계’ 등의 책을 발간하였다. 통관절차자동화시스템(Customs Clearance Automation System)이 채택되어 98년 3월 시험 운영되었으며 동 시스템을 99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보급시킬 계획이다. 중국세관은 98년 7월부터 ‘수출입 라이선스 및 쿼타 통제시스템(Import and Export License and Quota Control System)을 전국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UN/EDIFACT표준에 맞춘 ‘세관의 EDI화물통관시스템’(Customs EDI Cargo Clearance)의 1단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세관 브로커에 의한 수출입물품의 전자식 신고시스템이 완료되었다. 또한 동 시스템의 2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급택송화물통관의 EDI시스템(Customs EDI System for Express Consignments Clearance)이 구축되어 북경과 상하이에서 운영에 들어갔으며 동 시스템으로 인해 항공특급 화물의 90%가 EDI를 통해 처리되었다

ATA협약 이 98년 1월부터 이행되었으며 세관 판정에 대한 항소 및 검토 절차와 더불어 세관 행정의 감독 및 조사 시스템 등이 구축되었다. 또한 사전세번판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일부 주요 지역 세관에서 시험운영중에 있다. 위험통제기능을 갖춘 통관절차자동화시스템(Custom Clearance Automation System)이 4개 세관에서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특급택송화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WCO원칙에 따른 특급화물통관절차의 세관감독기법이 9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이행중에 있다.

다) 계획

통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 및 규정집의 발간을 업데이트하고 배포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령, 외국의 관세법 등을

발간할 계획이며, 세관직원들의 법률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UN/EDIFACT의 채택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EDI화물통관시스템(Customs EDI Cargo Clearance System)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식으로 송장을 신고 및 취소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일을 99년 말까지 완료시킬 계획이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의 이행은 2000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ATA Carnet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교육을 시행하고, 외국의 이행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사절단을 구성하여 외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세번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WTO관세평가협약의 원칙을 채택할 계획이다. 그밖에 교토협약에 근거한 통관절차의 단순화 및 조화를 위해, 동 협약의 보다 많은 부속협정들을 채택할 계획이다.

2) 분석 및 평가

중국은 12개 SCCP 공동이행계획 중 5개항목을 이행하여, APEC 회원국 가운데 중간정도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회원국 가운데 가장 활발한 이행실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98 IAP 내용도 여타 회원국들에 비해 비교적 충실하고 구체적이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가) 현황

일본은 이미 88년 1월 HS관세평가협약의 발효 당시 동 협약의 가입국이었으며 96년 개정된 HS협약의 요구사항들을 이행하였다. 정보의 공공접근을 위해 통관 관련 법 및 규정을 '관보' 및 '통관 관련 법/규정 개

APEC SCCP 공동실행 계획	HS협약 원칙 채택 (1996)	정보의 공공 접근성 (1998)	교도협약 원칙 채택 (1998)	EDI/FACT 통한 전산화 (1999)	WTO 평가 협정채택 (2000)	지적재산권 원칙 채택 (2000)	명확한 불복제도 도입 (2000)	품목분류 사전 판정 (2000)	일시수입에 대한 편의 (2000)	공동 데이터 요소개발 (1999)	위험관리 기법 도입 (2002)	특급 택송품 통관 (2002)
일본 이행사항	+	+	+	1999	+	+	+	+	+		+	+

주: ()안은 APEC목표년도, +는 기시행.

론'으로 발간하였으며, 통관절차의 단순화 및 조화를 위한 교도협약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1976년 교도협약에 가입하였고 31개 부속협증 11개를 채택한 상태이다. 통관절차의 전산화를 위해, 일본은 지난 78년 항공화물의 전자식 통관절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91년에는 해상화물의 전자식 통관절차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들은 현재 수출입통관절차의 90이상에 적용되고 있으며, 99년까지 UN/EDIFACT표준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일본은 WTO관세평가협약을 95년부터 이행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TRIPs)하의 국경통제도 95년부터 이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05년부터 세관장(Directors-General of Customs)에 의한 판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관련 법을 구비하고 있었다. 96년에는 세번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재수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본에서의 사용을 위해 수입되는 상업샘플, 전문장비 등과 같은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법에 의거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일본은 1973년 재수출을 위한 관세면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한 ATA협약에 가입하였다. 1996년 이래, 일본은 UN/EDIFACT를 통한 전산화의 일부로서 NACCS(일본의 자동 화물 통관시스템)에 공동무역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기 위해 준비해 오고 있다.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일본은 91년 이래 CIS(Customs Intelligence Database System)에 선별적인 조사 및 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특급택송화물에 대한 WCO의 가이드라인 원칙을 도입하였다.

나) 97 IAP 이행사항

일본은 전반적인 통관절차에 있어서 WCO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이행하였다.

다) 계획

일본은 1999년까지 ‘도착전 화물 검사 시스템’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컴퓨터 통관시스템이나 ‘자동화된통관시스템(NACCS)을 통해, 컨테이너에 실은 해상화물이 ‘Hozei’지역에 반입되었다는 것을 세관에서 확인한 이후에 동 화물이 즉시 수입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해상NACCS를 개선시킬 계획으로 통관절차를 위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청의 제도화를 99년까지 완료시킬 계획이다.

2) 분석 및 평가

일본은 12개 SCCP 공동이행계획 중 10개의 항목을 이행하여 APEC 회원국들 가운데 앞선 이행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98 IAP를 '97 IAP와 비교하면 변화된 내용이 거의 없다. UN/EDIFACT표준 채택을 위한 준비상황과 계획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99 IAP에는 아직 부진한 이행상태를 보이고 있는 여타 일부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지원계획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가) 현황

멕시코는 1988년 7월 HS국제협약 을 채택하였으며 96년 1월이후 'HS협약 96년 버전'을 이행하였다. 또한 정보의 공공 접근을 위해, 멕시코는

APEC SCCP 공동실행 계획	HS협약 원칙 채택 (1996)	정보의 공공 접근성 (1998)	교도협약 원칙 채택 (1998)	EDI/FACT 통한 전산화 (1999)	WTO 평가 협정 채택 (2000)	지적재산권 원칙 채택 (2000)	명확한 불복제도 도입 (2000)	품목분류 사전 판정 (2000)	일시수입에 대한 편의 (2000)	공동 데이터 요소개발 (1999)	위험관리 기법 도입 (2002)	특급 택송품 통관 (2002)
멕시코 이행사항	+	+	1998	1999	+	2000	+	+	+			

주: ()안은 APEC목표년도, +는 기시행.

모든 법, 규정, 법령 및 일반규칙들을 관보(D.O.F)에 게재하고 있으며, 교도협약의 가입국은 아니나, 교도협약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있다.

멕시코는 91년 통관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해 ‘통합 자동화 통관시스템(SAAI)을 구축하였으며 따라서 관세청, 세관사무소, 세관 브로커, 창고 및 금융기관들간의 전자식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UN/EDIFACT의 개발 및 이행 관련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99년까지 동 작업을 완료시킬 계획이다.

지난 86년에 멕시코는 WTO관세평가협약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으며 88년에 GATT 제7조에 맞게 관세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멕시코는 또한 관세평가협약의 94년 개정된 버전을 이행하였다. WTO TRIPs협정 과 관련하여, 지난 96년 4월 이후 멕시코는 지적권 위반의 의심이 있을 때 세관당국에 의한 물품의 예비압류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의 관세규정은 관세분류에 관한 사전판정의 적용 및 발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분류위원회도 구축되어, 동위원회가 물품의 사전판정제도를 관할하고 있다. 멕시코 관세법은 ATA협약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명확한 불복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의 위험관리기법은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통합전자식통관제도(SAAI)에 근거하고 있으며, 99년 말까지 기능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특정분야 및 개개인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진행중에 있다.

WCO가이드라인과 멕시코법간에 특급택송화물의 통관 관련 차이점을 제거하기 위한 관세법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개정작업은

99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와 함께 NAFTA라는 공동 이니셔티브로 NATAP(North American Trade Automation Prototype)에 착수한 바,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3개국에서 사용되는 정보 및 절차를 조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캐나다, 미국 및 칠레의 세관들은 공동데이터 요소를 구축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나) 97 IAP 이행사항

통관신고의 승인 또는 기각에 관해 관세청, 세관사무소 및 금융기관들 간의 정보의 전자식 교환을 제공하는 SAAI(Integrated Automatic Customs System)를 구축하였다. 또한 물품검사를 위한 X-ray, 국경반입을 점검하기 위한 폐쇄회로 모니터 설치, 근무시간 연장 등을 통해 물품의 통관을 위한 인프라를 현대화하였다

다) 계획

멕시코는 세관 행정 개선을 위한 WCO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99년 12월까지 EDIFACT의 개발 및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2) 분석 및 평가

멕시코는 12개 SCCP 공동이행계획 중 6개를 이행한 상태로 회원국들 가운데 중간정도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가 OECD 회원국이라는 점과, 멕시코의 무역 및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이행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98 IAP를 '97 IAP와 비교할 때 '위험관리기법과 '특급택송화물통관에 대한 계획의 추가 외에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 한편 향후 이행계획들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므로 단계별 시기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가) 현황

APEC SCCP 공동실행 계획	HS협약 원칙 채택 (1996)	정보의 공공 접근성 (1998)	교토협약 원칙 채택 (1998)	EDI/FACT 통한 전자화 (1999)	WTO 평가 협정채택 (2000)	지적재산권 원칙 채택 (2000)	명확한 불복제도 도입 (2000)	품목분류 사전 판정 (2000)	일시수입에 대한 편의 (2000)	공동 데이터 요소개발 (1999)	위험관리 기법 도입 (2002)	특급 택송품 통관 (2002)
필리핀 이행사항	+	+	1998	1999	+	+	+	+	+		+	+

주: ()안은 APEC목표년도, +는 기시행

필리핀은 88년 10월 19일 이래 HS제도를 채택하였으며 96년 1월 ‘HS 1996버전’을 채택하였다. 또한 정보의 공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 관련 법 및 규정, 행정 지침 및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Department Orders and Commissioner’s orders,’ Commissioner’s orders, 회람장 등을 통해 공공에 제공하고 있다. 필리핀은 교토협약의 가입국은 아니나, 현행 통관절차를 동 협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간소화시키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통관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N/EDIFACT표준 채택을 고려하고 있고, 현재 전자송장에 UN/EDIFACT를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1996년 WTO관세평가협정 을 채택하였으며, 1997년 6월 WTO TRIPs협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필리핀은 ATA협약의 일부 조항들을 이미 이행하고 있으며, ATA협약에 대한 접근을 위해 현행 관세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체계적인 위험관리기법을 채택하고 있는 바, 선적의 자동식 선별을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녹색레인을 통과하는 화물은 서류 및 물품검사 없이 즉시 통과가능하며, 노란색 레인을 통과하는 화물은 서류의 조사를 요하며, 빨간색 레인을 통과하는 화물은 완벽한 물품검사를 요함), 현재 총화물의 70%

는 녹색레인을 통과하고 있다.

나) 97 IAP 이행사항

Clark 및 Subic을 포함한 주요 항구의 창고 반입 및 송장이 컴퓨터화 되었으며, Manila 및 Cebu항의 수출품 통관수속 역시 컴퓨터화 되었다. 또한 정보의 공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리핀 세관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97년 12월 WTO관세평가시스템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했으며, WTO TRIPs협정에 근거한 필리핀 지적재산권법(RA 8293)을 도입하였다. 'WCO 특급택송화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세관규약이 발표되었다.

다) 계획

정보의 공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리핀은 통관절차에 관한 정보를 CD ROM으로 만들 것이며, 코토협약이 WCO에 의해 검토되고 있으므로, WCO가 개정안을 채택하는 대로 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새로운 관세평가시스템에 대한 세관 및 민관부문의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계획이며, APEC의 관세평가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참여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또한 공동데이터 요소 개발과 관련하여 데이터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며 여타 APEC 국가들과 데이터 조화의 실행가능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필리핀은 특급택송화물에 대한 SCCP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2) 분석 및 평가

필리핀은 12개 SCCP 공동이행계획 가운데 9개 계획을 이행하여 APEC 회원국들 중 비교적 앞선 이행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8 IAP를 '97 IAP와 비교해볼 때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 또한 필리핀의 '공동데이터 요소개발'에 대한 이행계획은 매우 막연하게 제시되어 있는 바, 이에 대

한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현재의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 러시아

1) 주요 내용

가) 현황

APEC SCCP 공동실행 계획	HS협약 원칙 채택 (1996)	정보의 공공 접근성 (1998)	교토협약 원칙 채택 (1998)	EDI/FACT 통한 전산화 (1999)	WTO 평가 협정채택 (2000)	지적재산권 원칙 채택 (2000)	명확한 불복제도 도입 (2000)	품목분류 사전 판정 (2000)	일시수입에 대한 편의 (2000)	공동 데이터 요소개발 (1999)	위험관리 기법 도입 (2002)	특급 택송품 통관 (2002)
러시아 이행사항	+	+	+	1999	+	+	+	+	+	1999	+	+

주: ()안은 APEC목표년도 +는 기시행

러시아의 통관절차 및 세관통제 과정의 발전(개발)은 ‘통관절차센터프로젝트’(Customs Clearance Centre Project)에 근거하고 있으며, 통관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관절차센터의 기술기초’(Technological Basis of the Customs Clearance Centre)가 설치되었다. 현재 110개 이상의 대기업들이 국가세관위원회(State Customs Committee)의 허가에 의해 이러한 전자식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나) 계획

러시아는 모든 통관절차를 검토하고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과정들을 폐지할 계획이며, 가능한 한 컴퓨터를 사용하고 전자식 정보교환을 이용한 통관신고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품 및 이를 운반하는 사람들의 분류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통제비용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의 완전한 접근을 제공할 계획이며, 대외 무역통계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외국의 세관당국과 협력방안을 개발하고 정보교환시스템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2) 분석 및 평가

러시아는 12개 SCCP 공동이행계획 중 ‘EDI / FACT를 통한 전산화와 ‘공동데이터 요소 개발’을 제외한 10개 계획을 이행, 회원국들 가운데 앞선 이행상태를 보이고 있다. IAP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타 회원국들은 12개 공동이행계획별로 구분하여 평가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러시아는 전반적인 통관절차의 상황에 대해 제시하고 있어, 12개 항목 각각에 대한 러시아의 이행정도 및 기법 정교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아직 미이행단계인 ‘EDI / FACT를 통한 전산화와 ‘공동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준비현황과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 대만

1) 주요 내용

가) 현황

APEC SCCP 공동실행 계획	HS협약 원칙 채택 (1996)	정보의 공공 접근성 (1998)	교도협약 원칙 채택 (1998)	EDI/FACT 통한 전산화 (1999)	WTO 평가 협정채택 (2000)	지적재산권 원칙 채택 (2000)	명확한 불복제도 도입 (2000)	품목분류 사전 판정 (2000)	일시수입에 대한 편의 (2000)	공동 데이터 요소개발 (1999)	위험관리 기법 도입 (2002)	특급 택송품 통관 (2002)
대만 이행사항	+	+	1998	+	+	+	+	2000	1999		+	+

주: ()안은 APEC목표년도, +는 기시행

대만은 WTO의 옵서버 국가이지만 이미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WTO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하고 자국의 법/법규들을 개정하였다. HS협약 96년 버전을 채택하였으며 관세법, 규정 및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의 공공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통관절차의 컴퓨터화를 촉진하기 위해 UN/EDIFACT표준을 채택하였으며 TRIPs협정에 규정된 국경통제 조치를 이행하였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한국, EU, 스위스, 뉴질랜드, 호

주, 캐나다, 미국, 헝가리 및 필리핀과 양자간 ATA Carnet협정 을 체결 하였다.

나) 97 IAP 이행사항

사전통관제도가 97년 11월 이후 항공화물에 적용되었으며 NT3,000 달러 이하의 저가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98년 10월 1일부로 면제되었다. 또한 98년 7월 저작권 및 특허침해에 대한 수출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다) 계획

대만은 관세법, 규정 및 행정규칙 관련 정보를 98년 11월까지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공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00년까지 일시수입품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양자간 ATA협정을 체결하고 회원국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APEC 회원국들과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그 밖에 2000년까지 특별 행정소송절차를 채택하고 세번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며, 99년까지 공동데이터 요소에 관한 자료를 완성할 계획이다.

2) 분석 및 평가

WTO의 옵서버 국가인 대만은 12개 SCCP 공동실행계획 중 8개를 이행하여 회원국들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이행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만이 WTO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과, 대만의 경제발전 정도 및 교역량 등을 감안할 때 이행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98 IAP'를 '98 IAP'와 비교하면 크게 진전된 사항은 없다. '98 IAP'를 작성할 때 아직 미이행단계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 미국

1) 주요 내용

가) 현황

APEC SCCP 공동실행 계획	HS협약 원칙 채택 (1996)	정보의 공공 접근성 (1998)	교토협약 원칙 채택 (1998)	EDI/FACT 통한 전산화 (1999)	WTO 평가 협정채택 (2000)	지적재산권 원칙 채택 (2000)	명확한 불복제도 도입 (2000)	품목분류 사전 판정 (2000)	일시수입에 대한 편의 (2000)	공동 데이터 요소개발 (1999)	위험관리 기법 도입 (2002)	특급 택송품 통관 (2002)
미국 이행사항	+	+	+	1998	+	+	+	+	+		+	+

주: ()안은 APEC목표년도, +는 기시행

미국은 88년 10월 HS협약에 가입하였으며 96년에 ‘HS협약 1996년 버전’을 채택하였다. 정보의 공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법을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게재하고 있으며, 동 법규들에 대한 변화 또는 추가사항은 Federal Register 및 Customs Bulletin에 게재하고 있다. 미국은 1984년에 데이터의 자동처리 및 통신 시스템인 자동상업시스템(ACS)을 도입하였다. 또한 1993년 12월에는 자동상업환경(ACE)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1998년 10월에 운영될 예정으로 궁극적으로는 ACS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UN/EDIFACT표준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세관은 무역관련 통계의 수집 및 처리를 전자식으로 간소화하고 이 중 서류작업을 피하기 위해 자동수출시스템(AES)을 개발하는 중에 있다. ACS 및 ACE가 인바운드(inbound) 화물 및 승객 통관을 기본으로 한다면, AES는 수출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업무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AES의 제1단계는 95년 7월 이 행되었고, 제2단계는 96년 3월에 시작되었으며 제3단계는 96년 12월에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은 멕시코 및 캐나다와 함께 세관 요구사항을 표준화하고 무역을 신속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에 있다.

미국은 GATT/WCO관세평가협정의 가입국이며, WTO TRIPs협정에 맞게

지적재산권 관련 관세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세 번의 사전판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969년 말부터 ATA Carnet 협약을 발효시켜 전문장비, 상업샘플 및 광고물의 일시수입이 허용되었다.

공동데이터 요소 개발에 있어서, 미국은 G7, ASEAN, NAFTA, WC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중국과 함께 'SCCP 특급 탁송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간사국을 맡고 있다. 미국은 WCO 가이드라인이 회원 당국에 의해 적용되어 왔던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기 위한 '모범사례집(best practices handbook)'의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나) 계획

미국은 1999년 봄에 APEC 위험관리기법세미나를 주최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은 1999년 봄에 APEC 회원국들을 위한 특급탁송화물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동 세미나는 자동화, 위험관리기법 및 대안적 절차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분석 및 평가

미국은 12개 SCCP 공동이행계획중 10개를 이행하여 회원국들 가운데 앞선 이행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8 IAP'를 '98 IAP'와 비교해 보면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 또한 '98 IAP' 이행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계획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99 IAP'에서는 이점들을 보다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97년 합의사항인 '공동데이터 요소 개발', '위험관리기법 도입' 및 '특급탁송품 통관'에 대한 이행사항 및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미국의 기법 정교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99 IAP'에서는 여타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지원계획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차. 베트남

1) 주요 내용

가) 현황

APEC SCCP 공동실행 계획	HS협약 원칙 채택 (1996)	정보의 공공 접근성 (1998)	교토협약 원칙 채택 (1998)	EDI/FACT 통한 전산화 (1999)	WTO 평가 협정채택 (2000)	지적재산권 원칙 채택 (2000)	명확한 불복제도 도입 (2000)	품목분류 사전 판정 (2000)	일시수입에 대한 편의 (2000)	공동 데이터 요소개발 (1999)	위험관리 기법 도입 (2002)	특급 택송품 통관 (2002)
베트남 이행사항			+									

주: ()안은 APEC목표년도, +는 기시행

베트남의 통관절차 및 항소 관련 사항은 1990년 2월 24일자 통관법령 (Ordinance on Customs)과 1996년 3월 20일자 행정위반형벌법령 (Decree on Penalties for Administrative Violations)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은 1993년이래 WCO의 가입국이며, 1997년 교토협약에 가입하였다.

나) 계획

1999 2000년내에 통관절차에 관한 서적을 매년 출판하여 수출입업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통관절차에 대한 단기훈련 코스,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2001 2020년내에 베트남의 관세정책을 성문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국제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UN/EDIFACT표준을 채택할 계획이다. 기술 및 자본과 관련한 어려움 때문에 베트남은 중기(2001 2010)에 UN/EDIFACT표준의 이행을 고려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2001 2010년에 ATA협약에 대한 접근을 고려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명확한 불복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1999 2000년에 WTO관세평가협약을 이행하고, 2000년 1월 1일에 HS협약 가입의 결정을 WCO에 통지할 것이다. 또한 2001 2010년에 세번사

전분류제도를 이행할 계획이며, WTO에 가입하자마자 국경통제에 관한 TRIPs협정의 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2005년 이전에 공동무역데이터 요소의 개발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위험관리 기법을 채택하고, 특급택송화물 통관에 대한 WCO 가이드라인 원칙을 이행할 계획이다.

2) 분석 및 평가

베트남은 12개 공동이행계획 가운데 ‘교토협약 원칙 채택’만을 이행, APEC 회원국들 가운데 이행상태가 가장 부진하다. 따라서 향후 이행계획들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지난해 가입한 관제로 97 IAP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이행진전 상황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종합평가

그동안 8차례에 걸친 다자간 관세인하의 노력으로 관세장벽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통관절차, 위생 및 검역 등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WTO, OECD, WCO, APEC, ASEM 등 국제기구에서는 무역원활화로 국제간 교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인식하고,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 중 APEC은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를 통해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SCCP는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VI-1>에 제시된 12개 공동행동계획 중 1 9번 항목은 96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이며, 나머지 3개는 97년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확정되었다.

<표 VI-1> APEC-SCCP 12개 공동행동계획

-
1. HS협약의 채택
 2.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제고
 3. Kyoto협약 채택
 4. UN/EDIFACT를 통한 전산화
 5. WTO 관세평가협약의 실시
 6.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
 7. 투명한 불복절차
 8.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의 도입
 9. 일시수입에 대한 통관편의 제공
 10. 공동데이터 개발
 11.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 채택
 12. 특급택송물품에 대한 편의 통관(Express Consignments Clearance)
-

이들 12개 분야 중 HS협약원칙 채택, 토쿄협약(본문)의 채택, 정보의 공공접근성 등 대부분 분야는 이미 APEC 회원국이 기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공동데이터 개발 분야이다. 국가별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호주(12개분야 중 11개 사항 이행), 미국(10개), 한국(10개), 일본(10개), 러시아(10개) 등의 국가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2개 분야 중 가장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공동데이터 요소 개발은 G-7의 Data Harmonization Initiative를 APEC 역내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¹⁾ G-7의 Data Harmonization Initiative는 G7 국가들의 세관 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료 항목들(data sets)을 간소화, 표준화하고, 그러한 자료 항목들이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양식을 표준화하며, 궁극적으로 G7 역내 각국의 EDI를 연결시켜 무역의 원활화,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1996년

1) 나경렬(1999). “통관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개선 내용,” KIEP 대외경제전문가포럼 세미나 자료(9. 29)에서 인용.

<표 VI-2> SCCP 12개 분야별 진전 사항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일본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대만	미국	베트남	한국	총계
HS협약원칙 채택	+	+	+	+	+	+	+	+	+		+	11
정보의 공공접근성	+	+	+	+	+	+	+	+	+		+	10
교토협약 채택	+	98	+	+	98	98	+	98	+	+	+	11
EDI /FACT	99	99	99	99	99	99	99	+	98		+	3
WTO 평가협정	+	98	05	+	+	+	+	+	+		+	9
IPR 원칙 채택	+	98	+	+	00	+	+	+	+		+	9
재심제도	+	00	00	+	+	+	+	+	+		+	8
품목분류 사전판정	+	00	00	+	+	+	+	00	+		+	7
일시수입 편의	+	00	+	+	+	+	+	99	+		+	8
공동데이터 개발							99					1
위험관리	+			+		+	+	+	+			6
특급택송품 통관	+		+	+		+	+	+	+		+	7
총계	11	8	6	10	7	10	10	9	11	1	10	

주: +는 기시행, 연도는 시행(예정)년도 표시.

리옹 G-7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G-7 국가들은 기존의 수입통관 심사요소를 1999년 현재 약 90개로 감축시켰으며 영국과 미국은 1998년 6월부터 수출국의 수출통관자료가 그대로 수입국의 수입자료가 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North Atlantic Prototype Clearance System). 참고로 아시아지역에서도 현재 말레이시아세관 주도로 한국, 대만간에 수출신고 자료를 수입국 세관에 전송하는 자료교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통관절차에 대한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는 반면,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개도국들은 아직도 후진적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는 APEC을 통한 통관절차 개선에 많은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관제도가 전반적으로 선진국 형으로 발전되었더라도 공동데이터 요소 개발과 위험관리 등에서는 아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세당국의 관심제고가 요청된다. 특히 G-7 국가의 주도로 공동데이터 요소가 개발되어 통관관련 서류가 이들 공동데이터 위주로 전환될 경우 수출국에 대한 부실한 수입신고로 신뢰도가 낮은 우리나라 수출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통관절차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성실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EDI시스템을 G-7 국가의 Data Harmonization Initiative와 일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동데이터 제출이 통관절차 요건으로 정착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해야 하겠다.

VII 지적재산권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 회원국은 지적재산권협정 및 관련 협정에서 규정하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지 침

APEC 회원국은

- ① 지적재산권이 신속하게 주어져도록 보장한다.
- ②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민사절차와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③ 지적재산권협정의 이행 및 가속화를 위하여 특허검색 전산화, 인적 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쌍무적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1. 98년도 IAP

가. 호주

1) 이행현황

호주는 1998년 7월,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파리조약의 제3, 4조를 WTO 전 회원국에게 보장하였다. 본 개정은 신문이나 잡지기자들의 기사에 대

한 전자출판권을 보장하고 교육목적을 위해 일반대중의 저작권법자료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생산된 외국음반의 동등한 수입을 허용하고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벌칙금을 인상시켰으며 非 저작상품의 포장 및 마크와 같은 장식부분에 대하여 저작소유권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특허권법의 개정으로 20년 기준 제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5년까지 연장하고 합법적인 특허권에 대하여 약품의 일반복사를 허용하였으며 비용효과적 지적재산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법을 개정, 특정부분의 행정비용을 과감히 폐지 또는 감축하였다. 이 밖에 치료상품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화학성품이 포함된 제약상품 등록을 위해 제출되는 기밀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실행계획

호주는 디지털시대에 부응하여 신기술에 기초한 온라인상의 대중통신용 저작권에 대한 보호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본 보호법은 '대중과의 통신'에 대한 권리를 도입하여 저작권소유자들이 그들의 창작물이 새로운 통신환경(온라인 상)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 및 인터넷서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소유자들에게 법정자격을 부여하여 방송사에 의해 재방송되는 창작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APEC 역내개도국들에게 사무적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3) 분석 및 평가

호주는 1996년 이래 WTO TRIPs 의무규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 저작권법 및 특허권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출판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강화 및 제약상품에 대한 보호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동 법에 의한 지재권보호

를 WTO 전 회원국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다른 회원국들, 특히 APEC 역내개도국들의 국제규범에의 부응을 위한 기술협력제공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다. 실행계획에 있어서도 신기술발전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 상 통신에 있어서의 저작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브루나이

1) 이행현황

브루나이는 상표권과 특허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1997년 이후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98년도 상표법은 서비스상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특허법과 관련,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특허등록만을 다루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행사항으로는 지재권의 신속한 부여를 위하여 상표등록의 컴퓨터화를 이행하였다.

2) 실행계획

브루나이는 향후 TRIPs 조약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상표권과 특허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저작권과 관련 지적재산권(의장,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구속력과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적재산권의 신속한 부여를 위해 노력하며 지재권 침해의 적절한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양자간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 분석 및 평가

브루나이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법제도 및 실행계획의 측면에서 1997년 이후 큰 진전이 없었다. 특허권 보호에 있어서도 제한된 몇몇 국가의 특허등록만을 다루고 있으며 상표법에서는 서비스상표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허법 및 상표법의 개정 및 보완이 시급하다.

다. 중국

1) 이행현황

중국은 197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국내법 및 규제를 마련하고 국제협약에도 가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 및 행정조치로 중국은 저작권,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법원 및 각 관할기관을 지정하였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행현황을 보면 1998년 6월까지 중국 특허청(China National Patent Agency)은 80만 건 이상의 특허출원을 받았으며 그 중 38만 건 이상의 특허권이 등록되었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 등록수와 지적재산권 분쟁 처리건수 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상표법 및 특허법의 등록절차 간소화 및 개정이 진행중에 있다.

2) 실행계획

단기적으로(1998 ~ 2000년) 중국은 지적재산권 관련법 및 규제에 대한 집중적 연구와 상표법을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특히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훈련프로그램 추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알리기 캠페인을 수행할 방침이다. 중기적으로는(2001 ~ 2010년) 특허권 보호에 있어서의 기술발전을 고려한 특허법의 재개정 및 특허등록절차의 간소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를 위한 규정을 채택하고 영업비밀 보호법을 공포할 계획이며 지적재산권 보호이행을 위한 사법적 절차를 강구하고 행정절차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도 중기적으로 달성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2011 ~ 2020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 개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알리기 캠페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3) 분석 및 평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통계를 볼 때, 특허출허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기타상표권의 등록, 지적재산권 분쟁 처리건수 등은 1997년 이후의 기록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저작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실행계획에 대하여 그 이행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행계획에 있어서 1998년도 IAP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다.

라. 일본

1) 이행현황

일본은 21세기의 보다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1998년 4월 2005년을 대비한 특허정책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일본 특허청 사용자 편의 공공서비스를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은 1995년 말 TRIPs협정과 일치하는 저작권법, 특허법 개정을 완료, 시행단계에 있다. 그리고 WIPO의 저작권법 및 실연자와 음반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저작권법을 재개정하였다.

일본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등록을 위한 전자출원체제의 향상을 위해 1998년 4월부터 PC에서 전자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작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기술적 방법(Technological Measures) 및 권리경영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에 관한 개정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칙금 인상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 이 밖에 일본은 인적자원개발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교환, 그리고 지적재산권 이행방안 개발연구 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내 관련기관들과 국제관련기관들이 다양한 형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일본은 UPOV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종자 및 종자법안(Seeds and Seedlings Law)의 개정을 이행하였다.

2) 실행계획

일본은 지적재산권의 신속한 부여를 위하여 단기적으로(1998 ~ 2000년)는 특허권의 검사요청기간을 신청일로부터 7년인 현 기간보다 단축시키기 위해 특허법의 개정을 고려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2001 ~ 2010년) 일본 특허청의 주도하에 2005년까지 실질시간운영(Real-time operation)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민간, 행정부의 효율적인 조치·처방을 내리고 단·중기적으로는 1998 ~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2011 ~ 2020년까지 쌍무적 기술개발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일본특허청은 단기 실행계획의 일부로 1999년 3월까지 4천만 개에 달하는 지적재산권 관련정보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중·장기적(2001 ~ 2020년)으로는 현재 CD로 제공되고 있는 일본특허초록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3) 분석 및 평가

일본은 저작권 및 특허권을 중심으로 TRIPs규정을 전반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본의 앞선 정보를 전파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향상시키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 멕시코

1) 이행현황

멕시코는 국제협약에 따라 1994년에 산업재산에 관한 법률과 제도적 시스템을 개정한 이후, 멕시코산업재산연구소(MIPI)가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이행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시행되고 있으며 저작권이행은

국립저작권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pyright)가 담당하고 있다. 식물변종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밖에 1995년 관세법을 선포하여 국경지역에서의 시행규정을 인정하였으며 TRIPs의 144조부터 159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행사항으로는 1998년에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법의 제정과 상표권 및 특허권 신청의 검색, 등록, 심사절차 및 지적재산권 보호이행절차의 자동화가 이행되었다.

2) 실행계획

멕시코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WIPO 산하협정에 가입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구제·행정절차 및 규제책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화 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이행절차 및 특허·상표 신청의 자동화를 향상시키고 전문 인적자원양성을 위한 지적재산권 훈련 및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일반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3) 분석 및 평가

멕시코는 지적재산권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그 침해의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실행계획 중 하나로 집적회로설계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바. 필리핀

1) 이행현황

필리핀은 TRIPs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특허권, 상표권, 지리적표시,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법을 통합하여 지적재산권법전을 1996년 제정하고 관할기관으로 지적재산권청을 신설하여 1998년 1월부터 시행해 왔다. 또한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의 이행규정을 공포, 1998년 10월부터 효력이 발생

하였으며 대통령직속 지적재산권위원회(Presidential Inter-Agency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IAC-IPR)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지적재산권의 이행 및 침해구제, 그리고 분쟁해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밖에 지적재산권의 신속한 부여를 위한 법개정 및 정보의 전산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지리적표시에 대한 새로운 법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이행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자동화 및 현대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실행계획

필리핀은 단기적으로(1998-2000년) 식물다양성 및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지적재산권의 이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어 행정절차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중기적으로(1998-2010년) 지적재산권의 신속한 부여 및 침해구제 및 절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기능의 자동화를 통한 지적재산권제도의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 쌍방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하에 지적재산권제도의 현대화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3) 분석 및 평가

필리핀은 TRIPs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그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현대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적재산권의 많은 항목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침해시 구제방안에 대한 법제도도 부재한 상태이다.

사. 러시아

1) 이행현황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연방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방 경쟁법 및 독점금지법에 따라 지적재산보호를 포함한 불공정 경쟁이 금지되어 있다. 반독점정책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연방부(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Antimonopoly Policy and Business Support)는 이러한 연방법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마드리드협약 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행정 및 사법절차를 통해 이행된다. 러시아는 이전 IAP제출이 없는 관계로 특별한 이행사항은 없다.

2) 실행계획

러시아는 단기적으로(1998 2000 /2002년) WTO에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WTO TRIPs규정과 일치하는 지적재산권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행정절차를 개발하고 기술 및 과학 관련 지적재산권분야에 한하여 분쟁해결방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2001 /2003 2010년) 지적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이행제도법규를 완성시키고 APEC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 일치하는 법규정을 마련하며 APEC 회원국과 기술 및 과학분야의 협력을 이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분석 및 평가

WTO 비회원국인 러시아의 경우 TRIPs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이 상당수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이행 및 침해구제방안도 미

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향상을 위해 WTO TRIPs 협약의 규정과 일치하는 법규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 대만

1) 이행현황

대만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법은 국제규범과 일치되게 개정하였으며 WTO회원국은 아니지만 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치 보호법은 TRIPs협정의 요건과 맞게 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저작권법과 그 이행에 관한 규정이 1998년 1월에 채택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수출 감시체제와 법집행기구와 같은 국경조치도 도입하고 있다.

대만은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자협약을 검토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의 양자협약은 작성단계에 있다. 이 밖에 상표 컴퓨터검색시스템이 1998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행사항으로는 CD 및 V-CD 제조업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확인코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2) 실행계획

단기적으로(1998 ~ 2005년) 대만은 특허검사규범 및 상표운영규범 제정을 이행하고 지적재산권 행정기관의 통합 및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 · 중 · 장기에 걸쳐(1998 ~ 2010년) 특허조사 시스템의 컴퓨터화, 등록절차 간소화, 검색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법원개설 및 특허법전문변호사를 임용할 계획이며 이 밖에 APEC 회원국들과 지적재산권전문가 방문교환 및 기술협력의 향상, APEC 회원국들과 지적재산권분야 양자협약 체결 및 지적재산권 관련 컴퓨터네트워크 개발협력, 그리고 유명상표에 대한 정보교환을 이행할 계획이다.

3) 분석 및 평가

대만은 WTO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적재산권분야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제협약 및 TRIPs규정에 상응하는 법제도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지적재산권관련법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전산화가 발전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지적재산권분야의 양자협약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도 활발한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지적재산권 특별법원의 설립과 관련 변호사의 선임에 대한 실행계획이 이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지적재산권 침해의 구제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자. 미국

1) 이행현황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은 WTO TRIPs규정을 넘는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저작권분야에 있어서 베른협약보다 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NAFTA 제17장에는 계약에 의한 저작권의 자유로운 이동, 배치설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1998년 10월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새로운 행동강령을 연방정부기관(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에 지시하여 다른 정부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현재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의 합법성여부를 철저한 감사를 통해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실행계획

미국은 신속한 지적재산권의 부여를 위해 현행 지적재산권 행정시스템을 간소화, 표준화하였으며 표준화되고 간소화된 상표등록절차를 APEC국가 내에서 창설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민간, 정부절차 및 구제를 위해 APEC국가들과의 협력하에 지적재산권 이행을 위

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양자간 기술협력의 확대 및 세관통과단계에서의 효율적 지적재산권 단속제도와 기술을 APEC 회원국 세관에 제공하고 있다.

3) 분석 및 평가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전 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권의 강도 높은 보호를 여타 APEC 회원국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차. 베트남

1) 이행현황

베트남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정비해 나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베트남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다섯 개의 관할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지적재산권에 관한 등록, 신청, 증명서 발행 등의 업무는 산업재산권국내사무소(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등록절차이행은 저작권과(Copyright Department)에서 관할하고 있다. 단,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문제는 상기한 두 곳에서 모두 다루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침해는 시장통제사무소(Market Control Bureau)와 경제경찰(Economic Police)이 다루고 있다. 일반관세청에서는 수출입상품 및 입출국자들의 수하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로 담당하며 시장통제사무소에서는 국내시장에서의 생산 및 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를, 그리고 경제경찰은 국내에서 일어난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포함한 전반을 다루고 있다.

베트남이 처해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에 의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TRIPs 의무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와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베트남은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도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지리적 표시 및 식물다양성분야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생물보호를 위한 특허권신청 및 등록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며 모든 특허권 취소결정에 사법심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지적재산권 보호이행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법처벌 및 절차에 관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실행계획

단기적으로는(1999 2000년) 현재 비보호대상에 대한 보호규정, 특히, 비밀정보 및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에 대한 규정을 설립·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처벌규정을 마련, 공포하였으며 베른협약의 어문저작물 및 예술작품보호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2001 2010년) WTO에 가입한다는 전체하에 TRIPs규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 교육 및 이행담당관 훈련에 있어 관련 국제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2011 2020년) WTO, ASEAN, APEC이 규정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이행규정을 완전히 이행할 계획이다.

3) 분석 및 평가

베트남은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아직도 상당수에 달하며 이행 및 침해시 구제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이행의 관할권 및 침해시 이를 다루는 기관이 다수 기관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일관성있는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종합평가

한국은 대부분의 TRIPs협정규정에 상응하는 법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 및 기소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보호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법률제정보다 행정적 사법적 권한에 의한 부적절한 법률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외국저작권의 50년 소급보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을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려놓았다. 또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저작권보호 및 특허권의 전자출원체제 등의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APEC국간의 쌍무적 기술개발 및 협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그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단, 호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여타 APEC국가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여타 APEC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브루나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APEC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행절차의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 브루나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실행계획의 이행에는 1997년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VIII 경쟁정책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 회원국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경쟁정책과 관련된 법 및 시행정책을 도입하거나 유지하여 아태지역의 경쟁적 환경을 증진시키고 동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며 APEC 회원국간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영과 생산자 및 유통업자간의 경쟁, 그리고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한다.

지 침

각 회원국은

- ① 각국의 경쟁정책 및 법률과 시행상황을 투명성의 차원에서 점검한다.
- ② 정책개발, 법률제정, 해당집행기관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시행한다.
- ③ 회원국간에 적절한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1. 97년도 IAP 요약

가. 호주

▶ 변동사항 없음.

나. 브루나이

- ▶ 변동사항 없음.

다. 중국

- ▶ 변동사항 없음.

라. 일본

- ▶ 일본의 경우, 1996년에 밝힌 개별실행계획 가운데 이미 일부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49개 분야의 카르텔금지 적용제외 가운데 29개 분야의 예외가 없어지거나 수정되었고 6개 분야에 있어서는 적용제외의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한정되었음
 - 또한 국제계약에 대한 신고제도가 1997년 7월부터 폐지되기도 하였음.
- ▶ 일본의 경우, 새로운 개별실행계획의 제시나 개별실행계획의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었으며, APEC내의 경쟁정책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마. 멕시코

- ▶ 멕시코는 1997년 개별실행계획에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경쟁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경쟁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f Economic Competition)’에 나타난 개념과 법의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바. 필리핀

▶ 변동사항 없음.

사. 대만

- ▶ 1996년 대만이 제안한 ‘APEC 경쟁정책 데이터베이스안’이 1997년 1월 APEC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대만은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APEC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중에 있으며, 현재도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음.
 - 이는 APEC 회원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대만은 1997년 1월 27일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해 ‘경쟁정책정보·연구센터’(Competition Policy Information and Research Center)를 설립한 바 있음.
- ▶ 또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추상적인 실행계획만을 내놓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공정거래 위원회안에 규제완화를 위한 실무작업반을 두고 1998년까지 백서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음.

아. 미국

▶ 변동사항 없음.

2.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호주의 경쟁당국인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ACCC)은 대만의 경쟁당국과 경쟁법의 집행을 위한 양자협약에 들어갔으며 미국과도 정부차원의 협력을 위한 협상이 완료단계에 도달하였다.

경쟁정책과 규제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민간기업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APEC의 권고사항을 호주는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정부가 수립한 Independent Committee of Inquiry into National Competition Policy(the Hilmer Committee)는 위원회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많은 민간기업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렇게 민간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간기업이 지지하는 Hilmer Committee의 보고서가 1995년 호주정부의 경쟁정책개혁의 근간이 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쟁정책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민간기업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있다.

호주는 1997년부터 경쟁법 적용제외 분야를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경쟁법 적용으로부터의 제외는 해당 반경쟁적 법률의 입법으로 인한 이득이 경쟁법의 집행으로 인한 비용을 상회하며 법률의 목적이 경쟁을 제한해야만 달성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다. 1998 1999년간 개별실행사업으로는 Prices Surveillance Act의 재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2) 평가

호주는 1996년의 실행계획을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이행하였으며 1998 99년을 위한 새로운 실행계획으로 Prices Surveillance Act를 재검토하는 중이다. 이를 보면 호주는 국내적으로는 IAP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호주는 경쟁법의 제정과 집행의 경험이 오래되고 APEC내에서 중간자적인 입장(미국이나 EU, 또는 개도국 등 경쟁정책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비교하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또는 형태에 관한 의견의 제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 등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 양자협약형태의 국제협력에는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 현재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미국, 그리고 대만 등과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브루나이에는 아직 경쟁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브루나이는 경쟁촉진을 위하여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브루나이는 기존의 IAP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있지만 1998년의 IAP 이행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우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 계획되어 있다. 브루나이는 또한 소비자 보호기구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나아가서 APEC이나 WTO, 또는 기타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는 경쟁정책에 관한 대화와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2) 평가

브루나이는 1996년, 1997년, 그리고 1998년의 개별실행계획이 동일하며 그동안에 이행된 사항도 없어 IAP 이행사항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더욱 성실한 보고가 요청된다. 특히 경쟁법 제정을 위

해 APEC 회원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술협력이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다면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사를 보고하면 자국의 경쟁법 제정과 집행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중국은 1980년에 경쟁법 Regulations on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Competition 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적용으로 지금까지 약 10,000건의 판례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경쟁법의 집행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서 중국은 현재 독점금지법(기업기밀 보호 포함) 법안과 경쟁법에 대한 시행예규를 마련중에 있다. 한편 Washington Convention과 같은 국제협약에 부합되는 국내법을 마련중에 있으며 APEC Investment Dispute Mediation Guidance도 완료하였다. 1997년에는 상공부(State Administration of Industry and Commerce)가 계약분쟁의 중재에 관련된 행정조치(Administrative Measures)를 공표하고 중재훈련원을 설치하였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1998 2000년) 독점금지법을 제정하고 분쟁중재, 품질제고, 소비자 보호 등 경쟁관련 법과 제도의 배정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법적교류(legal exchange)를 심화하고 APEC Database on Competition Policies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2011 2020년) 민영화 등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시장경쟁 메카니즘을 통한 범 국가적 시장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2) 평가

중국은 매우 활발히 경쟁법 관련법안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제도정비 및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국제기구와의 협력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나 방향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일본은 경쟁정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경쟁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국내외에 배포하였으며 특히 무역 협회 등이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나아가서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으며 기업결합신고제도 및 관련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합리화하였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1998년 5월 통과되어 199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한편 경쟁정책의 집행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카르텔 및 재판 매가격 등 경쟁법 적용제외대상을 다시 검토하여 저작권이 부여된 품목 중 재판매가격이 가능한 품목을 저서, 잡지, 신문, 음반(테이프 및 CD 포함)으로 한정 하기로 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프리미엄과 관련된 규제도 검토하여 관련법은 1996년에 개정되었다.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인력훈련프로젝트의 실시 및 기존 경쟁정책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연례 의견교환 및 경쟁정책에 관한 컨퍼런스를 지속하여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쟁정책에 관한 정보센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8년 이후 개별실행계획은 주로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집행,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개정된 법과 제도들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합을 제외한 카르텔을 금지할 예정이며 재판매가격 및 지주회사와 관련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보상제도(private remedy system)에 대한 연구를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업계와의 대화강화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 경쟁당국과의 연례 의견교환 및 경쟁정책에 관한 컨퍼런스 도 지속시키는 한편 경쟁정책관련 APEC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2) 평가

일본의 개별계획 이행사항 중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를 허용한 것과 기업결합신고제도 및 관련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합리화한 것이 돋보인다. 그러나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경쟁법 국제규범화에 관한 국제논의에 대하여 일본의 입장이나 문제제기 등도 없는 것이 아쉽다. 또한 일본이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개최한 컨퍼런스의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는 것도 회원국들과의 정보교환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멕시코는 경쟁법(FLEC: Federal Law on Economic Competition)의 집행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쟁법 시행규칙(Regulations to Implement FLEC)을 1998년 3월에 마련하는 한편 시행규정을 통해 조사 일정 및 합병과 관련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개념도 명료화하였다.

멕시코는 OECD, NAFTA, APEC 등 다양한 차원의 국제적 협력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실행계획으로는 경쟁법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경쟁당국의 결정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서 멕시코 경쟁당국(FCC)의 경쟁주창역할을 심화하고 이를 위하여 他정부기관 학계 그리고 전문직협회(professional associa-

tions)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양자간 기술적 협력제공을 지원하며 필요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국제협정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2) 평가

멕시코는 경쟁법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1996년 실행계획은 달성하였으나 민영화(통신, 철도, 가스 등) 및 규제완화와 관련되어 경쟁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양자간, 또는 수국간 국제협정을 위한 협상에 참여한다는 의사는 진보적으로 평가되나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멕시코의 참여 정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필리핀에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Law on Monopolies and Combinations, 1956년 개정)은 있으나 포괄적으로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없다. 필리핀은 많은 APEC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국제기구의 경쟁정책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PFP(APEC Partners for Progress)를 포함한 APEC의 기술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98년 이후에는 기존의 경쟁법을 재검토하고 반독점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며 경쟁당국(Fair Trade Commission)을 설치하여 경쟁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APEC내에서의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상호이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2) 평가

포괄적인 경쟁법의 제정을 검토한다는 것은 필리핀의 1996 1997 실행계획이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1998년 이행사항으로 다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필리핀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APEC 기술협력의 구체적 내용과 이러한 기술협력이 포괄적인 경쟁법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음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면 다른 회원국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 러시아

1) 주요 내용

러시아는 러시아 헌법에 기반한 경쟁법(Federal Law on Competition and Prevention of Monopolistic Activity on Commodity Markets)을 도입하고 있다. 경쟁법의 조율(coordination) 과 집행은 경쟁당국인 러시아 연방 반독점 및 기업지원부처(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Antimonopoly Policy and Business Support)가 담당하고 있다. 동 부처와 그 지역청에서는 매년 경쟁관련법을 검토하며 1000건이 넘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품(산업부문)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1998 2000/2002년) 시장집중도가 높은 부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규모 기업과 상품유통체계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법체계의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나아가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국내시장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경쟁법체계의 정비와 집행강

화에 중점을 두고 자연독점으로 알려진 부문에서도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할 계획이다.

2) 평가

러시아는 1996-97년 개별실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시기적 변화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경쟁법이 도입되어 있으며 경쟁법의 도입과 제반경쟁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규제완화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내경쟁법을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국제협력에 대한 언급이나 제언은 없어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독점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는 강화할 계획이면서도 반덤핑조치의 반독점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보호를 위주로 반덤핑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대우하는 것이며 APEC의 무역자유화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정책이다.

아. 대만

1) 주요 내용

대만은 상품표시, 지적재산권 및 상표와 관련된 경쟁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오토바이시장 유통구조의 수직적 제한 요소를 제거하였다. 한편, 규제완화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작업반의 작업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작업반의 경쟁관련법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만은 경쟁법에 대한 교육실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및 태국과 함께 APEC Competition Training Programs (1998.4)를 주최하여 대만의 경험을 제공하였고 1999년 8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Program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양자협정체결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대만은 뉴질랜드와 경쟁법 적용에 대해 협력하는 양자협약

(arrangement)을 1997년 12월 체결하였으며 호주와도 1998년 4월 양자 협의를 시작하였다. 또 다른 형태의 국제협력으로 대만이 운영하는 “APEC Competition Policy and Law Database”의 2단계 작업이 1998년 완료되어 1999년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APEC 회원국들의 경쟁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1998년 이후 실행계획으로 대만은 공정거래법 개정 및 규제완화, 그리고 국제협력의 지속 등 두 가지 사업을 들고 있다.

2) 평가

대만은 자국 경쟁법의 변화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력면에서 계속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미국

1) 주요 내용

국내적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97년 Federal Trade Commission과 Department of Justice가 “효율성” 부분과 관련하여 수평적 합병 가이드라인을 합동으로 개정, 합작투자 및 기업간 협동(collaboration)과 관련된 경쟁정책문제를 검토한 것을 들 수 있다. 국제협력에 있어 미국은 양자간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자간 차원에서도 인적, 세미나 개최, 법제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양자협력체결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호주, 및 독일 등과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상호교환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호주와는 상대국에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협력체계에 대한 협상이 1997년 4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EU와는 1991년의 양자협정을 보완하는 적극적 예방 (positive

comity)협정을 1998년 6월에 새로이 체결하였다. 나아가서 미국은 APEC, NAFTA, FTAA, OECD 및 UNCTAD등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1998년 이후 실행계획은 보고하지 않고 있다.

2) 분석 및 평가

미국은 IAP의 이행에 대한 보고보다는 자국 경쟁법에 대해 매우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양자간 협력협정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나 다자간협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 외에 특별한 제안이 없어 다자간협력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술협력 측면에 있어서도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 베트남

1) 주요 내용

베트남은 경쟁법이 따로 없고 상법의 관련조항들을 통하여 경쟁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법의 제8조항은 상거래에서의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제185조항은 허위 판촉행위를 규제하며 제192조항은 허위광고 및 비교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1995년 도입된 민법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기업법 기업법, 파산법 등을 제정하였고 동시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정부부문이 부분적으로 기업화되었다.

1998년 이후 주요 실행계획으로는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해 APEC 회원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APEC을 통한 기술협력 및 지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중·장기(2001~2020년)적으로는 경쟁정책 관련법을 재검토 및 보완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공기업개혁과 경영기법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

정이다. 또한 별도의 경쟁법을 제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 평가

베트남은 1996-97년에는 개별실행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시기별 변화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경쟁법체계의 보완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베트남은 APEC의 지원을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아 이러한 사항들을 다음 보고서에서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3. 종합평가

APEC은 경제규모 및 수준, 경제체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쟁법과 경쟁정책제도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체로 개도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들은 아직 국내 경쟁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AP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별로 성실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경쟁정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신흥경제국은 대부분 경쟁정책제도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으며 국제협력, 특히 양자협정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국내 상관을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루나이에서는 1996년, 1997년 그리고 1998년의 개별실행계획이 동일하며 그동안 이행된 사항이 없다. 필리핀

에서도 포괄적인 경쟁법의 제정을 검토한다는 것은 1996-1997 실행계획이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검토 내지는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베트남은 1996-97년에는 개별실행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시기별 변화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이들 국가들은 APEC을 통한 기술지원 및 협력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경쟁법체계의 보완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APEC의 지원을 바라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경제체제 전환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미 경쟁법을 도입하였고 그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중국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국제협력에 대한 언급이나 제언은 없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러시아는 반덤핑조치의 반독점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보호위주로 나아갈 가능성이 우려된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쟁정책집행에 있어 민간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협력면에서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들은 양자협정 체결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협정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은 호주, 대만 및 미국 등이다. 대만은 뉴질랜드와 경쟁법 적용에 대해 협력하는 양자협약(arrangement)을 체결하였으며 호주와도 양자협의를 시작하였고 미국은 캐나다, 호주, 및 독일 등과 양자간 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정보상호교환 등의 심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상대국에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협력체계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EU와는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협정을 체결하였다. 반면 멕시코는 양자간·복수국간 국제협정을 위한 협상에 참여한다는 의사는 표명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를 보면 양자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국제협력형태임을 알 수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다자간 국제협력 또는 국제규범화는 아직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계획들은 주로 국내 경쟁법의 제정 및 집행의 강화 또는 민영화 부문의 경쟁초진 및 규제완화 등에 관련된 것이다. 최근 APEC 차원의 경쟁원칙이 선언되어 경쟁정책에 대한 역내의 인식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APEC의 경쟁원칙은 구속적인 것도 아니며 아직은 실질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한국은 아직 경쟁정책분야에서 양자협정을 맺은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양자협정추세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특정국가들의 반덤핑조치 강화추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경쟁정책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확실히 무역·투자자유화와 연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IX

정부조달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 회원국들은 앞으로

- ① 개별 APEC 회원국의 정부조달실시와 더불어 정부조달정책 및 체계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개발하고,
- ② 보고르 선언의 원칙과 목적에 일치하는 아태지역 전체의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성취하고, 기타 다자간 또는 복수간 협상의 장에서의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과정에 기여한다.

지 침

각 APEC 회원국은 앞으로

- ① 자국의 정부조달체제와 정보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 ② 가능한 곳에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1. 97년도 IAP 요약

가. 호주

<현재상황>

▶ 인터넷상의 Transigo (<http://transigo.net.au>)를 통해 조달정보(조

달기회의 공고 구매통계 등)를 제공.

- ▶ ESA에 대한 중간검토보고서를 96년 10월에 발간하였음
- ▶ 또한 96년 6월에 발족하여 98년 6월 말에 해산될 예정인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Panel(PE68)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정보기술서비스를 조달하고 있음.

나. 브루나이

- ▶ 96년과 동일.

다. 중국

<현재상황>

- ▶ MAPA 중 97년도에 실행된 것들은 다음과 같음.
 - 정보교환 및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얻기 위한 contact point의 마련.
 - APEC 정부조달 훈련프로그램의 주최.

<실행계획>

- ▶ 장기적으로는 APEC 회원국과의 상호 정부조달시장 개방.

라. 일본

<현재상황>

- ▶ 현재 WTO GPA의 회원국이며 이의 조기검토 및 투명성 작업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마. 멕시코

<현재상황>

- ▶ 정부조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단계 전산화작업 추진.

바. 필리핀

- ▶ 변동사항 없음.

사. 대만

<현재상황>

- ▶ 97년 1월 공공건설분쟁해결위원회가 결성되어 정부조달에 관한 분쟁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음.
- ▶ 중국어로 된 database를 완성하였고 정부조달 관보를 주 6회 발행하고 있음.

아. 미국

- ▶ 96년 IAP와 동일.

2.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호주 중앙정부의 정부조달체제는 투명성과 최혜국(MFN)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Closer Economic Relations 무역협정에 의거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 외의 외국인에게는 무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의 중앙정부는 분권(devolved)적인 조달체제를 가지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凡정부적 기본원칙 아래 나름대로의 필요에 따라 물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다.

호주는 조달관련정보를 인터넷에 발표하여 정부조달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바, 97년 3월부터 인터넷의 Transigo(<http://transigo.net.au>)를 통해 조달정보(조달기회의 공고 등)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98년 3월 『정부조달지침: 주요 정책과 원칙』을 발간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²⁾ 호주의 중앙정부는 정부조달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특혜(preferences)를 두지 않으나 6개의 주(state)정부 및 지방(territory)정부는 국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특혜마진(preference margin)을 두고 있다. 또한, 호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Australian Civil Offset Agreement(ACOA)에 참여하고 있는 바, 중앙정부는 civil offset를 추구하지 않지만 지방정부 중 일부는 아직 offset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호주는 ACOA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97년 조달체제 검토 후, 호주의 중앙정부는 조달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하였다.

- 기업의 산업영향 보고서 제출의무를 철폐.

2) <http://www.ctc.gov.au/publications/purchasing/cpg/cpg.html>

- 1000만 달러 이상의 조달에 대해서는 두 개 이상의 조달업체가 경쟁하는 Two Envelope Tendering Arrangement를 도입.
- 1000만 달러 이상의 조달에 대해서 정부기관에게 평가기준, 산업개발기준, 그리고 중소기업참여 방안연구를 입찰관련 서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
- 중앙정부 Common Use Arrangement³⁾의 합리화를 추구.
- 일부 조달분야에 관하여 공급자 사전 자격부여제도를 도입.

그 외로 과거 일부 공급업자에게 혜택을 주었던 Enhanced Supplier Arrangement(ESA)가 98년 10월 개선되었다. ESA의 개선으로 정보기술 품목, 사무용품과 서비스의 조달에 대해서는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조달의 기본계약조건을 제시하는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개정3판(GITC3)이 적용되게 되었고, ESA 프로그램의 범위가 일반 사무용 가구와 경매산업에도 확산되었다. 정보기술산업에 대한 중앙조달체제(PE Arrangement)가 98년 9월 30일 철폐되므로 각 개별부처는 정보기술관련 조달에 GITC3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연방정부 금융거래시장이 민간산업에 개방되었다. 또한, 대규모 조달사업에 관해서 각 책임 부처⁴⁾는 산업개발 가능성 여부에 관해 산업과학관광부와 금융행정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검토의무가 부여되었다.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다자 및 복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IAP 이행사항에서 호주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또 APEC 차원에서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 각종 주요 조달정책에 대한 공동정책을 지방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달품목에 대해 凡중앙정부 조달을 추구하는 제도.

4) 국방부와 해외개발부(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제외.

- 건설산업에 대한 National Code of Practice 도입 추구.
- 인터넷 시설, 정보체제와 사업운영 이슈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관성있는 조달체제 성립.
- 특혜마진(preference margin) 철폐.

1998년 IAP에서 호주정부는 1999년 말까지 비의무적 정부조달 원칙을 개발하려는 APEC 기업자문회 정부조달 전문가 회의의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평가

98년중 ESA 개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정부조달체제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큰 제도적 변화가 없다고 평가한다. 개선된 ESA에 대한 설명과 GITC3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평가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WTO GPA의 참여 여부에 대한 검토가 95년도에 시작된 바, 아직 결과가 없이 연구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브루나이 IAP 정부조달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브루나이는 1983년 금융규제법(Financial Regulations)에 따라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조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B\$150,000을 초과하는 입찰은 State Tenders Board를 통하여, B\$150,000 이하의 입찰은 각 부처의 Mini Tenders Board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IAP 이행사항에서 브루나이는 정부조달에 관한 정책, 체제, 실행관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정부조달에 대한 정보공급원을 설립하고, 정부조달 정보 database의 설립

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정보 접근방법의 제공을 고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또한, 정부의 입찰과정을 재검토하여 개방성, 공정성, 경쟁성이 보호되는지 확인하고 정부조달체제의 자유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98년도 IAP에 추가된 내용은 없다.

2) 평가

브루나이의 IAP에는 현황설명이 없으며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또한, 97년과 98년 IAP가 동일하여 지난 2년간 실행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WTO GPA 참여 희망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중국은 정부조달절차에 대한 일관적이고 공식적인 법령체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즉, 현재 중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명확한 법령, 규제, 정책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각 정부기관의 조달 threshold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40개 이상의 부처, 30개 이상의 지방정부와 각종 소지역 정부는 각각 개별적으로 조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단, RMB 5000만 이상의 국내투자사업(외국자본이 포함되는 경우 US\$ 3000만 이상)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정부기관은 상업적 원칙에 입각하여 조달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 특별한 특혜사항이 적용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기관은 공급자에게 직접 조달기회를 통보하며, 공급자는 입찰참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정부조달사업에 대한 입찰정보와 기회는 자격이 있는 잠재적 공급자(중국 내외의 대규모 공급자)에게 직접 통보되고 있다. 조달계약의 수여는 주로 협상에 의해 결정되나, 최근 실험적으로 일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입찰절차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위한 중앙체제가 없으므로 APEC 정부조달 Database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조달체제의 정립을 위하여 회원국간 상호정보교환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regulated된 정부조달체제의 성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국가계획위원회(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는 정부조달 정보와 입찰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한 Chinese Procurement and Tendering Electronic Net의 설립을 고려 중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정부세입의 대부분은 주로 공무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며 물품조달에 사용되는 국비의 비율은 적었다. 그러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상황과 환경에 알맞은 정부조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각종 개혁을 시작하였다. 지방정부의 조달도 개혁대상에 포함되는 바, 지방정부의 조달과정에 대한 지침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98년에는 각종 정부조달 관련정보를 다수 출판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는 비의무적인 정부조달원칙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IAP에 발표된 중국의 이행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 실행계획(1998 2000년)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된다.

- ▶ 타국의 정부조달체제 연구 및 정부조달에 대한 교육 강화.
- ▶ 현 정부조달체제 검토 및 정부조달체제 개선방향 연구.
- ▶ 국제적 관행에 합치하는 정부조달법령 및 규제체제와 국내법을 점차적으로 설립.
- ▶ 실험적으로 1차 개방될 정부조달분야와 물품범위의 검토 및 선정.
- ▶ 적절한 threshold 가격 설정.
- ▶ 개방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정부조달통계와 정보를 정리하는 database 설립.
- ▶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정부조달관련 정보가 발표될 수 있는 정

보전달 매체 발굴.

- ▶ 정부조달 입찰제도를 시험적으로 시도.
- ▶ 凡APEC 비의무적 정부조달원칙 개발에 참여.

중기적 실행계획(2001 2010년)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된다.

- ▶ 회원국과 정보교환 강화.
- ▶ 정부조달관련 공무원에게 현장교육 실시.
- ▶ WTO GPA와 합치하는 정부조달법령과 규제체제 마련.
- ▶ 정부조달 입찰제도의 시험범위 확대.

장기적 실행계획(2011 2020년)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된다.

- ▶ 국제적 관례에 합치하는 정부조달절차와 체제 개발.
- ▶ 적합한 정보전달 매체로 정보조달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급.
- ▶ 정부조달과정에서 국내공급자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폐, 외국기업에 내국인대우 적용, 다른 APEC 국가도 정부조달분야를 상호 개방하도록 연구.

98년도 IAP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단기적 실행계획(1998 2000년)에 추가된 사항은

- ▶ 비의무적인 정부조달규제 설립.

중기적 실행계획(2001 2010년)에 추가된 사항은

- ▶ 정부조달체제의 설립을 위한 개혁 추진.
- ▶ 새로운 정부조달체제의 실험범위 확대.
- ▶ 정부조달관련 정보제공체제 예비설립
- ▶ 정부조달관련 시험 프로그램의 결과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비의무적 정부조달규제 설립.

장기적 실행계획(2011~2020년)에 추가된 사항은

- ▶ WTO GPA와 APEC 비의무적 정부조달원칙에 합치하는 정부조달 법령과 규제체제개발 등이다.

2) 평가

중국의 IAP는 자세하고 세부적인 실행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실행목표를 제시된 시간 내에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각 시기에 대한 목표는 잘 지정하였으나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한 설명은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일본의 정부조달체제에는 공급자의 국적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무차별주의와 공개입찰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1996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물품과 서비스 조달에 대해 WTO GPA를 적용하였으며 정부조달과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Office of Government Procurement Review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GPA의 검토작업과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직 GPA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GPA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일본은 GPA 수준 이상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바, 1985년부터 자발적으로 정부 물품조달에 대한 실행계획을 작성, 실행하여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1996년 1월부터는 일부 서비스 조달에도 유사한 실행계획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 6월에는 공공투자사업의 입찰과 계약절차개혁에도 실행계획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1995년부터 국무회의에서 매년 정부조달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WTO GPA에 합치하는 규제를 공포하였고 이를 관보를 통하여 출판하였다. 정부조달관련 정보는 정부조달관보에 발표되고 있으며, JETRO는 관보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하여 database system을 만들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이 인터넷 database는 APEC homepage에 연결되어 있다. 그 외로 각 연도의 정부조달실적을 보고하는 연별보고서가 출판되고 있다. 국내외 기업의 시장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 외무성은 회계연도 시초에 정부조달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조달 관련사항을 설명하였다.

기존 IAP의 이행사항에서 일본은 APEC 회원국에 정부조달관련 정보(제도, 절차, 법령, 규제 및 통계)를 제공할 것이며, 회원국간 정보교환을 도모하고 개도국에 정부조달관련 기술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APEC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 WTO GPA와 APEC 실행계획을 이행하여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을 도모하고 △ 정부조달 관련 항의체제를 유지하고 항의체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계속 공개하며 △ WTO GPA 재검토작업과 정부조달 투명성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98년도 IAP 이행사항에서 일본은 APEC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99년까지 APEC 비의무적 정부조달원칙이 완성되도록 연구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 1998년 3월 31일 결정된 규제완화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정부조달 관련사항을⁵⁾ 시행하고 △ 정부조달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

5) 정부조달 관련 항의체제에 대한 정보는 이미 일본 경제계획원의 인터넷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6) 1998 회계연도에 건설서비스 정부입찰의 상한가격안(scheduled ceiling tender prices)을 입찰 완료 후 발표할 것; 정부조달과정에 참여한 기업의 자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 reverse subcontracting과 bulk subcontracting의 규모 측정 등.

가하였다.

2) 평가

일본 IAP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조달체제와 과거 개선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각종 제도의 검토 이외에는 실제로 실행하는 조치가 별로 없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조달체제와 개선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바람직하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조달절차에 관한 정보(입찰오퍼, 입찰과정, 항의절차 등)는 93년 12월에 출판된 *Ley de Adquisiciones y Obras Publicas*에 포함되어 있다.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NAFTA),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및 코스타리카와 정부조달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내국인대우와 무차별주의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조달 절차와 입찰기회에 대한 정보의 database인 COMPRANET를 완성하여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입찰기회에 대한 정보는 관보인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을 통해서도 배포되고 있다.

기존 IAP 이행사항에서 멕시코는 정부조달체제를 더욱 간단하고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가 있고, '98 IAP에서는 입찰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배포하고, 정부조달의 역사적 통계를 제공하는 등 COMPRANET를 계속 향상시키며, 연간 정부조달수요를 추정하는 database를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APEC, WTO와 FTAA 등 국제적인 무대에서 정부조달의 투명성 원칙과 인터넷 조달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 평가

멕시코의 정부조달 관련정보 홍보체제에서 정부조달 관련법령과 입찰 기회가 인터넷과 관보에 동시 배포됨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조달체제에 있어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행계획에서 정보제공체제의 개선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체제를 개선할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정부조달 IAP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조달 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지방정부 조달체제를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필리핀은 정부조달 관련법령에 의해 내국인 공급자에 대한 우대정책과 국산품 의무사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ASEAN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다른 ASEAN 국가공급자에 대해 2.5%의 특혜(단, 입찰 건당 최고 특혜 US\$40,000)를 부여하고 있다. 필리핀의 정부조달체제는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으나 효율성, 경제성, 투명성과 성실성의 원칙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각 부처는 독립적으로 조달절차를 추구하며 입찰공고는 주로 신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각 부처에 직접 접근해야 한다. 한편, 정부조달체제를 일원화시키는 법안이 곧 국회에 다시 제출될 계획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은 국산품 의무사용정책이나 국내기업에 대한 특혜정책을 다시 고려할 계획이다.

기존 IAP 이행사항에서 필리핀은 위에 지적한 법령과 조건을 제외하고는 개방된 정부조달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다른 개선의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는 느낌을 주었다. 단, 정부조달 관련 정보교환의 도모를 위해

필리핀은 정부조달 관련법령과 입찰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여 다른 APEC 국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98년 IAP 이행사항에서 필리핀은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NEDA)를 정부조달관련법령과 정책문의센터로 지정하였으며, 정부조달 입찰기회에 관한 문의센터도 곧 설립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 WTO 정부조달협정, APEC 비의무적 정부조달원칙 등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약과 관례에 비추어 필리핀의 정부조달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APEC 회원국과 정보교환에 참여할 것이라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2) 평가

97년 IAP와 비교하면 정부조달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많이 늘었으나, 아직도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필리핀의 법체제는 어떤 방식으로 투명성, 효율성, 경제성과 성실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실행계획은 아직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부조달체제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IAP에 기술하였으나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료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국내기업과 국산품 사용에 대한 특혜정책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GPA 가입의사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포괄적인 내국인특혜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개방된 정부조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생각해 볼 때, 필리핀의 IAP는 조달체제의 개선과 추가 자유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사. 러시아

1) 주요 내용

러시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조달체제는 1994년 공포된 법령에 기준하고 있으며, 이 법령을 이행하는 규정체제는 1997년 4월 8일 대통령령 305호로 공포되었다. 현 정부조달체제는 WTO GPA와 부합한 바, 무차별원칙과 경쟁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정부조달과정에 대한 항의절차도 갖추고 있으므로 외국기업도 무차별원칙과 경쟁원칙 아래 정부조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997년부터 석유 수출에 관련된 석유 수송관(pipeline)의 사용권은 입찰과 경매과정을 통해서만 부여되며, 역시 1997년부터 국방 체제하의 식량공급조달도 입찰과 경매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러시아는 98년도에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므로 기존 이행사항이 없다. 98년도 IAP 이행사항으로는 단기적으로 정부조달체제를 검토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정부조달을 경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설립하고, 정부조달체제의 기본원칙을 함유하는 법을 도입,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또한, 여타 회원국의 정부조달체제를 관찰하고 정부조달관련 정보교환체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여타 회원국과의 협력체제와 정보교환체제를 강화하며, APEC 차원에서 정부조달체제 향상을 위한 작업에 참여하고, APEC 지침과 WTO GPA에 따라 국내 정부조달체제를 개선해 나가며, WTO GPA 가입을 고려할 계획이다.

2) 평가

기본적 원칙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정부조달을 담당하는 하나의 부처에 의해서 조달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분권적인 체제로 각 부처가 제각기 조달을 달성

하는지가 밝혀있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 대만

1) 주요 내용

대만은 WTO GPA에 가입하기 위하여 국내 정부조달체제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입찰과정의 시한을 연장시켰고,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기술적 요구조건을 합리화시켜, 정부조달관보와 항의절차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대만정부는 정부조달관련 정보 database를 완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database에 추가되는 사항은 연 6회씩의 관보를 통하여 출간하고 있고, 공공건설위원회(Public Construction Commission : PCC)를 정부조달 정보교환 contact point로 지정하였다.

또한, 1998년 5월 정부조달법(GPL)이 공포되어 99년 5월부터 발효될 것인 바, Procurement and Public Construction Commission이 GPL을 따라 정책과 규제체제를 설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구로 지정되었고, Ministry of Audit에게 정부조달과정에 대한 임의적 감사권이 부여되었다. 한편, 정부조달 건설부문관련 항의기구인 Public Construction Dispute Settlement Committee는 1997년 1월부터 98년 7월까지 31개의 입찰항의와 138개의 계약항의를 처리하였다.⁷⁾ 또한, 대만은 APEC 정부조달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GPA 가입을 협상하고 있다.

기존 IAP 이행사항에서 대만은 회원국간 정부조달체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세미나와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터넷 database를 확장시키며, 정부조달체제의 개혁을 계속 추진

7) 9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개의 입찰초청에 대한 항의와 73건의 계약분쟁을 처리하였다

하는 한편, 조달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다. 또한, APEC 지역의 정부조달교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비의무적인 정부조달원칙의 연구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WTO GPA의 가입을 통하여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도모하고, 정부조달 관보와 영문 입찰정보의 배포범위를 더욱 넓힐 것을 약속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회원국간 GPA의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98년도 IAP에서 대만은 99년 5월까지 GPL 관련규제를 작성하고, database의 정보가 GPL과 합치하도록 updating할 계획을 추가 이행사항으로 보고하였다.

2) 평가

대만의 IAP에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으나 97년도 IAP에 약속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GPA의 가입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단, GPL이 도입되므로 정부조달체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실하다.

자. 미국

1) 주요 내용

미국 중앙정부의 정부조달체제는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에 따라 투명하고 예상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FAR은 조달정보의 배포방법, 평가기준의 발표절차 등을 규정하고, 결과 위주의 기술기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 입찰자에게 통보없이 조달절차를 바꾸면 입찰자가 이를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과 연방정부도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Buy American Act」라는 국산품 우대 특혜법을 운영하고 있으

나, WTO GPA 가입국과 NAFTA 가입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협정조건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 무역법에서는 정부조달 과정에서 WTO GPA, NAFTA 등의 협정을 가입하지 않고 미국 기업에 내국인 대우를 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정부도 역시 내국인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Small Business Act」에서는 정부조달총액의 일정한 비율을 중소기업이나 소수인종(minorities)소유 기업에 할당하게 되어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기존 IAP에서 미국은 정부조달 관련 정보와 입찰기회를 APEC 정부조달 인터넷 페이지에 연결시켜 홍보하고,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투명성과 정보의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가 강요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완화시켜 정부조달의 기회를 넓힐 것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GPA에 가입하는 APEC 회원국에게는 GPA에 따라 미국내에서 미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할 것이며, 다른 국가와 함께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정부조달의 투명성, 개방성, 확립된 절차에 관한 잠정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98년도 IAP 이행사항에 추가로 제안한 사항은 없다.

2) 평가

미국은 현재 자국의 정부조달체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 체제를 개선하거나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할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FAR의 원문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나 지방정부의 조달관련 정보 및 입찰기회도 인터넷이나 관보를 통하여 통보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차. 베트남

1) 주요 내용

베트남정부는 96년 3월 국회에서 「Law on State Budget」가 통관된 후 정부조달에 대한 각종 법령과 규제를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조달에 사용되는 자금은 국정예산, 국제지원, 또는 공기업의 투자자금으로부터 비롯되는 바, 정부조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각종 금융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경제개발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정부조달절차는 투명성과 공개입찰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며, 각 정부 부처는 지정된 규제를 준수하고, 인적자원 및 기술이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베트남은 98년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므로 기존 이행사항은 없다. 98년도 IAP에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여타 회원국과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현재 정부조달체제를 검토하며, 기업의 입찰절차를 원활화시키고, 뚜렷한 정부조달절차를 설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보교환을 계속하고, 교육과정을 설립하는 한편, 포괄적인 정부조달체제를 설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준수할 수 있는 정부조달규정을 개발하며, 공기업이 입찰을 통하여 물자 및 서비스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부조달체제를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간단한 경쟁입찰체제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정부조달관련 법령 및 규제체제를 완성하며, 조달의 대부분이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2) 평가

베트남의 IAP에서는 정부조달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또한, 조달은 인적자원과 기술이전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적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 원칙을 추진하는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으며, 정

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3. 종합평가

IA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와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8년도 중 정부조달분야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각 국가 IAP의 대부분은 예전 IAP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제의 대부분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전된 내용도 별로 없고, 제출한 IAP도 97년도 IAP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실행계획 중 이행된 사항은 대부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뿐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7년도와 동일한 IAP를 제출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조달체제에 더 이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IA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과거 수년을 돌이켜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분야도 있었다. 정부조달에 관련된 법령과 정보의 전달체제가 이러한 분야라고 평가한다. APEC의 거의 모든 회원국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멕시코 등 일부 회원국들은 인터넷 이외의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체제도 강화시켰다. 이러한 정보전달체제의 강화는 모든 APEC 회원국의 정부조달체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큰 공헌을 할 것이다.

한편, 회원국간 WTO GPA(정부조달협정)에 대한 입장차이가 크다. WTO에서는 정부조달에 관해 두 가지 협약이 존재하는 바, 첫째는 복수

협정인 GPA로, 투명성, 입찰과정, 낙찰기준 등 정부조달체제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복수협정이므로 오직 가입한 국가만이 GPA의 규정을 따른다. 현재 APEC 회원국 중 한국, 캐나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와 미국이 GPA에 가입하고 있으며 대만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여타 APEC 회원국이 GPA에 가입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나, 호주와 칠레 등 일부 APEC 회원국은 GPA 가입을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GPA의 가입여부에 관한 연구를 이미 수년간 계속하였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않는 상태이다.

WTO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된 두 번째 협정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다. 이 협정은 정부조달체제의 투명성에 관련되는 내용만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자협정이므로 이가 채택되면 모든 WTO 회원국이 협정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거의 모든 APEC 회원국이 투명성협정의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PEC내에서 정부조달 전문가그룹(GPEG) 위주로 비의무적인 정부조달원칙(Non-binding Principles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모든 회원국이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99년도에 논의결과가 발표되었다. 투명성(transparency), 가치와 경쟁(value for money and open and effective competition), 공정거래와 절차(fair dealing), 책임성과 절차(accountability and due process) 등 4분야에 대한 비의무적 원칙이 발표된 바, 구체적 절차보다는 추상적인 원칙에 중점을 두었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부조달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협상을 계속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APEC 회원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는 왜 일부 회원국이 GP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GPA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협정에 가입하거나 시장개방을 보장하는 다른 제도를 설립하도록 설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WTO /APEC의 정부조달 투명성과 APEC내 비의무적 정

부조달원칙에 대한 연구 및 협상은 GPA 단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은 이 과정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WTO GPA에 대한 견해뿐만이 아니라 회원국간 정부조달제도와 체제, 자국기업과 물품의 혜택 등에 대한 견해 등의 차이가 큰 바, 조기에 정부조달원칙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캐나다 등은 조달청과 같은 독립된 정부부처가 정부조달업무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한편, 미국은 FAR 등 하나의 체계적인 운영체제 아래 각 부처가 자기의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맡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각 부처가 제 나름대로의 절차와 규칙을 유지하며 조달을 수행하는 분권적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필리핀과 미국 등은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한편, 칠레의 경우는 자국 기업에 대한 특혜가 없는 조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국 조달체제 개선의 바람직함에도 각 국가마다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바, 러시아나 중국같은 경우는 자국의 조달체제를 개선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은 개선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정부조달이 전세계 GDP의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은 GPA에 가입하였으므로 한국의 정부조달시장은 이미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APEC 차원에서 한국은 여타 국가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민간기업에게는 개방된 해외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해외시장의 개척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게는 정부조달의 영향, 의미, 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조달의 효율성을 추진해야 한다. 조달청과 KOTRA는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정보를 website에 공개하기 시작한 바, 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X

규제완화

【오사카 행동지침】

APEC 회원국은

- ① 각국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 ② 아·태지역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정당한 목적의 이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인 국내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제거한다.

1. 97년도 IAP 요약

가. 호주

- ▶ 96 97년간 경쟁을 저해하는 32개의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20개를 97.6월에 검토 완료; 97 98년에는 29개 법령을 검토할 예정.
- ▶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의 제안이나 협정의 체결시 정책영향평가서(RIS)를 준비해야 함; RIS를 통하여 정부부처가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규제검토실(ORR)은 공무원의 RIS 작성을 도와주며 RIS요건 충족여부도 검토함.
- ▶ 전문직 규제: 전문직종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가경쟁정책 차원과 호주내 및 호주와 뉴질랜드간 전문자격의 상호인정절차 실행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음; 전문직종의 협회나 연합은 그들의 활동이 반경쟁

적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반경쟁적 조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못하면 관습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함.

- ▶ 정부내 자격 상호인정: 92년부터 호주내의 각종 자격은 한 곳에서 인정받으면 동일한 서비스인 한 다른 지역에서 별도의 인증없이 제공할 수 있음; 96. 6월부터는 TTMRA에 따라 뉴질랜드의 자격도 인정되고 있음; 단 의사자격은 제외되고 있음.
- ▶ 철도분야: 철도분야 규제완화의 두가지 요소는 1) 호주국가철도 및 국가철도의 호주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2) 철도분야의 독점요소인 철길을 운영과 분리시켜 국가적 철도기반시설을 확립하는 것임; 정부는 주간 철길의 관리만 맡고 이외의 운영은 민간부문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낮은 비용과 수요자 수요의 부합, 그리고 장기적인 고용보장을 이룩할 수 있음.
- ▶ 우편서비스: 우편서비스 독점의 유지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보통우편의 독점권 유지 필요성 여부와 폐지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음; 최종보고서가 98. 2월에 제출될 것임.
- ▶ 석유제품: 96. 11월 석유분야의 경쟁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97년부터 석유제품은 가격감시에서 제외되고 업계의 자율규제가 확립되면 수직적 결합제한도 폐지할 예정임.
- ▶ 검역제도: 동식물 검역제도에 관한 보고서(Nairn 보고서)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절차를 개선함; 새로운 절차는 비정기적 수입허가신청의 위험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는 패널의 설치와 상소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역 및 수출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식물보호 책임관 자리가 마련됨.

나. 브루나이

- ▶ 변동사항 없음.

다. 중국

- ▶ 외국인 투자기업도 무역업 가능하며 합작기업으로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2개의 회사가 상해에 설립됨.
- ▶ 96년 말 이래 제조업체의 무역업 등록이 경제특구(센젠, 주하이, 산투, 지아멘, 하이난)에서 공식 허용.
- ▶ 단기 개별계획: WTO에 가입 후 현재 HS 8단위 834개에 달하는 수출입허가 품목 중 100개의 수입품목을 해지.

라. 일본

- ▶ 96년에 소비재, 중간재 및 서비스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하고 결과를 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함; 96. 12월 규제완화 추진에 관한 견해, 96. 12월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 97. 3월 규제완화 실행계획 추가개정 등이 보고·승인되었으며 12개 분야의 2,823개 사항이 지적되었고 이 중 890개가 신규사항임
- ▶ 외국정부를 포함한 국내외로부터의 규제완화 요청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 97. 4월 조달에 관한 종합계획, 97. 5월 경제구조개혁에 관한 실행계획 승인.
- ▶ 단기 개별계획: 실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2,823개의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 98년 이후의 규제완화는 97년까지의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 미일간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 협의 시행.
- ▶ 단중장기 개별계획: 표준 및 인증 등에 관한 고정처리위원회의 제안

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96년 말까지 오사카 실행계획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

- ▶ 교통: 96. 10월 자동차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추진; 97. 2월 검사설비가 없는 정비소의 경우 다른 지정정비소 이용 허용; 97. 3월 자동차 병행수입 허가절차 명시; 97. 3월 정기적 기술검사 등과 같은 철도기술기준의 검토
- ▶ 의약: 의약의 형태에 관계 없이 일부 비타민을 식품으로 분류하여 시판 허용.

<단기 규제완화 계획 1997 ~ 2000년>

- ▶ 주택 및 토지: 자재, 건축방법, 규격 등의 사양을 지정하지 않고 성능에 관한 규제로 전환(97. 3월); 배관공 인증시험 단일화, 지정요건 단일화 등 규정 개정(98. 4월).
- ▶ 교통: 해체보수검사의 필요성 및 제도 재검토(97년 이후).
- ▶ 표준, 인증, 수입절차 및 관련: 의약품 관세 재검토; 일부 의약품의 분류체계 재검토; 의약으로 분류된 일부 자연식품을 식품으로 구분; 동물용 의약품 면허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검토; 농약품 등록의 전산화 검토; 수입보고서 폐지 검토; 의복, 가전제품, 일용품 등에 관한 가정용품 품질표시제도 대상의 재검토, 표시제도의 신축성 확대, 평가제도의 국제기준화 시행, 의복구조 라벨링에 사용하는 단일 영어문자의 사용확대 검토; 수출검사제 및 수출상품 디자인법 폐지 검토.
- ▶ 금융 및 증권: 법전을 전자매체로 비치하는 것을 허용; 외국은행의 엔화표시 채권발행 허용; 금융기관의 지점 개소식 요건 폐지; 외국 환은행제도, 지정증권사제도, 외환교환제도 폐지 검토; 대외결제 및 자본거래시 승인 및 사전신고제 폐지; 중개수수료 자유화(5천만 엔

미만은 98. 4월 자유화), 완전자유화는 99년 말 시행; 지점의 영업지역 제한 개정.

- ▶ 기타: 경마소유자 등록에 관하여 외국거주자도 동일한 규제적용 검토.

마. 멕시코

- ▶ 89년 이래 규제완화가 규제개혁의 중심; 철도, 항만, 위성, 금융, 수도공급, 광업, 어업, 육상운송, 장거리 전화 등에 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짐.
- ▶ 기업활동 관련규제가 가장 합리화되도록 기존규제를 재검토(다른 국가의 기업영향 평가제도와 유사); 시행결과 평균적으로 규제의 88%가 축소됨.
- ▶ 신규규제 도입시 규제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함; 96. 1월부터 97. 10월까지 110개의 신규규제가 검토되었음.
- ▶ 상업 및 소송제도 개혁: 소송제도를 합리화하고 기업의 대출비용을 감축시킴.
- ▶ 기타 개혁: 규제영향평가서(경제개혁위원회에 제출); 행정처리기간 단축(일정기간 내에 처리,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 부족서류를 이유로 거부 불가, 처리기간 1/3내에 부족정보 통보); 절차간소화(우편으로 서류접수 가능); 기술기준 재개정의 신속화; 광업허가 기준의 명확화; 외국인투자시 서류 간소화 등.
- ▶ 연방 기술기준 개혁: 기술기준 개발, 분석, 집행절차 개혁; 규제영향평가서 제출 의무화; 인증 및 검사절차에 민간 참여 허용.
- ▶ 지방정부의 규제개혁: 31개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와 유사한 규제완화를 위한 협력서 체결.

- ▶ 지방정부의 개별 계획: 기업활동 관련규제를 연방정부와 같은 방법으로 완화;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 제거; 규제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세미나 및 훈련과정 개설; 시행되지 않은 각종 규제 발굴; 규제완화 방법 개발 및 98년 상반기 제2차 주지사간 회의 개최.

바. 필리핀

- ▶ 97.1월 EO 392 시행으로 하방 석유사업은 완전히 자유화됨.
- ▶ 97.1월 외국기업의 국내차입 제한이 폐지됨.
- ▶ 96.3월 EO 311로 민간기업의 수도권상하도수사업(MWSS) 참여가 허용됨; 민간 참여는 독점계약, 양허, 위탁관리, 민영화, BOT계약, 조달, 건설, 보수, 재건, 개선, 운영 등에 모두 허용됨.
- ▶ 단기 개별계획: 전기분야 보조금의 점진적 축소 및 발전과 전송분야 요금 분리; MWSS 운영의 민영화 추진.

사. 대만

<현황>

- ▶ 97년 중 상품수입상의 제한 완화, 투자규제 완화, 금융, 통신, 교통 분야의 규제완화, 민영화 조기실시, 석유 및 통신분야 자유화 조기실시 등 많은 개혁조치를 실시함; 현재 WTO 가입협상이 진전 중이어서 자유화 조치 중 확정되지 않은 것이 많은 상황임.
- ▶ 상품교역: 96.10월 97.9월간 186개 품목 수입완화 및 253개 품목 수출자유화 추진; 149개는 수입허가 폐지 또는 축소; 수출공단의 수출의무 폐지; 지도수입시 검사의무를 폐지하나 대만이 포함된 지도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 판매 가능; 96.4월 이래 OTC제품의 수입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97.2월부터 NCE의약품도 등록을 받고

있음.

- ▶ 민영화: 96년까지 충쿠오 보험회사 등 6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됨; 조선회사 및 합금회사도 민영화시켰으며 정유업도 자유화되어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음; 향후 5년간 42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것임.
- ▶ 항공서비스: 헬리콥터, 공항 등 사설공항 서비스를 허용하고 허가절차를 간소화; 미국의 UPS와 Federal Express에게 장개석 공항에 유통센터 설립을 허용; 공항사무실 및 창고면적에 관한 규제폐지; 지상화물취급 서비스, 화물터미널 및 화물주선업에서 외국인 지분제한과 외국인 임원진 비율을 1/3에서 1/2로 상향조정
- ▶ 해운서비스: 96.1월 상업항만법 개정에 따라 대만선사와 컨테이너 회사의 임대 및 항만시설투자에 대한 특권이 폐지되고 외국인도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음.
- ▶ 전기통신서비스: 97년 중 전파법과 2종사업자규제법이 개정되어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진전될 것임.
- ▶ 금융서비스: (증권) 선물거래법이 제정되었고 대만국제거래소(TIME)가 97.12월에 개설될 것임;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대만주식시장 중 개인의 국적요건이 폐지되고 영업지역 제한도 폐지되었음; 31개의 보증사채 발행 및 거래가 개방되었음; 96.11월 외국인의 주식한도가 개인 10%, 합계 25%로 상향조정되었음; 96.12월 투자한도도 4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조정되었고 97.10월에는 투자자금 납입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되었음; (보험) 국제적 성격의 보험요율 및 계약의 사전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은행) 외국환은행의 외화차입한도 폐지, 준비금 제도도 필요하면 폐지; 추가사무소 개설을 위한 2년 대기기간 폐지; 신탁업무 허용: (외환사용) 개인도 외국환은행에 실수요증명이나 관계당국의 허가서를 제출하면 외환선물거래 허용; 관계당국에 등록한 기업이 자유로이 결제할 수

있는 외환규모를 2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조정; 외환과 대만달러의 선물거래제도를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96. 7월부터 선물거래의 기간제한을 폐지.

- ▶ 사업서비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기간 연장; 외국인 취업시 교육 및 경력요건 완화, 절차의 간소화; 계측장비 판매, 인증, 수출시의 면허요건 폐지; WTO에 가입하고 고용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가 보호되고 인증절차가 간소화될 것임.
- ▶ 투자자유화: 외국인 고용제한이 완화되고 계약에 따라 대만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청절차, 검토절차 등이 간소화됨; 1종 통신사업, 부동산사업 부동산개발사업이 금지업종에서 제한업종으로 변경되고 2종 통신사업 정유사업은 네가티브 목록에서 삭제됨; 외국인투자의 선별작업이 간소화되어 네가티브 목록에 없거나 2억 대만달러 미만의 투자이면 선별작업이 간소화되어 1 2일 내에 허가가 주어짐.

<개별계획>

- ▶ 상품교역: 향후 6년간 설탕교역상 제한을 완화; 수입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 검토; WTO에 가입하면 섬유협정을 준수하고 수출통제를 폐지.
- ▶ 민영화: 향후 5년간 42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 민영화 및 자유화 계획에 따라 담배, 포도주, 주정, 맥주 분야에 민간경쟁 도입.
- ▶ 서비스: (항공) 항공화물터미널 공항호텔 주차장 등에 민간 투자 허용: (통신) 위성통신은 99. 12월, 고정네트워크 통신은 2001년에 개방; 1종 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제한 완화 검토: (금융)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개인 및 법인의 외환사용 한도 확대 지속; 보험요율의 자유화 확대, 사전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은행규제제도를 건실하게 하고 은행업의 범위를 확대; 2000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하도록 자유화 추진.

아. 미국

<97년중 실적>

- ▶ 96년 관계법에 따라 관리예산국(OMB)이 97.7월 규제완화에 관한 첫 보고서 제출.
- ▶ 농업중 종합농업법: 정부보조를 받기 위한 강제 휴경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일부 기본농산물에 대하여 고정액을 지불; 땅콩과 담배만이 생산 및 판매 규제를 받으나 땅콩의 가격지지폭이 축소되었으며 두 품목 모두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재정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됨; 국내 설탕판매 상의 제한제도 폐지; 재고예측에 근거한 수입할당 관세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등 설탕가격지지 제도를 조정; 낙농품 가격지지폭을 축소하고 2001년에는 폐지; 장기계약에 의한 휴작으로 환경보호촉진 및 생산성이 높은 토지의 재생산 허용 등의 새로운 정책 시행.
- ▶ 농업중 APHIS 규제완화: WTO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식물 검역국은 수입규제제도를 재검토; 멕시코 미초아칸의 하스 살구, 멕시코 소노라의 돼지고기, 아르헨티나의 소고기 등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 소 및 돼지 또한 그 고기의 수입을 위한 규제제도 및 정책결정 구조를 WTO 원칙에 합치하도록 개정.
- ▶ 전기통신: 96년 개정된 전기통신법 시행 중; 기반시설 공유, 보편적 서비스 제공, 접속료 산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시내 및 장거리전화의 경쟁 촉진;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법무부는 BOC가 제출한 주내 장거리전화 허용 문제와 주요 M&A 문제를 검토 중; 주파수 할당, 주파수 경매제도 및 디지털 TV 규제방안 등을 재검토중.
- ▶ 교통: 50여 개의 행정절차 간소화; EU국가와의 규제 조화 추진; FAA와 해안경비대 간의 안전기준 조화 추진; 회전날개항공기 등과

같은 분야에서 EU와 규제조화 추진.

2.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호주는 경쟁정책과 관련해 경쟁제한적인 입법에 관한 검토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규제에 관한 입법의 원칙은 경쟁제한적인 입법조치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이 비용보다 크며, 입법의 목적이 경쟁제한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호주의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는 규제완화의 추진절차과정으로서 2000년까지 경쟁제한적인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개혁하는 일정을 수립해 놓고 있다. 또한 기존법률 및 규정의 검토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체계적인 검토를 반복할 예정이다. 경쟁제한적인 법률을 새로이 입법하게 될 때는 반드시 상기원칙에 부합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직업과 관련한 규제개혁은 특정 직업인연합회 활동이 반경쟁적인 경우에 이를 수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간에는 의사업을 제외한 기타 직업에 관련한 자격증 상호인정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호주는 경제전반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별로도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가) 기존 IAP 이행사항

경쟁제한적인 법률 및 규정에 대한 검토작업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호주에서는 1996년 6월 당시 진행중인 13개 검토작업 외에도 1998년 6월 30일 47개 검토작업이 새로 시작되었으며, 그 중 33개 작업

이 이미 완료되었다. 1998-99 회계연도중에는 29개 검토작업이 새로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무역실무법을 개정하였다.

나) 1998년도 신규 IAP

호주는 경쟁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규제법에 대한 검토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호주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APEC 회원국간 의견교환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기업부문과의 정기적인 의견교환도 가질 것이다. 따라서 APEC 회원국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규제완화에 대한 원칙개발과 국내 규제완화를 위한 모범사례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호주는 법률 및 규정에 관한 검토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매우 모범적인 규제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검토작업의 결과가 구체적인 규제완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정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경쟁제한적인 신규법률을 입안할 때는 규제영향평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완화조치로서 매우 모범이 될 만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회원국들도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동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브루나이는 5개년 국가개발계획을 추진중이며, 이는 자유화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업적, 상업적 기반확대로 경제 다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루나이는 통신 및 운송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도 역시 민간사업자에게 이양하는

등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 98년도 신규 IAP

1997년도와 1998년도의 브루나이 IAP에는 추가이행 사항이 없다.

2) 평가

브루나이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규제완화 실시를 약속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일 뿐이며,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브루나이의 규제완화 진전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브루나이가 1996년부터 3년에 걸쳐 IAP를 제출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획과 진전상황을 밝히지 않음은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목표로 한 회원국들의 합의 및 권고사항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중국의 경제개혁은 빠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시장메카니즘적인 역할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시장경제하에서의 거시경제의 관리체제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적, 법률적 행정조치를 통한 국가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개혁목표는 안정뿐만 아니라 발전에 있으며,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경제성장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안정 속에서 발전의 속도조정과 사회능력에 따른 개혁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은 최근 공공재정 조세, 은행, 외환, 물가관리, 투자 및 금융조달 등의 체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기업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가) 기존 IAP 이행사항

중국은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개방하였으며, 금융서비스, 소매업, 에너지, 운송 및 관광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제조업체의 무역업에 대한 승인기준을 완화하고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특구에서의 무역업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이래 통신서비스 부문의 민영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82년 이래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으며 그 적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1993년 12월 국가평의회는 『법조계 개혁강화에 대한 법무부 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시장경제와 국제적 거래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운송분야에 있어서도 1995년 『국제화물운송 관리조치』를 공포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조건부 화물운송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정수립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행정관리체제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에 관련한 모든 종류의 법률과 규정을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의 관보에 발표키로 하고 있다.

나) 98년도 신규 IAP

<단기적 실행계획>

중국은 간소화, 단일화, 효율화라는 개혁의 원칙아래 정부부처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기능을 효율성 증진, 협조강화 및 관리체제의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기업관리기능을 분리시켰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개혁도 특정 경제부처의 재편성 및 감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거시경제관리체제에 관련한 부처의 기능은 강화하였으며 법률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국가평의회내에 있는 부처수가 40개에서 29개로 감소되었으며 지방정부의 부처도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통신부문에 있어서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감한 금융부문의 개혁을 단행키로 하였다. 단일하고 투명한 통화시장 구축, 근본적인 은행간 금리결정 자유화,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간 콜머니 업무관리 등 금융시장체제를 구축키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금융입법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은행, 투신, 보험 및 채권 등에 대한 부문을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심각한 금융위기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법률서비스를 개방하고, 외국법률회사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영, 대형 및 중소형 운송인프라 프로젝트를 점진하여 통신부가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축소키로 하였다.

<장기적 실행계획(2011 ~ 2020년)>

중국은 WTO 가입 이후 5년 이내 점진적으로 무역업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무역과 투자에 대한 법률 및 규제들에 대한 검토와 자유화를 추진하고, 무역과 투자발전의 장벽을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개혁을 더욱 심화시켜 시장메커니즘이 더 많은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중국은 1999년내 WTO에 가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가속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1997년에 비해 1998년도 실행계획에는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규제완화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 속

에서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을 배제한 경제적, 법률적 규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뒤늦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규제원칙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WTO 가입을 위해 금융, 통신, 법률 부문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개방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아직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으며 아직도 많은 규제완화조치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규제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규제개혁이 국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주로 한 국가주도적임에 따라 일반 대중(외국인 포함)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일본 규제완화의 목적은 경쟁촉진과 일본경제의 고비용구조 교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혁신을 가져와 신규사업의 창조에 보탬이 되고,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규범에 일본경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가) 기존 IAP 이행사항

일본의 규제완화는 1995년 이후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4월 이래 3개년에 걸쳐 『규제완화 프로그램』(12개 분야, 2,823개 항목)에 착수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내외국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접수하는 연락창구의 지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전의 규제완화는 긴급경제조치(Immediate Economic Measures, 93.9월), 행정개혁 기본원칙(94.2월),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94.7월)에

입각하여 착수되었다. 이외에도 1995년 9월의 경제조치 (37개 항목), 1995년 11월의 오사카 초기조치 (Initial Actions, 50개 항목), 행정개혁 위원회의 규제완화 추진에 관한 견해 (95, 96, 97. 12월) 등의 여러 개혁조치가 있었다.

또한 기준, 인가 등과 관련해 무역·투자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장접근 이슈에 관한 정책활동(95. 12월, 96. 12월, 97. 12월)이 있으며, 매년 국내외의 소비재, 중간재 및 서비스의 가격차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규제완화에 관한 백서가 1995년 이후 매년 발간되어 해외에 배포되고 있다.

나) 98년도 신규 IAP

3개년 규제완화 프로그램이 1998년 3월 국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15개 분야에 624개 항목이며, 이중 327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본부 산하 규제완화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한 프로그램이다. 개정작업은 1998년 말에 끝난다. 개정과정을 투명하게 함은 프로그램 개정의 결과가 대중의 요청과 의견에 반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정부가 관련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단기 실행계획(1998 2000년)>

일본은 3개년 규제완화 프로그램 조치(624개 항목)는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또한 고비용구조 철폐 및 역동성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내외 가격차는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는 정부의 규제완화차원에서 고려하게 될 것이다.

<단·중·장기 개별계획>

무역·투자 고충처리위원회(the Office of Trade and Investment Ombudsman)가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조치를 추진하는 기능을 한다. 동 위원회는 일본의 표준 및 인증체제 등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오사카 실행계획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

- 주택 및 토지: 자재, 건축방법, 규격 등의 사양을 지정하지 않고 성능에 관한 규제로 전환(2000년 6월), 배관공 인증시험 단일화, 지정요건 단일화 등의 규정을 개정(98년 4월)하였다.
- 교통: 98년 3월 국제화물운송과 관련해 40피트와 20피트 컨테이너를 ISO 기준에 통과하기 위해 이를 나르는 트랙터와 트레일러 제작에 대해 규제완화를 승인하였다
- 표준, 인증, 수입절차 및 관련문제: 일부의약품의 분류체계 재검토: 일부약초를 의약품으로 재분류(98년 3월)하였다.
- 금융 및 증권: 법전을 전자매체로 비치하는 것을 허용; 외국은행의 엔화표시 채권발행 허용; 금융기관의 지점개소식 요건 폐지; 외국환은행제도 지정증권사 제도, 외환교환제도 폐지 검토; 대외경제 및 자본거래시 승인 및 사전신고제 폐지; 중개수수료 자유화(5천만 엔 미만은 98년 4월 자유화), 완전자유화는 99년 말 시행; 지점의 영업지역제한 개정; 24개 법안 개정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개혁법 98년 말부터 시행(자산투자수단 확대, 금융파생상품 완전자유화, 증권중개서비스 자유화, 금융시장 원활화, 공정거래 체제구축 등)

2) 평가

일본의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검토작업의 지속적 실시는 매우 모범적이며, 이러한 검토작업의 결과가 구체적인 규제완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본부 산하 규제완화위원회의 모니터링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완화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있어 수요자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도 이에 대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년 규제완화 백서를 출간, 프로그램의 일정과 그 실시 여부와 경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명시하고 있어 타국의 실행계획에 모범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금융위기극복과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1989년 이래 규제개선 및 규제완화는 멕시코 구조개혁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철도, 항만, 인공위성, 금융기관, 수도, 광업, 어업, 도로 및 장거리 통신 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단행되었다. 특히 도로 및 장거리통신 분야의 규제완화로 인해 이들 분야에서 각각 25%와 21%의 가격인하를 이끌어 냈다.

1995년 11월 연방정부는 멕시코내의 기업활동 및 개방의 비용축소를 위해 신구조적 규제개혁 프로그램(Acuuerdo para la Desregulacion de la Actividad Empresarial)을 발족하였다. 규제완화조치는 거의 모든 기업 관련 조치를 점검하고 규제의 이득이 비용보다 커야 하며, 규제의 정당성을 규제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만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시한을 설정하여 인허가 등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어 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완화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책임부처는 “무역 및 산업개발청”(Secretariat of Trade and Industrial Development: SECOFI)이다. 동 부처는 무역부, 재정부, 노동부 등을 비롯하여 재계, 노동계, 학계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규제완화위원회에 의견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기존의 기업법과 규제에 대한 철폐와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12월 기업관리 및 촉진법 (Business formalities)의 전목록이 공표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등재되었다. 또한 연방정부가 신규기업 관리 및 촉진법을 만들고자 할 때는 무역 및 산업 개발청과 경제규제완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는 각 개인들에게 그들에게 부과되는 법적 구속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하고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멕시코의 무역 및 산업개발청과 경제규제완화위원회가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새로 부과되는 규제가 확실히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규제에 따른 이익이 잠재비용보다 더 높은지, 규제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집행자원이 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가) 기존 IAP 이행사항

모든 연방정부 부처가 규제완화의 점검대상이며 산업개발부와 외무부를 비롯하여 환경, 교육, 농업, 에너지, 통신 및 운송, 금융 등의 부처까지 점검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산업개발부, 외무부 등 10개 부처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은 완료되었으며 1998년 현재 통신 및 운송, 금융 등 3개 부처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 중에 있다.

모든 연방부처는 새로운 규제개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평가서와 함께 행정적, 법률적 제안서를 무역 및 산업청과 경제규제완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996년 이래 200여 개의 행정적, 법률적 제안서에 대해 보건, 노동, 환경, 수도, 광업 및 전기 등의 분야에서 검토되고 조정되었다.

나) 98년도 신규 IAP

- 보건: 신약 개발에 대한 절차 간소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임상실험을 거친 경우에 다시 멕시코에서 반복하지 않기로 하였다. 위생규제를 받아야 하는 297개 상업활동 중 92개가 철폐되었으며 더욱이 위생인증제도를 적용하는 106개 항목 중 80개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 노동: 노동검사가 검사관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환경법 개정: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 직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 및 작성절차를 간소화 및 개선하였다
- 조림지와 자연림에 대한 투자자의 법적 확신을 높이기 위해 산림법과 부칙을 개정하였다. 수자원의 이용권과 소유권을 각기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운송, 저장 및 배급을 허용키 위한 관련법 개정과 부칙을 공표하였다

2) 평가

모든 연방부처가 새로운 규제를 개발할 때는 규제영향보고서와 함께 행정적, 법률적 제안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 및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연방정부 부처에서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규제점검 및 평가를 확대하고 있어 타국에 비해 규제완화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필리핀의 규제완화는 민영화와 자유화 이니셔티브가 서로 연결되어 착수되고 있다. 호텔, 은행, 항공, 제철, 광업, 석유정제 등 수많은 국영기업이 성공적으로 민영화 되었으며, 비료공장, 용광로, 발전 및 배전 등 公社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

필리핀은 2차연도 및 3차연도 민영화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 제2차연도 계획은 에너지, 도로건설, 여타 인프라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BOT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3차연도 계획은 보건서비스, 교육 및 연금기금과 같은 사회부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개혁을 진행중에 있다.

가) 기존 IAP 이행사항

필리핀은 1995년 이래 통신, 민간항공, 항만, 석유사업의 Downstream, 금융분야에서 규제완화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필리핀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1994년 5월 RA 7721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은행이 자유롭게 국내에 진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1948년 이래 필리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은행은 단지 4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현재 10개의 신규 외국은행이 필리핀내에 모든 분야의 은행업을 할 수 있는 지점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개수에 관계없이 외국은행이 국내에 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합병자회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숫자제한 없이 외국은행이 60%의 국내은행 지분도 소유할 수 있다.

필리핀은 1994년 10월 이래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00% 개방하고 있다. 또한 지준율 축소, 은행지점의 자본요건 완화, 은행신고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의 본국송금 제한을 상향조정하였다. 필리핀은 1991년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전략적 산업이라는 개념을 폐지하였다. 외국인소

유의 국내기업 최소납입자본금을 5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축소하고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50명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면 최소납입자본금을 10만 달러까지 축소해 주고 있다.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경력요건(3년)을 폐지하였다

1996년 6월에는 국내계약금 지불은 외국화폐로 지불할 수 없다는 RA 529규정도 폐지되었다.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대출 제한은 1997년 1월에 상향조정되었다. 1997년 8월 수도권 상수도 및 하수도 체제의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필리핀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규제체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청회 및 자문회의가 정책형성과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체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에 기고하고 있다.

나) 98년도 신규 IAP

RA 8479 및 석유산업의 하방구조에 대한 규제완화법이 1998년 2월에 승인되어,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원유와 정제석유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3%의 관세부과, 독과점 방지 등 공정경쟁촉진을 위한 조치가 규정되었다. 1998년 3월 EO 471은 석유산업의 하방구조에 대한 완전자유화를 허용키로 하였다. RA 8366(투신사법)은 1997년 10월에 조인되어, 투신사의 외국인 지분참여를 60%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외국인의 지분참여 정도에 따라 임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RA 8556(금융회사법)은 1998년 2월에 조인되어, 금융회사의 외국인 지분참여를 60%까지 허용하였다. EO 529(제3규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항목 승인)이 1998년 8월에 민간국내 건설계약을 네거티브항목에서 제외시켰으며, 이로 인해 100% 외국인지분참여가 가능해졌다.

2) 평가

필리핀의 규제완화는 민영화와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와 같은 구체적인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의 검토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조치가 두르려지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완화절차가 불확실하며 투명성이 부족한 편이다. 단지 규제완화에 대해 신문기고와 같은 단발성 공고에 그치고 있다.

사. 러시아

1) 주요 내용

러시아 연방 반독점정책 및 사업지원부가 직접적으로 경쟁 및 반독점 정책조정과 규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러시아는 1996년 OECD 경쟁 및 입법위원회의 업저버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을 위해 여러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장단기 러시아의 규제완화정책은 경쟁정책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다. 경쟁정책과 반독점정책의 입법적 지위는 러시아 연방헌법, 경쟁 및 반독점방지 연방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단기 실행계획(1998/2002 2000년)>

동 기간의 목표는 경제의 독점수준을 낮추고, 신경제 실체의 방식으로 장벽을 낮춤으로써 경쟁환경을 발전시키며, 소규모 기업을 강화하고, 상품 배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장기 실행계획(2001/2003 2010년)>

러시아 연방시장의 반독점법의 준수를 확실히 하고 있다. 국제적 요구와 규범에 따라 경쟁정책의 활동범위에 대한 법적근거와 실행을 조화시키고 있다.

2) 평가

러시아는 1998년에 새롭게 APEC 회원국이 된 국가로 이전의 실행계획

을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1998년에 제출한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쟁정책을 도입하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국제적인 규범에 조화하는 국내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아. 대만

1) 주요 내용

대만은 1980년대 이래 경제자유화 및 국제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대만의 규제완화는 APEC의 투명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이제까지 취해온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조사 및 검토와 APEC 회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5년 대만은 아.태지역운영센터(Asia-Pacific Regional Operations Center: APROC) 국가재건계획을 제안하여, 무역 및 투자자유화, 진입 및 퇴출장벽 철폐, 자본이동의 제한축소, 첨단정보기술 사회에 부합하는 법적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만은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운송, 통신, 서비스(보험, 법률서비스 등), 투자 등 아직 완전자유화 및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향후 대만은 WTO 가입 후 APROC 국가재건계획의 자유화 진행일정과 속도조정을 통해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 기존 IAP 실행

1997년 10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대만은 138개 수입품목과 253개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행하였으며, 133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제

도를 폐지 및 축소하였다. 1997년 5월 “수출가공지역 설립 및 운영정관을 개정하여 수출공단의 수출의무를 철폐하였다. 1997년 8월 대만은 지도수입허가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대만이 포함된 지도에 한해서 관계당국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1996년 4월 이후 OTC제품의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1997년 2월부터 NCE(new chemical entity) 의약품의 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대만의 민영화는 198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6년까지 6개 국영기업(Chung Kuo Insurance Co., Ltd., Yanfming Marine Co., China Petrochemical Development Corp., China Steel Corp., BES Engineering Corp., 및 the Liquidized Petroleum Supply Administration)이 민영화되었다. 대만은 향후 5년 내에 정부가 운영하는 42개 기업에 대한 민영화 일정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유화계획이 일단계 마무리되었으며 운송, 도매업, 통신, 금융 등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 항공서비스: 1996년 이후 대만은 민항운송기업 관리법, 항공화물 운송업자 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 헬리콥터 공항 등 사설공항 서비스를 허용하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 해운서비스: 96년 1월 상업항만법 개정에 따라 대만해운사와 컨테이너 회사의 임대 및 항만시설투자에 대한 특권이 폐지되고 외국 인도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 전기통신서비스: 대만은 전기통신부문에서 APROC 계획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개방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일정에 따라 전기통신부문의 자유화가 진행될 것이다. 1997년 1월 전파법과 2종사업자 규제법이 개정되었으며 96년 2월에는 전기통신법 등을 개정, 부가네트워크 서비스부문에서 외국기업의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 금융서비스: 97년 6월 선물거래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97년 12월 대만국제거래소(the Taiwan International mercantile Exchange: TIME)가 개설되었다.

- 외환규제 자유화 조치: 개인도 외환은행에 실수요증명이나 관계당국의 허가서를 제출하면 외환선물거래를 허용키로 하였다.
- 산업 및 경영서비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기간연장을 위한 고용서비스법 개정; 외국인 취업시 교육 및 경력요건 완화, 절차의 간소화.
- 투자자유화: 외국인 고용제한이 완화되고 계약에 따라 대만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청절차, 검토절차 등이 간소화되었다

<개별실행계획>

- 상품교역: 향후 WTO에 가입하면 더 추가적인 관세 및 비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나) 98년도 신규 IAP

1998년 4월부터 모든 출판물의 수출입은 대만관세청이 처리키로 하였다. 다만 외국인의 위탁으로 대만기업이 생산한 출판물과 홍콩 및 중국산 출판물에 대해서는 정부정보국(Government Information Office)의 검사와 승인을 요한다. 1998년 7월부터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해 화장품 및 식품의 제조를 허용하였으며, 의약품의 수입허가, 판매허가 등 불필요한 신약품 규제를 완화하고, 1998년 6월부터 외국인 투자업체는 10개 선진국의 모기업이나 계열사와 연계된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제한을 철폐하였다.

- 항공서비스: 1998년 1월 민항법을 개정하여, 지상화물취급서비스 화물터미널 및 화물운송업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제한과 외국인 임원진 비율을 1/3에서 1/2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타이베이 공항터미널의 민영화가 승인되었다.
- 전기통신서비스: 1997년 말 대만은 음성통신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지분한계를 철폐하였으며 위성전송 서비스부문을 개방하였다.
- 금융서비스: 국내주식시장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1998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총발행주식 비율은 처음 10%(개인)와 25%(단체)에서 각 15%와 30%로 확대되었다

- 보험시장 자유화 조치: 1998년 1월 개인사고보험 및 여행자사고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점차적으로 자유화하고 있다. 또한 1998년 6월 비생명보험상품의 검토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은행업 자유화 조치: 1997년 10월 역외은행법을 개정, 역외은행업의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 외환규제 자유화 조치: 1996년 1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국외송금 기간에 대한 모든 제한을 상향조정하였다
- 투자자유화: 1998년 5월 발전, 송전, 배전을 포함한 전기공급산업이 투자 네거티브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지분소유가 50%까지 가능한 제한업종으로 변경되었다

<개별실행계획>

- 상품교역: 규제완화 2단계로 제1단계는 99년 1월 민간기업에 석유, 비행기용 연료 및 LPG 등의 수입을 자유화할 것이다.
- WTO에 가입하게 되면 섬유제품에 대해 ATC 협정일환으로 규제완화 하고 있다.
- 의료기구에 대한 국내검사요건을 폐지하고, 외국 시험방법을 인정키로 하였다. 또한 조화 국제협회의 확인을 받기 위한 신약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2) 평가

대만은 WTO의 가입을 목표로 규제완화의 일정을 맞추고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겨냥해 최근 규제완화조치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상태이다. 실제 규제의 일정을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구에 부합하기보다는 국가 전략적인 자유화 일정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과 특수한 정치상황 때문에 일부 산업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규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는 국가재건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 미국

1) 주요 내용

미국의 규제완화에 대한 IAP는 전자상거래, 전기통신, 농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 기존 IAP 이행사항

통신서비스, 농업, 식품 및 의약품, 전기통신, 교통 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왔다. 농업분야는 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한 강제휴경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농축산물(땅콩, 담배, 낙농품 등)의 가격지지폭을 축소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축소하였다. 또한 재고예측의 근거상 수입할당 관세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등 설탕가격지지제도를 조정하였으며, 한편 환경보호촉진을 위한 휴경조치와 생산성 높은 토지의 재생산 허용 등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였다.

- 농업 중 APHIS 규제완화: WTO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동식물 검역국은 수입규제제도를 재검토하고, 멕시코 미초아칸의 하스 살구, 멕시코 소노라의 돼지고기, 아르헨티나의 소고기 등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였다. 소 및 돼지의 수입을 위한 규제제도 및 정책결정구조를 WTO 원칙에 합치하도록 개정토록 하고 있다.
- 전기통신: 96년 개정된 전기통신법 시행중; 기반시설 공유, 보편적 서비스 제공, 접속료 산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시내 및 장거리 전화의 경쟁촉진,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법무부는 BOC가 제출한 주재 장거리전화 허용문제와 주요 M&A 문제를 검토 중; 주파수

- 할당, 주파수경매제도 및 디지털 TV 규제방안 등을 재검토 중에 있다.
- 교통: 50여 개의 행정절차 간소화; EU국가 등 타국규제와의 조화 추진; FAA와 해안경비대 간의 안전기준 조화 추진; 회전날개항공기 등과 같은 분야에 EU와 규제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 정부조달: 1994년 연방정부 인수 및 합리화법은 정부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조달의 간소화, 전자상거래를 통한 컴퓨터네트워크 개발촉진, 정부계약의 상환 및 금융조달에 보다 융통성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증권거래: 1990년에 도입된 144A법은 발행인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없이도 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으로 90년부터 93년간 300개 외국발행인은 250만 달러의 증권을 판매하였다. 1994년 4월 동법의 개정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 발행인들이 간이발기서와 등록절차를 이용하도록 되었다. 이로써 94년 말까지 100여 개의 외국인발행인이 미국자본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나) 98년도 신규 IAP

- 전자상거래: 미국은 전자상거래를 국경간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자발적 신기술로 간주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과세이슈가 지속적으로 의회와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더욱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등 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도 논의되고 있다.
- 통신: FCC는 최근 인프라 공유, 전세계 서비스, 요금부과 개혁 등을 통해 시내 및 장거리 전화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1998년 외국인 운송통신진입 규정 (Foreign Carrier Entry Order)을 제정, 미국 통신산업에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였다. FCC는 WTO 회원국내

통신사의 진입을 가능케 하고, 무선통신사 인가에 대해 외국인 간접소유를 25%까지 포함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1997년 11월에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해 자유화를 단행하였다.

1997년 9월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미국의 규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규제에 대한 비용과 이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미국내 규제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와 재평가를 하였으며, 각 규제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량적, 비계량적 평가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는 연방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나 개혁에 대한 권고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식·의약품관리국(FDA)은 의약품승인기한 축소와 사전통관절차의 합리화 등을 포함한 36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2) 평가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는 규제완화에 주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특히 계량적, 비계량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각 규제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타국의 규제가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모범 및 척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차. 베트남

1) 주요 내용

다이모이로 일컬어지는 광범위 경제개혁정책은 1986년 도입되었으며 경제구조개혁, 외국인투자 유치,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관리를 위한 법률체계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완화가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경영,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기업규제: 베트남정부는 공기업법, 사기업법, 기업법 등을 통해서 국가경제개발과정에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생산과 사업 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과 규제를 제정하였다.
- 상품교역: No. 89 /CP 수출입 선하인가요건 제거법령이 발효되어 기업들은 단순히 관세통제만으로 수입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수량제한이 있으나, 그 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1998년 7월 외국인상인과의 수출입 및 가공제품에 대한 상법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규정된 No. 57/1998 /ND-CP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베트남기업의 수출입 권한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베트남정부는 HS 1996에 따라 관세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며, 관세율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조세 정책에 대한 질문을 응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국가계획 위원회와 협력 및 투자위원회를 합병,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평가 및 인가에 대한 “one-door”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를 창설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승인 촉진을 위해 지방위원회를 위한 총리령, Decision No. 386 /TTg (97.6월), Decision No. 41 /1998 /QD-TTg (98.2월)으로 공포하였다.
- 국영기업의 주식화 계획이 진행중이다. 1998년 4월까지 21개 국영기업이 주식화되었다.

<단기 실행계획(1999 - 2000년)>

국영기업의 주식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베트남 산업성장과 사회경제개발 과정에 따라 시장접근기회를 강화하고 있다. 교역 및 투자관리와 관련

된 정책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자와 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다.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축소, 거래 및 통관시 절차 및 문서를 간소화하고 있다.

<중기 실행계획(2001 2010년)>

WTO의 가입을 위해 WTO 규정에 맞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공기업 주식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베트남의 표준 및 적합시스템의 규정과 조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역 및 투자정책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기 실행계획(2011 2020년)>

2020년 APE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베트남 경제의 메커니즘 및 정책을 적응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석유 및 비료 수입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다.

2) 평가

베트남은 1998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 회원국이 되어 처음으로 제출한 IAP이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직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완화절차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종합평가

호주, 멕시코, 일본 등의 규제완화내용은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멕시코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검토작업과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

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모니터링결과와 일반 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한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APEC 회원국간의 의견교환 혹은 기업부문간의 정기적 의견교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WTO의 조기가입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하고 있으며, WTO 가입 후 추가적인 규제완화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더욱이 98년 중국의 IAP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규제완화의 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반면 러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규범과 조화하는 국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대치 등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일본, 호주 등은 규제영향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적 혹은 법률적으로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아직도 규제완화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회원국들은 규제완화의 OAA 목적을 무역과 투자의 왜곡제거에 있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내의 이익 때문에 규제완화의 초점이 이에 다소 벗어난 경향이 많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거나 기업활동에 대한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필리핀 등 일부 회원국들은 규제완화에 있어서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XI 원산지규정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 ① 국제적으로 조화된 원산지규정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함.
- ② 각국의 원산지규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인 방식으로 준비되고, 적용됨을 보장함.

지 침

- ① 각국의 원산지규정을 WTO/WCO 협상의 결과로 채택되는 국제적으로 조화된 원산지규정에 조화시킴.
- ② 예측 가능하고도 일관된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확보함.

1. 97년도 IAP 요약

가. 호주

1) 현황

- ▶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특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반덤핑, 상계관세, 통계 그리고 라벨링조치에 적용되며 판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데 공장도 가격기준 75%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 ▶ 특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ANZCERTA, CANATA (Canada/Australia Trade and Commercial Relations Agreement), PNG/Australia Trade and Commercial Relations

Agreement(PATCRA), Developing Country Preferential Rates, SPARTECA.

- ▶ 일반적으로 공장도가격 기준 50%의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CANATA 예외).

2) IAP의 주요 내용

- ▶ MAPA: WCO 기술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세번변경기준(CTH)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보조기준을 사용하여 작업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통관절차와 관련한 Protocol for the APEC business community의 작성을 추진할 것임.

나. 브루나이

- ▶ 변동사항 없음.

다. 중국

1) 현황

- ▶ 중국은 비특혜 원산지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WTO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음. 수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의 발행을 위하여 적용됨.
- ▶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음.
 - Provisional Regulation of the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Origin of Import Goods;
 - Rules of Origin for Export Good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f Origin for

Export Good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List of 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 required to be carried out on non-origination materials in order to obtain the origination statu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원산지 판정기준

- 실질적 변형이 판정기준의 기초이며 부가가치 기준을 보조로 사용함.
- 실질적 변형은 첫째, 4단위의 세번변경, 둘째 30%의 부가가치(수출 품은 25%), 셋째, 특정공정 기준이 적용됨.

2) IAP의 주요 내용

- ▶ WTO 통일원산지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함.
- ▶ 중국의 수출입 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WTO 규정과 합치시킴.

라. 일본

1) 현황

- ▶ WTO 협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WTO의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면제받는 품목을 확대함.
- ▶ 특혜원산지규정은 GSP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2) IAP의 주요 내용

- ▶ WTO 협정의 이행을 충실히 하며, WTO의 작업에 적극 참여함.
- ▶ 원산지규정의 무역과 투자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마. 멕시코

- ▶ 변동사항 없음.

바. 필리핀

1) 현황

- ▶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운용하고 있지 않음.
- ▶ ASEAN CEPT의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규정의 적용.
 - CEPT상의 판정기준은 역내부가가치 40%임.

2) IAP의 주요 내용

- ▶ WTO의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함.
- ▶ WTO의 작업결과를 채택한 이후 주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
- ▶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무역 및 투자효과를 연구함.

사. 대만

1) 현황

- ▶ WTO 협정에 입각하여 1995년 1월 원산지규정 관련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
 - Rules Governing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of Origin in the Taiwan Area.
 - Compendium of Rules of Origin Currently compiled by the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
- ▶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최종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은 6단위 기준 세번변경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며, 특정 공정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보조로 함.
- 부가가치의 산정: $(\text{FOB 가격} - \text{수입부품 및 재료의 CIF가격}) / \text{FOB 가격}$.

2) IAP의 주요 내용

- ▶ WTO 작업에 적극 참여함.
- ▶ 국내규정을 WTO 규정과 일치시키며, WTO 작업결과와 일치시킴.
- ▶ 원산지규정 관련 세관원의 교육.
- ▶ 민간부문에 대한 홍보
- ▶ 주기적으로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실행을 검토하고 국내규정의 국제 규범 일치 여부를 검토함.
- ▶ 원산지규정의 무역 및 투자흐름에 대한 영향 평가.

아. 미국

1) 현황

- ▶ 1995년 WTO협정을 완전히 수용하였음

2) IAP의 주요 내용

- ▶ WTO의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규정에 반영할 것임.

2.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가) 현황

호주는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판정기준으로써 최종적 실질적 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요건으로써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특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반덤핑, 상계관세, 통세 그리고 라벨링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특혜 규정적인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호주내에서 상업적으로 제조되고 있는 물품의 경우 공장도 가격기준 75%를 요건으로 한다. 호주내에서 상업적으로 제조되고 있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기준 25%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특혜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ANZCERTA, CANATA(Canada/Australia Trade and Commercial Relations Agreement), PNG/Australia Trade and Commercial Relations Agreement (PATCRA), Developing Country Preferential Rates, SPARTECA.

나) 기존 IAP의 이행상황 및 98 IAP 주요 내용

기존 IAP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규정이 간편하고 자유로운 성격을 갖추는 한편,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고,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WTO 규정이 채택될 경우 이와 일치시켜 나갈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IAP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은 없다.

2) 평가

호주는 교역에 차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산지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IAP에 의하면 특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의 판정을 비특혜 규정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적절히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판정요건이 국내생산현황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원산지규정이 국내부품사용의무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가) 현황

브루나이는 ASEAN국가간의 특혜무역협정상의 원산지규정 이외에는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브루나이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거나 40%의 역내부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AP는 별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다만 ASEAN 특혜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역내 원산지부여가 아닌 브루나이 원산지 부여 기준으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가) 현황

중국은 비특혜 원산지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적용범위는 WTO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으며 수출품에 대

해서는 원산지증명의 발행을 위하여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 중국의 원산지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Provisional Regulation of the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Origin of Import Goods;
- Rules of Origin for Export Good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f Origin for Export Good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국 원산지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공정(List of 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

중국은 원산지 판정기준으로서 실질적 변형이 판정기준의 기초이며 부가가치 기준을 보조로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실질적 변형은 첫째, 4단위의 세번변경, 둘째 30%의 부가가치(수출품은 25%), 셋째, 특정공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나) 기존 IAP 및 이행상황

기존 IAP의 주요 내용은 첫째, WTO 통일원산지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며 둘째, 중국의 수출입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WTO 규정과 합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IAP의 주요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WCO 기술위원회의 통일원산지규정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이를 국내 산업계로 전달 및 정책에 반영해 왔다. 둘째, 중국의 수출관련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셋째, 수출 관련 원산지증명이 발급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현대화한다.

한편 '98 IA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 증명의 발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들간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발을 위

하여 상호 협조한다. 둘째, WTO/WCO 원산지규정 관련작업에 적극 참여한다. 셋째, 중국의 수출입 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WTO 규정과 합치시켜 나간다.

2) 평가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WTO 규정과 합치시켰다고 하나 여전히 투자업체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 규정을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위한 작업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가) 현황

일본은 GSP를 제외하고는 비특혜 원산지규정만을 적용하는데 원산지 판정을 위한 실질적 변형의 기준으로써 CTH(4단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원산지규정이 WTO 협정을 반영하며 WTO의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면제받는 품목을 확대해 왔다.

나) IAP의 이행상황 및 98 IAP 평가

기존의 IAP와 이행상황은 WTO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작업에 적극 참여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원산지규정의 무역과 원산지규정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98 IAP' 역시 이전과 동일하다.

2) 평가

일본은 주요 수출국의 입장에서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비교적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가) 현황

멕시코는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특혜규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특혜 원산지규정상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대체로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하며 WTO협정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나) 기존 IAP 이행상황 및 '98 IAP

멕시코의 '98 IAP는 기존의 것과 변동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WTO / WCO의 통일원산지규정작업에 적극 참여한다. 둘째, 통일원산지규정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극 채택 및 운영한다. 셋째, 현행 운영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의 개정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2) 평가

멕시코의 IAP상에서 구체적인 이행이 필요한 내용은 현행 원산지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가 요구되는 근거를 소개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멕시코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IAP에는 검토의 여부 및 이행조치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가) 현황

필리핀은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ASEAN 특혜관세 조치(CEPT)의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CEPT상의 판정기준은 역내부가가치 40%이다.

나) 기존 IAP 이행사항 및 '98 IAP

필리핀의 IAP는 WTO의 통일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98 IAP에도 변동이 없다.

2) 평가

필리핀은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수량규제, 반덤핑 등 비특혜 무역조치의 시행에 원산지를 판별하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원산지규정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사. 러시아

1) 주요 내용

가) 현황

러시아의 원산지규정은 Law on the Customs Tariff 와 GSP 관련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원산지 판정기준의 원칙은 실질적 공정의 발생여부이다. 러시아 연방간의 관세특혜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분류 체계상 4단위상의 변화를 실질적 공정으로 인정

하며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경우 50%의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한다.

나) 98 IAP

IA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특혜관세제도 체제하에서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수입관세를 추가적으로 차별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특혜 대상국가의 특정 품목군과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감안하기 위하여 특혜제도의 적용을 개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2) 평가

러시아는 특혜원산지규정의 차별성을 보다 세분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APEC 회원국과의 교역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아. 대만

1) 주요 내용

가) 현황

대만은 WTO 협정에 입각하여 1995년 1월 원산지규정 관련 각종 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다.

- Rules Governing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of Origin in the Taiwan Area.
- Compendium of Rules of Origin Currently compiled by the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최종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된다. 실질적 변형은 6단위 기준 세번변경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며, 특정 공

정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보조로 한다. 부가가치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FOB 가격} - \text{수입부품 및 재료의 CIF가격}) / \text{FOB 가격}$

나) IAP 이행상황 및 '98 IAP

대만의 기존 IAP 및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98 IAP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첫째, WTO 작업에 적극 참여한다. 둘째, 국내규정을 WTO 규정과 일치시키며, WTO 작업결과와 일치시킨다. 셋째, 원산지규정의 집행을 위한 세관원의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민간부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다섯째, 주기적으로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실행을 검토하고, 국내규정의 국제규범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여섯째, 원산지규정의 무역 및 원산지규정흐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2) 평가

대만의 경우, 원산지규정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비교적 소상한 정보와 부가가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원산지증명의 발급과 관련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국내 원산지의 부여를 위하여 특정한 판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추측된다. 원산지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희귀한 사례라는 점에서 이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번변경기준과 특정 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미국

1) 주요내용 및 평가

미국의 경우, WTO의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규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APEC 회원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의 운영이 역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원산지규정의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의 운영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가 요구된다.

차. 베트남

1) 주요 내용 및 평가

베트남은 ASEAN의 CEPT를 제외하고 여타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현재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반영을 위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종합평가

원산지규정분야는 대부분 WTO/WCO 작업의 진행상황에 IAP를 연계하고 있다. 즉,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 규범을 이에 합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의 IAP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IAP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PEC의 원산지규정 IAP는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상의 원칙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이 비교평가 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XII 분쟁조정서비스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 회원국들은

- ① WTO 협정 및 여타 국제협정하에서의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WTO 분쟁해결절차와의 중복 또는 그의 왜곡없이, 대립의 발생 및 심화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의 견해차이(differences)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 분쟁해결에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
- ②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민간기업(private entities)과 정부간의 분쟁 그리고 민간기업간의 분쟁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장려한다.
- ③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 및 투자사안과 관련된 분쟁을 감소시키고 회피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법령, 규정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증대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지 침

각각의 APEC 회원국들은

- ① 중재협정에 대한 상호간의 효과적인 이행 및 중재판정(arbitral awards)의 인정과 이행을 규정한다.
- ②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 규정 및 행정지침과 정책들을 신속 명료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③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행정조치의 신속한 검토 및 시정이 가능하도록

록 적절하고도 독립적인 재심(review) 또는 이의제기(appeal) 절차를 개발 유지함으로써 자국내 투명성을 증진시킨다

1. 97년 IAP 요약

- ▶ 브루나이, 칠레, 한국, 필리핀, 태국, 미국 등 6개국은 1997년도 IAP 내용이 1996년도 내용에서 변경된 것이 없으며, 파푸아 뉴기니아는 1997년 IAP를 제출하지 않았음. 그 외 국가들의 97년도 IAP은 다음과 같음.

가. 호주

1) 현황

- ▶ 변경 내용 없음.⁸⁾

2) 실행계획

- ▶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존의 국제분쟁해결 수단의 적용을 고려하고, 기존의 관련규정이 전자상거래에의 적용에 부적절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고려한 최신 조약 및 수단에 관해 APEC 및 관련 국제포럼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

나. 브루나이

- ▶ 변동사항 없음.

8) 본 논문에서의 '변경내용'이란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과 비교할 때 변경된 내용을 의미함.

다. 중국

1) 현황

▶ 민간관련 분쟁

- 11개 APEC 회원국을 포함한 80여 개 국가의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
- 민사 또는 상사 관련법률 및 법률외적 문서의 해외서비스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에 가입.
- 민사 또는 상사 관련 해외 증거입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비준.
- 분쟁해결을 위한 각종 법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국제경제 및 무역 중재위원회(China Committee for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운영.

▶ 투명성

- 정부 언론 및 학술기관 등이 법률 관련 관보 및 간행물 발간.
- 워싱턴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규정 초안 작업 시작.
- 중재훈련센터 운영.
- 분쟁해결 관련 APEC 지침에 대한 1차 초안 마련 및 검토작업 진행중.

2) 실행계획

▶ 투명성

- 중재훈련센터를 통한 인적자원의 질적 강화.
- 관련 법규정의 마련.

라. 일본

1) 현황

▶ 정부간 분쟁

- 인도네시아와의 자동차 분쟁, 미국과의 정부조달 관련분쟁 등 무역 분쟁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

2) 실행계획

▶ 변경내용 없음.

마. 멕시코

1) 현황

▶ 정부간 분쟁

- APEC 분쟁조정 전문가그룹에 적극 참여 및 공헌.

▶ 민간관련 분쟁

- 스위스, 스페인 및 아르헨티나와의 양자간 투자협정체결 및 독일과의 협상 종결.
- 민간-정부간 분쟁해결제도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
-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우루과이, 네덜란드, 영국 등과 양자간 투자협정 관련 협상 진행.

2) 실행계획

▶ 투명성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개혁 추진.
- 무역과 투자관련 법령, 정책 및 일반정보에 대한 민간기업의 접근용

이도 제고

바. 필리핀

▶ 변동사항 없음.

사. 대만

1) 현황

▶ 정부간 분쟁

- WTO 가입 후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 예정.
- APEC 분쟁조정서비스 논의에 능동적 참여.

▶ 민간관련 분쟁

- 상사중재법령 및 도시분쟁조정 관리법에 규정된 중재 및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 대만 중재법의 국제화 및 자유화의 강화를 위하여 뉴욕협약 3조 및 5조 2항 2호에 근거하여 개정된 상사중재법령 초안 마련.

▶ 투명성

- 분쟁조정서비스에 관한 지침서 발간을 촉진하기 위하여 APEC 분쟁조정전문가그룹에 대만의 중재 및 조정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정보제공.

2) 실행계획

▶ 투명성

- 중·장·단기(1998 2010년)에 걸쳐 모든 관계법 발간.

아. 미국

▶ 변동사항 없음.

2.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가) 현황

(1) 정부간 분쟁

호주는 정부간의 분쟁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체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WTO 분쟁해결제도를 비공식적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국가간의 무역관련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APEC 지역에 있어서의 정부간 분쟁에 대해 CTI/TPD의 활용을 포함한 APEC내의 대화 활성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투자촉진 및 보장협정(IPPA)하의 분쟁해결수단 중에 ICSID의 포함을 선호하고 있다.

(2) 민간기업간 및 민간기업과 정부간 분쟁

민간기업간 및 민간기업과 정부간의 분쟁에 있어서 호주는 현재 1974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74)에 뉴욕협약, ICSID, UNCITRAL 표준법(Model Law) 등 국제상사분쟁해결제도를 수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상사분쟁해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영연방 중

재지원서비스(Commonwealth Arbitration Assistance Service: CAAS)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현재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사분쟁해결센터로는 먼저 주로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호주 국제상사분쟁센터(Australian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CICA)가 있으며, 중재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분쟁수단을 제공하는 호주 상사분쟁센터(Australian Commercial Disputes Centre: ACDC)가 있다. 그밖에도 호주 중재·조정기구, 국가분쟁센터, 분쟁관리센터, ADR관련 변호인단, 국제상공회의소 등 대체적으로 분쟁해결서비스(ADR)를 제공하는 다수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3) 투명성

호주는 인터넷을 통해 무역·투자관련 법·규정, 행정지침 및 정책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바, 호주 법무장관의 법률 윈도우(Attorney-General's Window on the Law)를 비롯하여 호주 법률정보기관(Austral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의 인터넷 정보자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호주 법무성은 호주기업인 및 법조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상사분쟁해결참고서(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Handbook)를 발간한 바 있다.

(4) 약속 현황

호주는 DMEG 등을 포함한 APEC 차원의 분쟁조정관련 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APEC 회원국들의 협력적인 분쟁해결 및 중재나 여타 공식적 분쟁해결결과의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다자 및 양자협정상의 규정에 우호적 분쟁해결을 장려하고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APEC 회원국의 무역·투자에 대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UN 및 여타 다자기구 다자협정의 수용 및 이행을 장려하고, 외국중재자와 법률 및 기타 자문인들의 분쟁해결절차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현재 호

주는 현존하는 국제분쟁해결수단의 전자상거래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APEC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새로운 기술을 고려하기 위한 조약 및 협정의 갱신에 대한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2) 평가

가) 정부간 분쟁

호주는 정부간 분쟁에 대한 WTO 및 APEC에서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원칙적인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금번 IAP에서도 호주는 정부간 분쟁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체제에 대한 호주의 입장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호주의 WTO 활용현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APEC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CTI/TPD의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양자간 투자촉진 및 보장협정의 체결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분쟁해결규정 및 수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나) 민간기업간 및 민간기업과 정부간 분쟁

민간기업간 및 민간기업과 정부간의 분쟁에 대해 호주는 자국내에 있는 ADR과 관련한 다수의 기관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그들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다) 투명성

호주는 투명성과 관련하여 무역·투자관련 모든 법·규정과 행정지침 및 정책들이 인터넷에 등재되고 있는지가 확실치 않은 바, 인터넷 이외에 호주의 법·규정, 행정지침, 정책 등을 소개하는 책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라) 약속현황

약속현황부문에 있어서는 모든 약속이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향후 호주가 나아갈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약속 및 약속이행시한까지 적시하는 것이 IAP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가) 현황

브루나이는 정부간 분쟁해결을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브루나이는 상사간 분쟁해결을 위한 뉴욕협약을 1994 긴급명령(Emerge Order 1994)을 통해 브루나이법(The Laws of Brunei)에 채택하고 있다. 현재 브루나이법은 법무성(Ministry of Law)의 법률도서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1984년 이후에 통과된 모든 법률 및 법령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정보국(Information Department)과 총리실에서 구매 가능하다.

브루나이정부는 현재 브루나이 법 관련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중으로, 동 작업이 범부처적으로 완료될 경우 가장 최신 법률 및 법령이 온라인을 통해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존 IAP 이행 및 98년도 추가사항

브루나이는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교역상대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BIT)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규정 및 UNCITRAL 등 중재관련 국제법, 규정 및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분쟁해결관련 기존제도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작

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브루나이는 1994 긴급명령에 의한 중재절차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구매를 통한 브루나이법에의 용이한 접근을 촉진하고 있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정부 법 및 법령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2) 평가

브루나이는 금번 IAP에서 WTO 분쟁해결규정의 채택과 양자투자협정의 추진외에 정부간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을 담고 있지 않으며, APEC의 CTI / TPD의 활용현황에 대한 언급도 부재한 상태다. 아직까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ICSID 가입추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브루나이 법 관련 자료의 전산화 진척정도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동 작업이 언제쯤 완료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브루나이는 기존 IAP의 이행정도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금번 IAP에서도 매우 추상적인 약속만이 기술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약속 및 약속이행시한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가) 현황

중국은 분쟁조정(mediation)이 민간기업간, 민간기업과 정부간, 정부간 분쟁의 주요 해결 수단이 되고 있는 바, 중국은 WIPO, ICSID, 뉴욕협약 등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11개 APEC 회원국을 포함하여 90개국 이상의 국가와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 4개 APEC 회원국과도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경제계약법(the Law on Economic Contracts), 외국관련 경제계약법(Foreignrelated Economic Contracts), 민간절차법(Law on Civil Procedure), 행정절차규정 및 행정검토규정(Administrative Procedur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for Administrative Review) 등에서 분쟁해결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외합작투자법(the Law on Sino-Foreign Equity Joint Ventures) 및 대외계약공동투자법(the Law on Sino-Foreign Contactual Joint Venture)과 관련된 이행규정 등에도 분쟁해결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997년 국가상공행정구청(the State Industry and Commerce Administration)은 ‘계약분쟁의 행정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공표한 바 있으며, 현재 중국의 중재법은 외국관련 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Committee for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및 해상중재위원회(Maritime Arbitration Committee) 등의 중재기구가 있다. 특히, 중국은 법의 투명성 제고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바, 모든 정부부처, 언론계 및 학계는 관련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나) 기존 IAP 이행사항

중국의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국가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10여개국 증가하였으며 워싱턴 협약 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은 1998년 5월 이후 외국투자기업간의 분쟁은 직접적으로 중국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평가

중국은 다수의 국제기구 회원국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의 활용현황에 대한 설명은 전무한 상태이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가) 현황

일본은 정부간 분쟁해결을 위해 WTO와 CTI/TPD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 정부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는 1982년에 Office of Trade and Investment Ombudsman(OTO)을 운영하고 있으며, 1967년에 ICSID에도 가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일본은 민간절차규범(Code of Civil Procedure)에 일반중재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은 제네바의정서, 제네바협약, 뉴욕협약 등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13개국과 중재판정이행을 위한 양자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민간기업간의 분쟁해결은 일본상사중재협회(JCAA)가 담당하며, 동 협회는 자체의 상사중재규정이나 UNCITRAL 중재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부법령 및 행정지침의 투명성 관련 요청사항 및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OTO나 여타 관련기구에서 처리하고 있다.

나) 기존 IAP 이행 및 98년도 IAP 추가사항

일본의 경우 기존 IAP 이외의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

2) 평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은 정부간, 민간기업과 정부간, 민간기업간의 분쟁해결 수단 및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전년도 IAP에서 변화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가) 현황

멕시코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자체적 분쟁해결규정을 보유한 NAFTA 및 여타 FTA 등 특혜무역협정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APEC의 분쟁조정 전문가그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APEC 지역내의 분쟁조정수단의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멕시코는 민간기업과 정부간 분쟁해결에 있어서 모든 개인은 재산 및 기타 권리의 침해가 있을 경우 국내법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FTA 및 양자간 투자협정상의 투자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는 민간기업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UNCITRAL 표준법에 기초한 거래협약(Commerce Code)이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멕시코가 가입하고 있는 뉴욕협약, 파나마협약, 몬테비데오협약, NAFTA 및 여타 FTA 상의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ADR)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법규정, 절차 및 행정적 규정은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보에 공표되고 있다.

나) 기존 IAP 이행 및 98년도 IAP 추가사항

멕시코는 현재 이스라엘과도 분쟁해결규정을 포함한 특혜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캐나다와 함께 APEC 회원국들을 위한 WTO분쟁해결제도관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멕시코는 이미 법령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인들 및 투자자들의 행정절차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무역·투자관련 법령, 정책 및 각종정보를 발간물 및 인터

넷을 통해 민간기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멕시코는 APEC지역보다는 주로 남미 국가들과의 FTA추진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번 IAP에서 멕시코는 IAP상의 진척사항이나 향후 계획 등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 등은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ICSID 가입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가) 현황

필리핀정부는 정부간 분쟁해결을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가장 주 되고 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은 ICSID 및 뉴욕협 약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기업간 분쟁해결을 위해 필리핀은 민간분쟁의 중재를 위한 중재자 및 절차선정에 관한 RA876과 건설부문의 중재제도를 규정한 EO1008 등의 법령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의 무역·투자관련 모든 법령은 관보에 게재되고 있으며, 그의 효력발생 이전에 신문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표하고 있다.

나) 기존 IAP 이행 및 98년도 IAP 추가사항

필리핀은 금번 IAP에서 기존 IAP 이행이나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2) 평가

금번 IAP에서 필리핀은 모든 부문의 설명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활용현황은 물론이고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특혜무역협정 등에 대한 설명은 전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IAP상의 향후 계획도 매우 추상적이며, 전년도와 예시와 동일하여 변화내용 및 진전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사. 러시아

1) 주요 내용

가) 현황

러시아는 지적재산권관련 분쟁해결규정을 보유한 WIPO 회원국으로, ICSID,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럽협약 등 분쟁해결과 관련한 다수의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APEC 회원국을 포함한 3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분쟁해결규정을 보유한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법에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을 비롯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러시아연방의 국제협정기준에 입각한 각종 러시아 법률 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UNCITRAL 체계상의 규정들을 채택하고 있다.

나) 기존 IAP 이행사항 및 98년도 추가사항

러시아는 APEC 신규가입국으로서 금번에 IAP를 처음으로 제출하였는 바, 기존 IAP의 이행사항 및 추가사항 논의가 불가능하다.

2) 평가

전체적으로 러시아는 현황설명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많다. 특히, ICSID,

뉴욕협약, 유럽협약 등을 준수한다고 하였으나, 그 회원국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UNCITRAL 표준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아. 대만

1) 주요 내용

가) 현황

대만은 6개 APEC 회원국들(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과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는 바, 그에 따라 투자관련 이슈에 있어서 정부간 분쟁은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정부간 분쟁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민간기업 분쟁은 중재법(Arbitration Act) 및 지역분쟁에 관한 법(Law Governing Disputes Mediation in Cities and Towns)에 따라 중재 및 조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

대만은 비록 뉴욕협약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재법 제31조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제중재판정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법무성은 관련 국제관행, UNCITRAL 표준법 및 뉴욕협약 등을 고려하여 '상사중재법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동 개정안은 뉴욕협약의 제3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기초하고 있다. 대만은 무역·투자관련 행정조치에 대한 재심 및 상소를 위해 적절하고 독립적인 절차 및 행정법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의 모든 법령은 관보를 통해 공표되고 있다.

나) 기존 IAP 이행 및 98년 추가사항

대만의 개정된 상사중재법(중재법)은 1998년 6월 24일 공표되어 1998년 12월 24일 부로 발효되었다. 동 중재법은 민간기업간 분쟁에만 적용

되었던 과거의 상사중재법에 비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대만정부는 대외비가 아닌 모든 대만의 분쟁조정관련 법령에 대해 현재 www.judicial.gov.tw 또는 www.moj.gov.tw의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다.

2) 평가

종합적으로 볼 때, 대만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자. 미국

1) 주요 내용

가) 현황

미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미국은 현재 패널단계에서 26개 사안에 대해 제소국으로, 11개 사안에 대해 피소국으로, 그리고 8개 사안에 대해 제3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APEC 회원국과 3개 사안에 대해 패널단계에 있으며, 6개 사안에 대해 협의단계에 있다. 미국은 분쟁해결규정을 보유한 NAFTA의 체약국으로서 캐나다나 멕시코와의 분쟁은 동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ASEAN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을 체결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과는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ICSID, 파나마협약 및 WIPO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분쟁을 미국이 체약국으로 있는 지역협정 및 양자협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바, APEC 국가가 관련된 협정으로는 NAFTA, FCN(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Amity and Economic Relations 등이 있다. 또한, 미국은 분쟁해결규정을 보유한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통해 투자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를 대표하는 소송대리인들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을 활용하도록 권장받고 있다. 미국은 민간기업간 분쟁해결을 위해 뉴욕협약에 가입했으며, 이는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모든 법령은 일반인에게 공표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정 및 이행단계에서도 언론매체 및 기타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미국법령의 공개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하며,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도 연방정부의 절차적 이슈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나) 기존 IAP 이행 및 98년도 추가사항

미국은 전년도 IAP에 비해 WTO 분쟁해결건수 등 변화된 내용을 최근 현황으로 수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변동사항은 없다.

2) 평가

미국은 APEC 및 WTO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는 곧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 베트남

1) 주요 내용

가) 현황

정부간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베트남은 ASEAN 국가간의 분쟁해결을 위

해 ASEAN의 분쟁해결의정서(Protocol on Dispute Settlement of ASEAN)를 준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양자간 협정상의 분쟁해결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분쟁해결에는 UNCITRAL이나 ICSID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정부와 국내민간기업간의 분쟁은 민원해결법령(Ordinance on Settlement of Claims and Petitions of Citizens)이나 행정사안해결절차법령(Ordinance on Procedures for Settlement of Administrative Cases)에 따라 국내법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민간기업간 분쟁은 베트남상공회의소 소속인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와 경제중재센터(Economic Arbitration Centre)에 따라 국내법원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국제중재판정은 뉴욕협약과 베트남 국제중재판정 인정 및 집행법령에 따라 승인되고 집행되고 있다. 경제법원(Economic Courts) 역시 외국인이 포함된 상업 및 투자관련 분쟁해결의 권한이 존재하고 있다.

베트남의 모든 법적 문서는 공표나 예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SR 베트남의 관보(the Official Gazette of SR Viet Nam)에 발간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법률은 국회에서 채택되기 전에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언론매체도 언론법(Law on Press)하에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국가정보기술프로그램(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Program)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접근이 가능한 국가법령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아직 유효한 법문서는 인쇄되어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발적 이행이 안될 경우 판정 이행기구(Judgement Enforcement Body)가 강제 집행하고 있다.

나) 기존 IAP 이행 및 98년 추가사항

베트남은 APEC 신규가입국으로서 금번에 IAP를 처음으로 제출하였는 바, 기존 IAP의 이행사항 및 추가사항 논의가 불가능하다.

2) 평가

베트남은 금번 IAP를 통해 분쟁해결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주로 설명함으로써, 여타국가의 IAP와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뿐만 아니라, ASEAN 국가나 또는 베트남과 양자협정을 맺은 국가들 이외의 국가들과의 정부간 분쟁해결수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약속이 미약한 편이다.

3. 종합평가

1998년도 IAP 중,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997년도 IAP에서 크게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신규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설명이 불분명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아는 1997년과는 달리 금번에는 IAP를 제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서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APEC 회원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대만, 중국, 멕시코 등은 1997년도 IAP에 이어 금번에도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나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등은 전년도 IAP와 거

의 동일하여 변화내용 및 진전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기본적인 현황설명은 하고 있으나,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하게 설명되고 있다.

XIII

기업인이동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에서의 무역과 투자행위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의 이동을 촉진시킴.

지 침

각 APEC 회원국들은 WTO 관련포럼에서 취해지고 있는 기업인이동에 관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1. 97년도 IAP 요약

가. 호주

- ▶ 고용자권한 및 노동계약에 대한 ‘린’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숙련노동자의 입국이 합리화될 전망이다.
- ▶ 여행예약시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승인하는 전자여행승인(ETA)제도가 96년부터 시행중이며 97.6월 현재 APEC의 7개 회원국과 14개 회원국의 항공사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바,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비자면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옴.
- ▶ 97.1월부터 시행된 호주의 기업인출입카드(BAC)는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인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 96.11월 필리핀, 한국, 호주는 기업인여행카드(BTC)제도에 합의하

였으며 호주는 97. 5월부터 6개월의 시험기간을 거치고 있음.

- ▶ 호주는 97. 7월 각 지방정부별로 기업인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 호주는 향후 ETA 사용의 확대를 권장함.
- ▶ 98년 초 합의를 목표로 BTC 사용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
- ▶ 기업인이동에 대한 제안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97. 5월 퀘벡시에서 첫 모임을 가졌음.

나. 브루나이

- ▶ 다음 국가의 국민은 다음 기간 동안 무비자입국이 가능함: 미국 3개월, 말레이시아 1개월, 싱가포르 1개월, 캐나다 2주, 일본 2주, 한국 2주, 뉴질랜드 2주, 인도네시아 2주, 태국 2주, 필리핀 2주.
- ▶ 복수비자는 1년간 유효함.

다. 중국

- ▶ BTC 참여가능성을 검토할 것임.

라. 일본

- ▶ 변동사항 없음.

마. 멕시코

- ▶ 기업인의 입국 구분: FMN은 미국, 캐나다인에 적용, 30일 체류; FMVC는 호주, 칠레,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이나 캐나

다의 영주권자에 적용, 30일 체류; FMN이나 FMVC는 FM3로 변경하여 1년간 체류 가능; FM3는 브루나이, 대만,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인에 적용, 1년까지 체류 가능.

바. 필리핀

- ▶ 투자청(BOI)에 등록된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인 2년의 복수비자 발급.
- ▶ 아키노 공항에 특별투자자용 비자(SIRV)나 지역투자본부용 비자(RHQ) 소지자를 위한 특별 출구 마련.
- ▶ APEC 비즈니스 비자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발급하며 5년간 복수비자이고 59일간(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음.

사. 대만

- ▶ 외국기업인은 상호주의에 의거 1년간 복수비자 발급; 16개국(APEC 5개국)은 14일간 체류시 비자 면제; 상륙비자는 21개국(APEC 5개국)에 30일간 허용.
- ▶ 아세안 4개국에 대하여 신규 기계판독용 비자 시험중.
- ▶ 최초 체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 개별계획: 복수비자기간을 5년 연장; 비자면제를 APEC국가에 확대.

아. 미국

- ▶ 변동사항 없음.

2.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호주는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ty)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99년 7월부터는 9개 APEC 회원국에 확대적용될 것이다. 입국서류를 한 장의 입국카드로 간소화하였다. 호주는 APEC 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공항에 전용통로를 설치하였다.

기존 IAP 이행사항으로는 이민국의 주 및 지방정부 사무소에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하였고 전자여행허가 사용을 확대하였다. 또한 입국서류를 간소화하고 주요 국제공항에 APEC 기업인 여행자카드 입국 편의를 위한 전용통로를 설치하였다. '98 IAP 추가사항으로 전자여행허가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할 것이며 APEC 기업인이동 그룹의 간사로서 기업인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동실행계획 추진에 지속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2) 평가

호주는 기업인이동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자여행허가제도의 확대와 입국서류 간소화는 APEC 여타 회원국들도 채택해야 할 조치이다. IAP 작성상에 금년도 IAP 이행사항과 현황간에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한국을 포함한 10개 APEC 회원국에 대해 일정기간내에서 비자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기존 IAP 이행사항과 추가사항은 없다.

2) 평가

브루나이는 기업인이동분야에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작년 IAP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존 IAP 이행사항과 추가사항도 없다.

2) 평가

중국은 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Intra-company Transferee”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류상한 기간을 1998년 1월자로 폐지하였다. 기타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다. 기존 IAP 이행사항으로는 Intra-company Transferee에 대한 체류상한 기간을 폐지하였고 IAP 추가사항은 없다.

2) 평가

일본은 본 분야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작년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기존 IAP 이행사항과 추가사항이 없다.

2) 평가

멕시코는 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필리핀은 APEC 기업인여행자카드2차 사업에 참가하였다. 기타는 작년 내용과 동일하다. 기존 IAP 이행사항과 추가사항은 없다.

2) 평가

필리핀의 IAP는 비교적 자세한 현황을 설명하고 있으나 IAP format 지침에 따라 쓰여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각종 규정의 조목이 별 다른 설명 없이 언급돼 이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 러시아

1) 주요 내용

러시아의 IAP 내용은 기업인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의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98년 최초로 IAP를 제출하였다. '98 IAP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기계획(1998 2000/2002년)으로 기업인이동의 자유에 대한 관행과 규제내용의

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중장기(2001/2003-2010년)적으로 국제관행과 기준, APEC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2) 평가

기업인이동분야의 주안점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듯하다. IAP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 대만

1) 주요 내용

APEC 5개국을 포함한 18개국에 대해 단기체류(14일까지)에 대한 비자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계해독 비자시스템도입을 위해 “label” 비자발급에 대한 실험을 끝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자신청에 대한 관련정보를 중국어와 영어로 등재하였다. 여타 사항은 작년과 동일하다. '98 IAP 추가사항으로는 비자신청과정의 간소화 추구, 이민관련 데이터 공유, 기술, 연수와 협력사업에 참가, label 비자시스템의 실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등이다.

2) 평가

타이베이 는 소극적이거나 기업인이동원활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 미국

1) 주요 내용

작년내용과 동일하며 기존 IAP 이행사항과 추가사항이 없다.

2) 평가

미국의 IAP는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SOM에서 채택된 IAP format 지침은 IAP 이행사항, 추가사항을 기록토록 하고 있으나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차. 베트남

1) 주요 내용

베트남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내의 초청기관이 비자유청 서식을 공공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시에는 입국지점에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베트남에 투자가가능성 조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3개월 미만의 복수입국 비자를 발급하며 투자자와 그 가족에는 투자기간에 상당하는 복수입국비자를 발급한다. 아세안 회원국 국민과 베트남기업과 합작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는 1 2일 만에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98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고 '98 IAP 추가사항으로는 출입국에 관한 정책과 규정 검토, APEC 회원국과 출입국 외국기업인 체류조건에 관련된 법률문서 교환, 투자, 교역,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APEC내 기업인에 대한 비자면제에 대한 협정논의, 베트남의 유관기관의 초청에 의해 입국하는 APEC내 기업인에 대한 비자신속 발급 고려(1 2일), APEC내 기업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고려, 장기적으로(2011 2020년), ABTC 사업에 참여검토, 비자발급과정 개선, 비자발급 및 출입국행정의 자동화와 전산화 추구 등이 있다.

2) 평가

베트남은 IAP를 최초로 제출하였으나 비교적 자세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단 IAP의 시행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종합평가

기업인이동분야의 주요한 성과로는 APEC 기업인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 사업인 바 호주, 한국, 필리핀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2차 시험운영기간('98. 3 ~ '99. 2)에는 칠레, 홍콩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현재 뉴질랜드가 추가로 ABTC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ABTC사업이외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일본, 대만은 기약속조치의 이행실적이 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이행사항과 신규제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회원국들의 IAP 서술내용은 부실한 형편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IAP 포맷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본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ABTC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XIV UR 이행

【오사카 행동지침】

목 적

APEC 회원국은 WTO협정과 정신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시한 내에 UR협상 결과의 완전하고 유효한 이행을 보장한다.

지 침

- ① WTO 회원국인 APEC 국가는 각자의 UR 양허내용을 완전히 신의적으로 이행한다.
- ② WTO와 가입협상중인 APEC 국가는 WTO 협정과 일치하도록 투자와 무역체제를 자유화하는 자발적 행동을 통하여 UR협정 이행에 참여한다.
- ③ 각 APEC 회원국은 UR결과를 가속화, 심화, 확대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한다.

1. 97년도 IAP 요약

가. 호주

- ▶ 싱가포르에서 97. 4월 개최된 분쟁해결절차 세미나 주관.

나. 브루나이

- ▶ 변동사항 없음.

다. 중국

- ▶ 변동사항 없음.

라. 일본

- ▶ 400여 개의 의약품 무세화를 97.7월부터 시행(96년에 시행 약속).
- ▶ 정보기술협정 이행.
- ▶ 기타 WTO협정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

마. 멕시코

- ▶ 67개 농산물에 대하여 비관세조치를 관세조치로 전환.
- ▶ 노동문제는 ILO가 적절하며, 정보기술협정에 참여하지 않음.
- ▶ 기본통신협상 참여, TPRM시행, 분쟁해결절차 적극 활용 등 시행.

바. 필리핀

- ▶ 97.6월 지적재산권법령 시행.
- ▶ 식물다양성 지리표시권 반도체회로설계 미공개정보 등 관련 지적재산권 법령 추진.

사. 대만

- ▶ 특허법, 상표법을 TRIPs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97.7월부터 시행.
- ▶ WTO에 가입하면 바로 효력 발생.

아. 미국

- ▶ 변동사항 없음.

2. 98년도 IAP

가. 호주

1) 주요 내용

98년 3월 APEC 지적재산권 전문가 그룹회의를 캔버라에서 개최하였고 98년 4월에는 최빈개도국을 위한 TRIPS 세미나를 뉴질랜드 및 WTO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오사카 계획에 따라 공산품의 관세인하계획을 1년 앞당겨 98년 1월로, 농산품의 관세인하계획은 99년 1월에 시행하였다(97 IAP에도 포함된 내용임).

2) 평가

세미나 개최는 긍정적인 기여이나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으며 관세인하 계획을 앞당긴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는 이미 약속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진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브루나이

1) 주요 내용

97년의 IAP에 비하여 변경사항이 없었다.

2) 평가

따라서 별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

다. 중국

1) 주요 내용

별도로 언급할 내용이 없었다.

2) 평가

내용이 없어 평가할 사항도 없다.

라. 일본

1) 주요 내용

WTO 기본통신협상결과를 시행중이며, 구체적으로는 NTT를 제외하고 KDD를 포함한 제1종 사업자의 외자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WTO의 금융서비스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고, 금융분야 개혁을 위한 금융시스템개혁 법안의 일부로 협상결과를 반영하였다.

2) 평가

KDD의 외자제한을 폐지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마. 멕시코

1) 주요 내용

comprehensive agenda 및 single undertaking 방식의 뉴라운드를 2000년부터 개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2) 평가

멕시코는 ITA를 분야별 접근방법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였고 일관되게 다자간의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바. 필리핀

1) 주요 내용

기본통신험상결과를 반영중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2) 평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 보조금협정 긴급수입제한 TRIMs, TRIPs의 시행기간이 연장되지만 실제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 러시아

1) 주요 내용

WTO에 가입하면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만 기재하였다.

2) 평가

따라서 별도로 평가할 내용이 없다.

아. 대만

1) 주요 내용

평균관세율이 98년에 8.25%로서 86년의 22.83%에 비하면 63% 감축되었으며, 98.5월에는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다.

2) 평가

대만은 WTO 회원국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 미국

1) 주요 내용

97년의 IAP에 비하여 원산지규정과 기술협력부분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추가적인 내용은 없다.

2) 평가

내용상의 변경도 없을 뿐 아니라 97년중에 타결된 금융 및 기본통신협상의 이행상황도 언급하지 않아 성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차. 베트남

1) 주요 내용

정부소유기업(SOE)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법과 TRIMs의 일치 여부도 검토중이다. 99.1월부터 부가세 및 법인세법이 발효되었고 관세는 MFN, non-MFN, 특혜관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세만이 유일한 보호수단이 되도록 비관세장벽과 관세구조를 재검토중이다. 또한 GATS의 양

허표를 작성 중이다. 국내법 중 TRIPs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시 구제절차가 아직 제정되지 못하였다.

2) 평가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어서 평가할 사항이 없다.

3. 종합평가

분석대상국가 중 WTO 회원국인 국가들의 기재내용은 매우 부실한 편이며 일부 내용이 있는 국가도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편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중 대만은 관세율 인하, 정부조달법 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진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이 IAP를 제출한 러시아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베트남은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이 작성되었다.

IAP에서 UR협정 이행부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는 현재의 IAP 기재방법이 불명확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 이행에 관한 기재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목록에 대하여 각국이 이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XV 종합적 평가

98년도에는 신규회원국인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최초로 개별실행계획을 제출함으로써 21개 회원국에 의해 방대한 양의 개별실행계획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 양에 비해 내용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몇몇 회원국은 동일한 개별실행계획을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제출함으로써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개별실행계획 제출시에는 APEC 고위관리회의가 채택한 지침에 따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그 지침에 따르지 않아 개별실행계획의 이행사항, 신규사항 등을 판별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일부 회원국이 몇 개 분야에서 개별실행계획의 자발적인 자유화정신에 부합하는 자유화계획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WTO 양허안의 이행사항을 기록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APEC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개별실행계획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APEC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APEC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개별실행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첫째, 개별실행계획 제출시 회원국들이 기존에 합의한 지침에 따라 작성·제출토록 강력히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실행계획의 이행사항과 신규사항을 명확히 구분토록 하고 간단명료하게 기술토록 함으로써 개별실행계획의 진전상황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시에는 개별실행계획 작성지침을 재검토·개선함으로써 기술방법에서 오는 평가의 혼란을 막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분야에 따라서는 상호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이 기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공동검

토(Peer Review)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공동검토과정은 다소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어서 개별실행계획의 이행과 진전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동검토를 정규함으로써 개별실행계획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APEC의 개별실행계획은 매년 제출되고 있는 바, 각 회원국의 이행상황, 신규 약속사항을 APEC 주요 회의에서 검토하는 한편,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개별실행계획을 통한 APEC의 자유화 노력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별실행계획의 공표는 개별실행계획의 개선에 대한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Assessment of 1998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Hyungdo Ahn

21 member economies submitted Individual Action Plans in 1998. This includes first submissions by three new member economies; Peru, Russia, and Viet Nam. Even though the volume of IAPs is heavy, the content is not faithful enough. Some economies have submitted an identical version three times. Others did not follow the IAP guidelines adopted at the Senior Officials ' Meeting (SOM),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ut what has been achieved and what has been newly added to the IAPs.

Overall, the current IAP system requires major reform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ty need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Bogor Goals. First, member economies should submit their IAPs in conformance with the SOM guidelines. Second, the Peer Review Process of IAPs should be strengthened including the standardization of the Process. Third, the submissions should be made more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and the press so that the member economies gain more input and stimulus as a result of their publication of their IAPs.

發刊資料 目錄

■ 政策研究

- 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
通商政策/王允鍾
- 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王允鍾 編
- 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
方案/金準東
- 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崔秀雄
- 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
立法現況과 示唆點/金鍾範
- 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李鍾華 · 李晟鳳
- 97-07 韓 · 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
案/王允鍾 · 羅秀燁
- 97-08 中國經濟의 浮上과 韓國의 對應/
李昌在外
- 97-09 東아시아 貿易 · 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金南斗 外
- 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
望/趙明哲
- 97-11 韓 · 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
策課題/鄭余泉
- 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
의 對應課題/金元鎬 外
- 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金寬濤 外
- 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
와 改善方案/趙顯垓
- 98-01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I:종합심층
보고/張亨壽 · 王允鍾
- 98-02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李章
揆 외
- 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역할/王允鍾 · 金琮根
- 98-04 APEC 연구시리즈 □ EU 정보네트
워크 모형의 APEC지역적용에 관한
탐색연구/權泰亨 외
- 98-05 APEC 연구시리즈 □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成克濟
-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종합심층연
구/王允鍾 編
- 98-07 APEC 연구시리즈 □ 부문별 조기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柳在
元 · 李弘求
- 98-08 러시아 金融危機의 원인과 파급효
과/李昌在外
- 98-09 외국인투자정책시리즈 □ 外國人
投資誘致政策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 투자인센티브/李晟鳳 ·
李炯根
- 98-10 외국인투자정책시리즈 □ 外國人
投資誘致政策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 投資自由地域/李晟鳳 外
- 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國際金融機
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張亨壽 ·
李昌在 · 朴映坤
- 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崔秀雄
- 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展開方向/徐錫興
- 98-14 APEC 연구시리즈]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Case of
APII/Byung-Il Choi · Eun-Mee
Kim
-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

- 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張亨壽·元容杰
- 98-16 미국 FTA정책의 전개와 시사점/鄭仁敦
- 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金寬濤·李性美
- 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尹昌仁
- 98-19 中·東歐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현황과 전망/鄭余泉·崔秉熙·韓貞澈
- 98-20 北韓의 外國人投資誘致政策과 投資環境/趙明哲·洪翼杓
- 98-21 중국 鄉鎮企業의 발전과 국제화/全載旭·崔義炫
- 99-01 1999 2000년 세계경제전망종합심층연구/曹琮和 編
- 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비전과 課題/金元鎬 編
-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金博洙·王允鍾·申東和·李炯根
-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 실태와 시사점/王允鍾·鄭在完·金琮根·李鴻培
-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曹琮和 編
-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安炯徒 編著

1990 96년까지의 발간자료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저자 약력

김애리

연구원

KIEP

성극제

경희대학교 교수

안형도

APEC연구 컨소시엄 사무국장

KIEP

양준석

책임연구원

KIEP

윤미경

책임연구원

KIEP

이경희

전문연구원

KIEP

임효성

전문연구원

KIEP

전준모

연구원

KIEP

정인교

연구위원

KIEP

채욱

무역투자정책실장

KIEP

한홍렬

한양대학교 교수

정책연구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

1999년 12월 24일 인쇄

1999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3460-1080 FAX:3460-1144

인쇄 비봉출판사 전화:3142-6555 대표 朴琪鳳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 · 複製를 금함〕

ISBN 89-322-1099-3 94320

값 10,000원

89-322-1072-1(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30만원	20만원
A	무역투자부문 (계간지포함)	10만원	8만원
B	구주지역자료 (월간지포함)	10만원	8만원
C	미주지역자료 (월간지포함)	10만원	8만원
D	아주지역자료 (월간지포함)	15만원	12만원
E	계간대외경제정책연구	2만 5천원	
F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G	KIEP주간세계경제분석	5만원(인쇄물) / 10만원(전자메일)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 FAX : 02)3460-1144
 E-mail : sklee@kiep.go.kr

■ 회원특전

- S 기관회원에 대해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週報(인쇄물)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 소장자료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V 표시를하여주십시오)

기관회원 罳	S	A	B	C	D	E	F	G	
일반회원 罳	발간물일체	무역·투자	구주경제	미주경제	아주경제	계간지	월간지	주보	
교환기관 罳								인쇄물	전자메일
OB 罳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기재하지마십시오)

특기사항